

월간

# 재정포럼 9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3년 9월호 제207호

**현안분석** •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시사점/  
최성은

•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해외 임원 자격기준 사례를 통한 시사점/ 허경선

**정책토론포트** •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의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 외

## CONTENTS

### 권두칼럼

결실의 계절에 생각한다 · 임주영 ..... 02

### 현안분석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시사점 · 최성은 ..... 06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해외 임원 자격기준 사례를  
통한 시사점 · 허경선 ..... 17

### 정책토론포트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 32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 외 ..... 48

### 정책흐름

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 72

'14년 7월, 65세 이상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81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86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3/4분기 점검 추진 ..... 90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 92

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 95

2012년도 324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 98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 ..... 102

### 이슈&포커스

[시론] 조세정책과 부동산조세정책 외 ..... 104



## 결실의 계절에 생각한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가을이다. 지난 여름이 유난히 힘들어서 일까. 성큼 다가온 가을이 유난히 반갑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결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한여름의 치열함과 맹렬함이 있어야 봄에 뿌린 씨앗을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삼라만상의 이치인 듯싶다. 한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젊은 시절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부딪치고 이겨내야만 일정한 성취가 주어지지 않는다. 인류사를 이끌었던 위대한 문명들도, 세계를 제패했던 강력한 국가들도 동일한 이치에 따라 명멸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정권의 명운도 비록 임기는 5년에 불과하지만 같은 이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집권을 위해 세력을 모으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봄이라면 정치적 기치와 공약을 내걸고 경쟁세력과 선거전을 벌이는 것이 여름에 해당할 것이다. 결과에 대한 승자독식의 관행이 존재하는 이상 진흙밭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후 선거에 이겨서 집권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되고 임기를 마치자마자 비판과 청산대상이 되는 것이 겨울쯤 될 듯하다.

그래서일까.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역대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조로 증세를 보여왔다. 겉으로야 온갖 개혁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자신들이 투쟁해서 얻은 수확물로 여겨 나누고 즐기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마치 농민이 가을의 결실을 즐기듯이. 그리 보면 기간이 거의 5년이나 되는 추수철인 것이다.

그러나 실상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권의 네 계절은 다르다. 집권해서 비전과 정책을 선정하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봄, 이를 설득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여름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따가운 비판과 맹렬한 반발을 감수해야 하고 지루한 공방전도 견뎌내야 한다. 자칫 마음이 흔들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쉽다.

그렇지만 농부가 여름내 일관된 자세로 올곧은 모종을 지켜내듯이 그 과정

을 이겨내면 국민 그리고 역사의 평가라는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 정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한 결실일 것이다. 역대 집권세력과 국민이 생각하는 계절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럼 이제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난 현 정권은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지금이 결실의 계절이 아닌,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좋은 모종을 심고 있는지 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예산안과 각종 법안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현 정권의 모심기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같은 정책이라도 두 번 세 번 심사숙고하고 다듬어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된 증세와 감세문제

정책을 수립하고 다음어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교훈이란 매우 중요하다. 마치 농부의 노련함이 조상들과 본인의 경험 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현 정부 출범 전후해서 제기된 중요한 재정이슈들도 그렇다.

‘증세 없이 복지 확대가 가능한가?’ 라는 뜨거운 논쟁이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실상 이 논란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이미 진행되어온 것이다. 단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출발은 참여정부의 증세 주장에서부터였다. 복지와 균형발전을 추진하다 보니 돈쓸 데가 많아진 나머지 당시 대통령부터 나서서 세금을 늘리자는 주장을 공론화시켰다. 논쟁이 뜨거웠지만 결국 ‘쓰쓰이를 줄이지 않는 정부가 수입을 늘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라는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자 흐지부지 되었다.

연장전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루어졌다. 세금을 깎아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자는 신고전학파적 정책이었다. 그러나 나오자마자 부자감세라는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첫 단추를 끼우고도 흐지부지되고 만다. 내가 세금 덜 내서 좋은 것보다는 가진 자들이 세금 덜 내는 것이 더 싫다는 식의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였고 현 정권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반면교사가 된다.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정부의 쓰쓰이를 줄여야 세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둘째, 빈부격차

.....  
**이번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예산안과 각종 법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현 정권의 모심기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

.....

**증세가 가져오는  
정치적 어려움은  
인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현 정권이 선부른  
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시한 것은 일견  
타당하게 보인다.**

.....


의 문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민감해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불과 며칠 만에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세가 가져오는 정치적 어려움은 인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권이 선부른 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시한 것은 일견 타당하게 보인다. 아무리 이익집단의 반발이 강해도 또 지하경제를 허무는 것이 어려워도 정부가 일관된 자세로 추진한다면 아직 정부가 힘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작업도 역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얻은 두 가지 교훈을 잘 반영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결국은 세금을 늘리는 것이니 만큼 무엇보다도 정부의 씬씀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행기 없는 공항, 승객 없는 전철, 자동차 없는 도로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세금을 더 부담하라면 반발할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세금우대저축의 축소와 부가가치세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타이밍과 대국민 설득에서의 정교함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실의 이야기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돌려보자. 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창립멤버이다. 어언 20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한 듯하여 참으로 흐뭇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지금 연구원의 계절은 과연 풍성한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가을인가, 아니면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땀흘려 일해야 하는 여름인가. 연구원에 현재 종사하는 동료 후배들이 누구보다 잘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국책연구원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최근의 여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해주고 싶다.

20여 년이란 세월은 한 조직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드러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한 개인이 자신의 아성 속에서 정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작은 성취에 만족하여 스스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채찍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가려는 다른 개구리를 미워한다는 우화를 되새기면서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지 항상 되물어 볼 일이다. 

\* 이 글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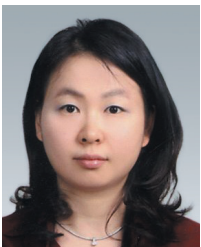
-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시사점**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해외 임원 자격기준 사례를 통한 시사점**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시사점<sup>1)</sup>

## I. 서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문 지방재정은 세입과 세출 측면의 구조적인 형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구조가 상이한 시, 군과 자치구는 복지재정에 있어서도 매우 상이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문 세출 측면의 경직적 구조는 지자체 세입 측면의 구조적 요인과 함께, 재정여건이 변함에 따른 지자체의 세출구조조정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적 자율성 확대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게 되어 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들의 경우 사무적 자율성이 부분적으로 확대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자원부문에서의 구조적 문제는 세출부문의 자율성 확대에 의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운영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재정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echoi@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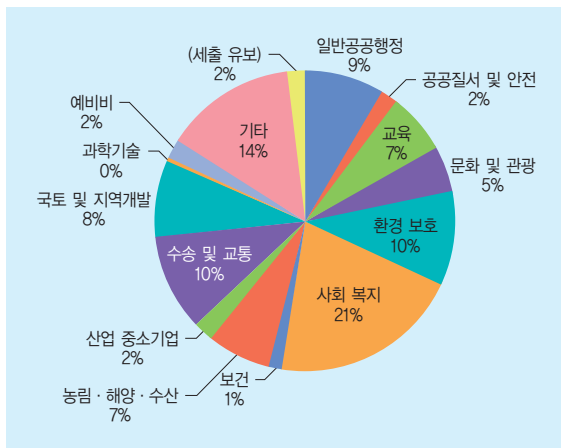
## II.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방자치단체 총세출 대비 보건복지지출 비중은 다른 부문의 지출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21.8%(2012년 기준)로 교통부문(10.4%)과 지역개발부문(8.3%) 및 중소기업부문(2.2%)을 합한 지출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의하면 2102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87%가 국고보조사업이고, 13%만이 지자

1) 본 원고는 최성은 외(201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자원분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중 저자 작성 부분의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체의 자체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복지부문은 다른 기타 부문의 지출에 비하여 국가의 재원부담 비중이 높다. 2012년 기준 전체 지자체 사업에서 국비부담 비중이 약 21.3%인데, 사회복지부문의 국비부담 비중은 약 52%로 기타 부문에 비하여 국가의 재원부담 비중이 가장 높다. 보건부문은 국비가 약 28%이다. 농림·해양·수산부문은 사회복지부문 다음으로 국비부담 비중이 높아 약 41%에 달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대체로 지방공공재로 분류될 수 있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국비부담 비중이 약 33%로 교통이나 지역개발부문보다 높다는 점이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세출 구조(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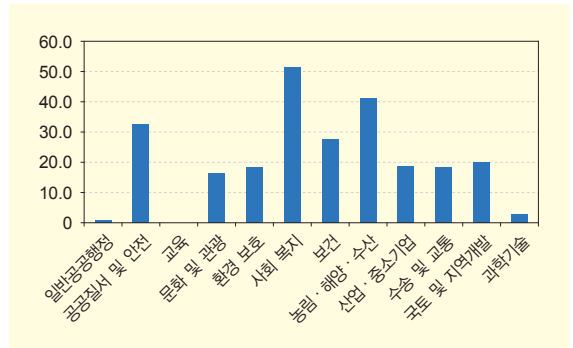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12a),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2012년 기준 전체 지자체 사업에서 국비부담 비중이 약 21.3%인데, 사회복지부문의 국비부담 비중은 약 52%로 기타 부문에 비하여 국가의 재원부담 비중이 가장 높다.**  
 ”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국비부담 비율(2012년)

(단위: 순계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2012a),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세입 측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의존재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정부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한시적 분권교부세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 의존재원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의존재원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의무 매칭비가 있고,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를 초과하는 사업비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다. 즉, 기타 다른 부문의 사업에 비해 국비나 시도비에 대한 의존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  
**자치구와 같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면서도 지방세목이 협소한  
 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지출의  
 지방비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소요액도 노인 수, 장애인 수, 기초수급자 수 등 사회복지수요 외에 복지시설면적 등에 따라 표준행정수요액이 산정되고 있어서, 필요 이상의 시설확충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요소가 구조적으로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치구와 같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면서도 지방세목이 협소한 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지출의 지방비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건복지부문의 보조사업들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어 시·도비 보조 비중이 높은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조정방법은 시도비보조금, 조정교

부금,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도비보조금은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원으로 특정 지원대상 사업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용도를 지정한 보조금이다. 원론적으로 사업별 지원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지원된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의 정률을 재원으로 하여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된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취득세의 50%, 부산 55%, 인천 40% 등으로, 정해진 일정액을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별교부금은 재원의 10%이다.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비교한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배분된다.

재정보전금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광역시세와 도세의 총액과 지방소비세의 27%를 재원으로 하여 용도 지정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보조금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와 자치구 아닌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지방소비세의 47%를 적용한다. 재정보전금은 90%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배분되지만 10%는 시장과 군수가 요청하는 사업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된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표 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단위: %)

| 사업명                                                           | 특별시·광역시 |       | 도     |       |
|---------------------------------------------------------------|---------|-------|-------|-------|
|                                                               | 시       | 구     | 도     | 시·군   |
|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보육사업                                           | 50      | 50    | 50    | 50    |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 70      | 30    | 70    | 30    |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 30 이상   | 70 이하 | 30 이상 | 70 이하 |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보육시설기능보강                                         | 50      | 50    | 50    | 50    |
| 부랑인보호시설기능보강                                                   | 100     | 0     | 50    | 50    |
| 급성전염병관리                                                       | 100     | 0     | 100   | 0     |

자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규칙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최성은(2010)에서 재인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매칭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조정능력이 어려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 Ⅲ.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재정과 복지수요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로도 자치단체의 인구, 재정력, 세출규모 등의 차이로 인하여 보건복지지출의 규모나 재정부담이 매우 상이하다. 먼저 보건복지지출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보건복지지출에 대한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지출의 규모는 시, 자치구, 군지역 순이지만, 전체 세출규모 대비 복지지출은 자치구 지역이 월등히 높아 자치구의 복지지출 부담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즉, 시지역은 복지지출 규모가 많지만 세출규모도 크고, 자치구는 세출규모는 시나 군에 비하여 낮지만 주로 복지지출이 많아 복지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 군지역과 자치구의 주민 수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군지역 평균은 56,984명, 시지역 평균은 313,557명, 구지역 평균은 334,306명으로 자치구의 평균 주민 수가 많고, 군지역은 시, 구지역에 비해 주민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복지지출은 시지역 평균이 약 674천원, 군지역 평균이 약 1,203천원, 자치구 평균이 약 417천원으로 군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자치구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복지지출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지역의 경우 복지지출과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주민 수가 상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1인당 복지지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시, 군, 구 유형별 평균 보건복지지출 구조(2010년)

|                   | 시                        | 군                       | 구                        |
|-------------------|--------------------------|-------------------------|--------------------------|
| 총세출<br>(백만원)      | 669,645.4<br>(363,673.2) | 304,788.2<br>(73,498.0) | 288,792.3<br>(105,515.5) |
| 보건복지지출<br>(백만원)   | 170,387.7<br>(104,308.5) | 59,962<br>(19,341.0)    | 123,672.6<br>(46,514.2)  |
| 보건복지 지출비중<br>(%)  | 25.1<br>(4.4)            | 19.5<br>(3.4)           | 44.8<br>(13.9)           |
| 1인당 보건복지지출<br>(%) | 674<br>(230)             | 1,203<br>(285)          | 417<br>(126)             |
| 주민 수<br>(명)       | 313,556.8<br>(262,559.6) | 56,984.6<br>(34,326.1)  | 334,305.5<br>(153,766.6) |

주: 기초자치단체 평균 ( )는 표준편차임  
 자료: 행정안전부(2010). 『지방재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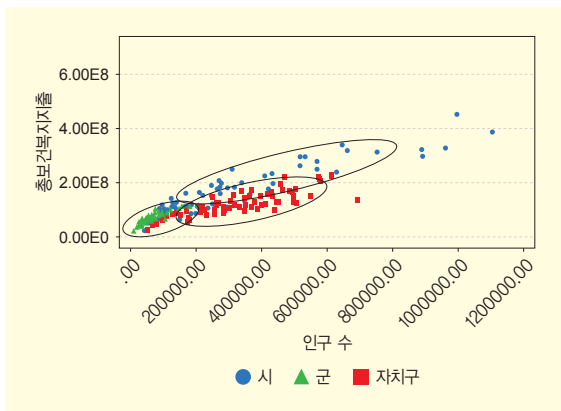
#### 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주민 수, 복지대상자 수 및 부문별 복지지출

시, 군, 구 유형별로 주민 수와 보건복지지출 규모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군지역은 주민 수와 복지지출이 적어 그래프의 좌측 하방에 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자체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주민 수와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 즉 주민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큰 경향이 있다. [그림 4]는 보건복지지출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치구의 주민 수와 보건복지지출  
 비중과의 상관관계는 현저히 낮다.  
 그러나 군지역의 경우는 보건복지지출 비중과  
 주민 수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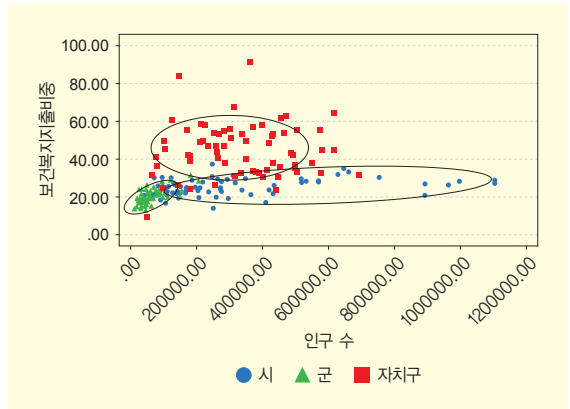
과 주민 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 수에 따른 지자체의 세출규모 효과를 고려하면, 시와 자치구의 보건복지지출의 비중과 주민 수의 상관관계는 보건복지지출과 주민 수의 상관관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주민 수가 많을수록 보건복지지출의 절대규모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경향이 있으나, 주민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 총지출 규모도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 총지출규모를 감안했을 때 보건복지지출 비중과의 상관관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의 주민 수와 보건복지지출 비중과의 상관관계는 현저히 낮다. 그러나 군지역의 경우는 보건복지지출 비중과 주민 수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시, 군, 구 유형별 복지지출과 주민 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복지재정DB

[그림 4] 시, 군, 구 유형별 복지지출비중과 주민 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복지재정DB

자치구는 주민 수가 많다보니 복지대상자의 수도 시나 군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수는 시지역 평균이 약 30,036명(주민 수 대비 12%), 군지역 평균이 약 11,887명(주민 수 대비 22.8%), 자치구 평균이 약 31,328명(주민 수 대비 10.1%)으로 군지역 평균이 규모면에서는 가장 낮지만 주민 수 대비 비중으로는 가장 높다. 자치구 평균은 규모면에서는 노인 수가 많으나, 주민 수 대비로는 노인 비중이 가장 낮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시지역 평균이 8,576명(주민 수 대비 3.6%), 군지역 평균이 약 2,868명(주민 수 대비 5.6%), 자치구 평균이 약 9,509명(주민 수 대비 3.2%)으로 자치구의 평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가장 많으나 주민 수 대비 비중은 시나 군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주민 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중은 군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 5세 미만 영유아 수의 경우 시지역 평균이 15,428명(주민 수 대비 4.8%), 군지역 평균이 2,188명(주민 수 대비 3.6%), 자치구 평균이 13,862명(주민 수 대비 4.1%)으로 군지역의 영유아 수와 비중이 시나 구에 비하여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등록장애인 수는 시지역 평균이 약 15,100명(주민 수 대비 5.7%), 군지역이 약 4,534명(주민 수 대비 8.6%), 자치구 평균이 약 14,394명(주민 수 대비 4.6%)으로 숫자상으로는 시지역이 가장 높고 군지역이 낮으나, 주민 수 대비 비중은 군지역이 높고, 자치구의 경우는 장애인 수는 상당히 많으나 장애인 비중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복지대상자의 분포가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부문별 복지지출의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표 3〉 시, 군, 구 유형별 평균 복지대상자 수 및 비중 (2010년)

(단위: 명, %)

|            | 시                        | 군                      | 구                        |
|------------|--------------------------|------------------------|--------------------------|
| 주민 수       | 313,556.8<br>(262,559.6) | 56,984.6<br>(34,326.1) | 334,305.5<br>(153,766.6) |
| 기초보장수급자 수  | 8,576.20<br>(5,243.2)    | 2,867.80<br>(1,196.6)  | 9,508.50<br>(5,254.5)    |
| 노인 수       | 30,859.10<br>(18,763.1)  | 11,887.90<br>(4,519.5) | 31,328.20<br>(12,805.8)  |
| 영유아 수      | 15,428.10<br>(13,510.2)  | 2,188.20<br>(1,983.2)  | 13,861.90<br>(7,098.6)   |
| 등록장애인수     | 15,099.80<br>(9,676.2)   | 4,534.40<br>(1,948.6)  | 14,394.20<br>(6,091.7)   |
| 기초보장수급자 비율 | 3.60<br>(2.1)            | 5.60<br>(1.6)          | 3.20<br>(1.5)            |
| 노인 비율      | 12.20<br>(4.8)           | 23.10<br>(5.5)         | 10.20<br>(2.7)           |
| 영유아 비율     | 4.80<br>(1.0)            | 3.60<br>(1.0)          | 4.10<br>(0.8)            |
| 등록장애인 비율   | 5.70<br>(1.8)            | 8.60<br>(1.5)          | 4.60<br>(0.8)            |

주: 기초자치단체 평균, ( )는 표준편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복지재정DB

이러한 복지대상자의 차이와 함께 부문별 복지지출규모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자치구의 경우 평균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가장 많고, 보육관련 지출, 노인관련 지출, 취약계층 지출순

으로 나타나 자치구는 기초생활보장지출 관련 부담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군지역은 노인지출이 기초생활보장지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군지역의 보육관련 지출은 시나 구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군지역의 경우 노인관련 지출, 기초생활보장 지출, 취약계층, 보육지출의 순으로 복지부문별 지출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시지역 또한 노인관련 지출이 많은데, 시지역은 노인, 보육,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의 순으로 복지지출의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복지대상자의 분포가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부문별 복지지출의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 시, 군, 구 유형별 부문별 복지지출(2010년)

(단위: 명)

|         | 시        |            | 군        |           | 구        |            |
|---------|----------|------------|----------|-----------|----------|------------|
| 기초보장    | 30,611.3 | (18,329.7) | 10,830.5 | (3,564.0) | 30,913.3 | (16,459.4) |
| 취약계층    | 21,854.5 | (13,625.3) | 6,894.8  | (3,505.0) | 13,772.7 | (8,167.3)  |
| 보육      | 33,828.8 | (25,544.6) | 5,806.7  | (4,715.5) | 28,881.2 | (14,722.1) |
| 가족 및 여성 | 3,450.4  | (2,857.1)  | 892.2    | (696.4)   | 2,349.9  | (1,358.4)  |
| 노인      | 35,225.3 | (19,137.6) | 17,111.8 | (6,461.8) | 25,716.7 | (9,271.9)  |
| 청소년     | 2,584.0  | (2,856.8)  | 817.4    | (1,017.2) | 931.7    | (965.1)    |
| 노동      | 6,378.4  | (5,755.7)  | 2,410.5  | (1,170.4) | 4,550.2  | (3,075.7)  |
| 보훈      | 1,024.7  | (835.1)    | 487.9    | (476.5)   | 216.3    | (234.8)    |
| 주택      | 970.3    | (1,162.7)  | 172.3    | (617.3)   | 336.5    | (692.2)    |
| 사회복지일반  | 351.7    | (885.0)    | 184.6    | (297.9)   | 347.1    | (362.0)    |
| 보건의료    | 10,512.1 | (6,665.7)  | 5,871.1  | (2,434.9) | 8,084.3  | (3,981.2)  |
| 식약청     | 649.9    | (504.7)    | 347.8    | (281.4)   | 644.3    | (496.8)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복지재정DB

“  
**지방세수의 표준편차는  
 시, 군, 구지역에서 모두 자체수입의  
 표준편차보다 현저히 높아서,  
 지방세수의 분포가 자체수입의 분포보다  
 훨씬 고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2.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세입구조와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유형별로 복지지출 비중이 상이함과 동시에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도 지자체 유형별로 상이하다. 자치구는 높은 복지지출 비중을 보이는 동시에 시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시나 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수 평균은 2010년의 경우 시지역 1,395억원(17.5%), 군지역 230억원(6.7%), 구지역 417억원(13.4%)으로 시지역의 지방세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군지역의 평균 지방세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평균은 시지역이 3,412억원(43.7%), 군지역 768억원(23.37%), 구지역은 1,088억원(36.28%)으로 역시 군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수의 표준편차는 시, 군, 구지역에서 모두 자체수입의 표준편차보다 현저히 높아서, 지방세수의 분포가 자체수입의 분포보다 훨씬 고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의 표준편차는 구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 자치구지역의 지방세수 분포가 시, 군지역보다는 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존재원은 시지역의 지방교부세 비중이 평균 약 21.89%, 보조금 비중이 평균 27.4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평균 약 5.04%로 시지역의 경우 보조금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지역은 지방교부세 비중이 평균 37.09%, 보조금이 평균 36.7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비중이 2.12%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지방교부세 평균 비중이 2.4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비중은

18.56%, 보조금 비중이 42.53%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군지역은 시나 구에 비해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자치구지역은 보조금의 비중이 시나 구에 비해 높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비중도 시나 군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지역은 자체수입비중이 43.7%로 군이나 자치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경우는 자체수입비중이 2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낮은 자체재원의 비중과 높은 복지지출 비중은 자치구의 복지지출 관련 재정부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치구의 높은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한편으로는 자치구의 사무 및 기능적 성격에 기인하는 바도 있다. 세입 측면에서 보면, 자치구는 높은 사회복지지출 비중에 비하여 시군에 비하여 협소한 지방세목을 가지고 있고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보조금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지방세의 세목을 살펴보면 시군세의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가 있는데 반해, 자치구의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지방세목이 협소하다. 즉, 자치구는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방비의 여력이 적고,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배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입규모가 시군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인구밀집도가 높고 복지대상자 수도 많아 복지지출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이 높다. 이러한 자치구지역의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 개선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수준에 대한 지자체 간 격차 발생 부분이다. 지자체 재정력 차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공급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큰 경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이에 따른 사회적 불협화음이 가중될 수도 있어 논쟁의

“  
**자치구의 낮은 자체재원의 비중과  
 높은 복지지출 비중은  
 자치구의 복지지출 관련 재정부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소지가 있다.

〈표 5〉 시, 군, 구 유형별 평균 세입구조(2010년)

(단위: 백만원, %)

|                  | 시           | 군           | 구           |
|------------------|-------------|-------------|-------------|
| 지방세              | 139,494     | 22,992.3    | 41,743.5    |
|                  | (131,963.2) | (22,561.5)  | (38,643.4)  |
| 세외수입             | 201,727.2   | 53,766.98   | 67,134.87   |
|                  | (172,291.2) | (25,951.71) | (42,687.31) |
| 자체수입계            | 341,221.2   | 76,759.3    | 108,878.4   |
|                  | (294,988.4) | (43,400.8)  | (79,865.6)  |
| 지방교부세            | 127,056.5   | 113,484.3   | 6,301.9     |
|                  | (74,840.5)  | (25,040.1)  | (3,983.0)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37,618.3    | 7,116.1     | 51,430.8    |
|                  | (42,789.3)  | (6,272.7)   | (27,981.4)  |
| 보조금              | 185,061.1   | 115,722.7   | 114,511.8   |
|                  | (84,162.3)  | (31,766.0)  | (46,216.8)  |
| 지방세 비중           | 17.5        | 6.7         | 13.4        |
|                  | (8.4)       | (5.2)       | (8.0)       |
| 자체수입 비중          | 43.7        | 23.37       | 36.28       |
|                  | (15.67)     | (8.73)      | (15.89)     |
| 지방교부세 비중         | 21.89       | 37.09       | 2.44        |
|                  | (13.33)     | (7.78)      | (1.23)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비중 | 5.04        | 2.12        | 18.56       |
|                  | (4.8)       | (1.50)      | (6.82)      |
| 보조금 비중           | 27.46       | 36.72       | 42.53       |
|                  | (6.67)      | (4.72)      | (13.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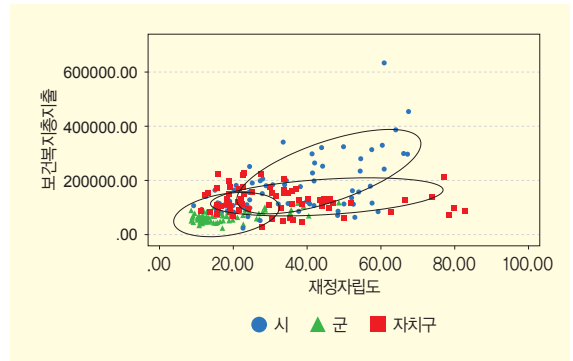
주: 기초자치단체 평균 ( )는 표준편차임  
 자료: 행정안전부(2010), 「지방재정연감」

“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3%인데, 시의 평균은 37.1%, 자치구 평균은 36%, 군 평균은 16.4%이다. ”

이러한 세입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등보조율이나 보통교부세 등의 산정 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12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3%인데, 시의 평균은 37.1%, 자치구 평균은 36%, 군 평균은 16.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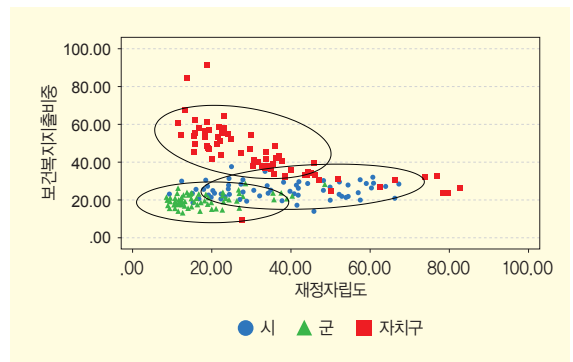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보건복지지출도 낮으므로 그래프의 좌측 하단에 위치하며, 재정자립도와 보건복지지출 규모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일수록 보건복지지출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경우도 군과 동일하게 재정자립도와 보건복지지출규모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는 보건복지지출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치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와 보건복지지출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와 군의 전체 재정규모 대비 보건복지지출의 비중과 재정자립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림 5] 시, 군, 구 유형별 보건복지지출 vs 재정자립도 (2010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복지재정DB

[그림 6] 보건복지지출 비중 vs 재정자립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복지재정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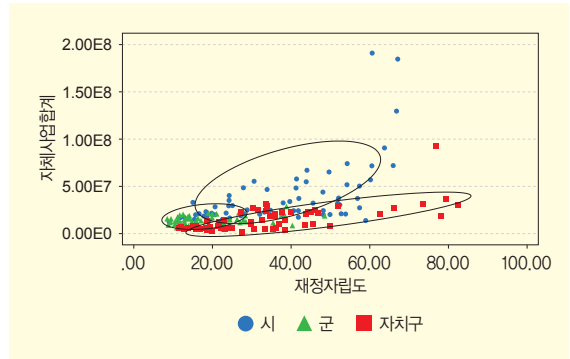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의 보건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의 보건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의 보건복지지출 규모는 많으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복지지출 규모와 비중이 큰 것은 비교적 재정력이 있는 군에서도 복지지출 대상자가 많고, 경제개발 등 다른 부문에 비해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시지역은 재정력이 높은 시는 복지지출 규모는 많으나 복지 외의 기타 다른 부문의 지출도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력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는 재정력이 있는 자치구는 보건복지지출 규모도 작고 복지 외의 기타 부문 지출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재정력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는 복지지출 규모도 크고 기타 부문 지출도 작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복지부담의 해소라는 해법이 자치구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문 자체사업과 재정자립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보건복지부문 자체사업은 자치구 지역이 규모가 작게 분포되어 있고, 군, 시지역순으로 규모가 크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자체사업규모는 낮아 그래프의 좌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와 복지자체사업규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전체 복지지출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비중 규모가 상당히 큰 군이 시나 자치구에 비해 많은 분포를 보이며, 재정자립도와 자체사업 비중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지역은 시나 자치구에 비해 재정력이 원천 낮아서 재정력이 높은 단체의 경우 자체사업규모도 많지만 복지지출의 규모도 그 이상으로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지역의 경우는 복지부문 자체사업과 자체사업 비중이 모두 군과 자치구 지역에 비해서는 높게 분포되고 있다. 재정자립도와 복지자체사업 규모 및 비중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는 복지부문 자체사업과 자체사업 비중이 모두 낮게 분포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와 복지부문 자체사업 규모 및 비중이 시지역과 같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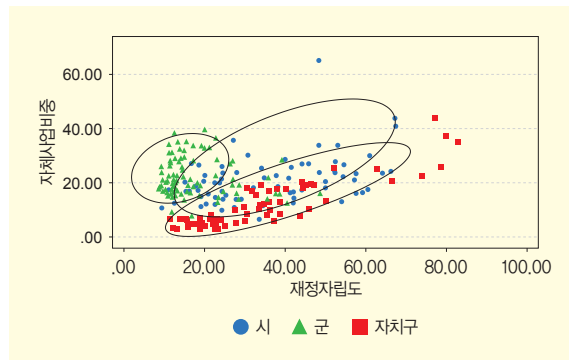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문 자체사업과  
 재정자립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보건복지부문 자체사업은  
 자치구 지역이 규모가 작게 분포되어 있고,  
 군, 시지역 순으로 규모가 크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림 7] 시, 군, 구 유형별 보건복지 자체사업과 재정자립도(2010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복지재정DB

[그림 8] 시, 군, 구 유형별 보건복지 자체사업 비중과 재정자립도(2010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복지재정DB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지방복지재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자치단체 유형과 재정지표에 따른 상이한 특성들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지방복지 재정 및 복지대상자 지표들의 상관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또 선택 지표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 지자체 유형별 분석과 변수의 선택에 따라 모형의 추정치와 시사점이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 가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실증모형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 추정치가 시사하는 점이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과 이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실증 연구에 있어서 특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서는 지자체 유형별로 변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신뢰성과 일관성 있는 실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의 분석은 복지지출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에 관한 현상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로 세입과 세출 구조, 주민 수 및 사회복지대상자 수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다양한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로 설명하였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인구경제학적 여건, 세출구조, 세입구조는 복지지출과 관련된 이전재원구조와 더불어 문제의 해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 등이 보조금 등이 전재원을 받은 이후 재정의 여유가 더 생긴다든지, 지방이양 이후에도 여전히 개별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처럼 관리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단일 해법보다는 큰 틀에서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것도 이

러한 이유에서이다. 

#### 〈참고문헌〉

- 박인화, 「복지재정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예산현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0.
- 최성은,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최성은 · 신혜란 · 한창완 · 강지원 · 이기주,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재정연감』, 2010.
- \_\_\_\_\_,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1.
- \_\_\_\_\_,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2a.
- \_\_\_\_\_, 『2012년도 지방재정연감』, 2012b.

#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해외 임원 자격기준 사례를 통한 시사점

## I. 서론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kheo@kipf.re.kr)

공공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과 경영성과가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기관의 소유주와 운영자가 분리되어 있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만 경영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와 감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역량 있는 인재를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인사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원선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언론과 국회 등의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과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 등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낙하산' 관행을 개선하고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나 새로운 제도를 시도하였으나 공공기관 임원제도의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임원선임제도 개선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포함하여 강력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인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임원선임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임원후보의 지원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기준을 만족시키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임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되었던 임원의 비전문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의

“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선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적인 이슈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국가마다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

자격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임원 자격기준을 일률적으로 강화한다면 임원후보의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능력 있는 후보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본 원고에서는 최근의 공공기관 임원후보 자격기준 강화 논의와 관련하여 해외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선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적인 이슈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국가마다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기 때

문이다. 해외의 공공기관 임원관련제도와 임원자격기준 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이슈와 관련 정책동향

### 1. 공공기관 임원선임 제도 현황

2013년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95개로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개로 구성된다. 2012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의 수는 약 3,000명이며, 이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관의 임원인사를 진행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체 임원은 약 1,300명에 해당한다. 임

〈표 1〉 공공기관의 임원 현황(2012년 말 기준)

(단위: 명)

|                             |                  | 기관장(상임) | 기관장(비상임) | 감사(상임) | 감사(비상임)         | 이사(상임) | 이사(비상임) |
|-----------------------------|------------------|---------|----------|--------|-----------------|--------|---------|
| 공기업<br>(30개)                | 시장형 공기업(14개)     | 14      | 0        | 12     | 0 <sup>2)</sup> | 52     | 88      |
|                             | 준시장형 공기업(16개)    | 16      | 0        | 13     | 1 <sup>3)</sup> | 60     | 101     |
|                             | 소계               | 30      | 0        | 25     | 1               | 112    | 189     |
| 준정부기관<br>(87개)              | 기금형 준정부기관(17개)   | 17      | 0        | 13     | 4               | 55     | 129     |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0개) | 70      | 0        | 20     | 52              | 121    | 568     |
|                             | 소계               | 87      | 0        | 33     | 56              | 176    | 697     |
| 공기업+준정부기관(117개) 계           |                  | 117     | 0        | 58     | 57              | 288    | 886     |
| 기타 공공기관(178개) <sup>1)</sup> |                  | 161     | 18       | 40     | 154             | 105    | 1,220   |
| 전체 공공기관(295개)               |                  | 278     | 18       | 98     | 211             | 393    | 2,106   |

주: 1) 기타공공기관은 총 178개 기관이지만 기관장의 수는 (재)명동·정동극장이 복수의 기관장(2명)으로 총 179명임.

2) 향만공사(인천향만공사, 부산향만공사, 여수광양향만공사, 울산향만공사)의 경우 향만위원회를 통한 임원추천 등 지배구조의 특징이 있으며, 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향만위원회 위원 중 비상임으로 구성, 3인)의 특징이 있음.

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감사 비상임 1인.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IJO, 2013.5.7.검색, 2012년 말 기준임.

원의 임기는 직위에 따라 다른데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주어진 임기 동안 기관장은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중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임원은 담당업무의 수행과 이사회와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직위에 필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은 공공기관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 과정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매우 상세한 법률과 시행령, 인사운영지침으로 발전되어 왔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설립 근거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며 필요시 공운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후보의 모집과 심사, 추천 과정에 있어서 비상임 이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sup>1)</sup>

## 2.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이슈

공공기관의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설립 근거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며 필요시 공운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주되었지만, 공공기관의 임원선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은 임원후보의 자질이나 직책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임용 자체는 정부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와의 협력을 향상시켜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명 ‘낙하산 인사’로 불리는, 전문성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격자의 임명 가능성<sup>2)</sup>을 높여 임원 선임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나 개인적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임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부적격한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이는 대부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가 임원의 경영 역량과 리더십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곽채기, 2002). 즉, 임원의 직책에 요구되는 전문성, 청렴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다면 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이명석, 2001)는 기관

1)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과 현황, 이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허경선(2013) 참조.

2) 이명석(2001), 유승원(2009), 김병섭·박상희(2010)의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임명결정의 외부영향과 비전문성을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은  
 임원후보의 자질이나 직책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장이 비실적 요인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용된 경우 낮은 경영실적을 보이며, 전문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관료출신 임원의 경영실적도 매우 저조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 여부보다는 임원의 해당 기관에 대한 경험과 업무 전문성 여부가 경영성과 향상에 더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김현, 2007; 유승원, 2009)하고 있다.

정치적 임용으로 인한 또 다른 이슈는 임원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임명권자와 임원의 정치적 혹은 업무상 연계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유목적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임명권자와 공공기관 임원이 임명 이전부터 정치적 이해관계나 친분, 업무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를 제어하기 어려워져 국민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임명권자와 임원의 연계는 공공기관이 정부와 주무부처로부터 자율성을 갖기 어렵게 하며, 이는 기관운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개인적 연계에 의한 상호의존성은 단기적으로는 업무협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초래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의 ‘관치’ 논란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다.

공기업 기관장의 선임이 기관의 정부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민희철, 2008)에서는 공기업 기관장이 정치적 연결이 높은 정치인, 관료일 경우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관료가 공기업 기관장으로 오는 경우 정부의 보조금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나며, 반대로 정치적 연결이 높은 기관장은 공기업의 자체수입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기관의 기업적 성격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치적 연결도가 높은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은 개별 기관에는 예산과 인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합리적 자원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국민경제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임원제도 관련 정책동향**

공공기관 임원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개선안이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효과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강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시 전문자격 요건 구체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장·감사 등 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를 통한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임원 후보 지원과 평가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그간 논란

〈표 2〉 공공기관의 임원인사 관련 정책안

| 과제명            | 대선공약                                                           | 인수위 국정과제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
|----------------|----------------------------------------------------------------|--------------------------------------------------------------------------------------------------------|-------------------------------------------------------------------------------------------------------|
| 인사<br>제도<br>개선 | - 기관장 선임 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 배제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 기관장 선임 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 배제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br>- 기관장 및 임원선임 시 자격요건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인수위 백서 추가) |                                                                                                       |
|                |                                                                |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무부처·공공기관 경영진·임명권자 간섭 배제<br>- 임원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로 낙하산 인사 논란 불식<br>- 임원 임기 개선          |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 임원추천 권한 보장, 부처·임명권자의 간섭 최소화<br>- 기관장·감사 등 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br>- 상임이사·감사의 임원임기의 합리적 조정 |
|                | - 장관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br>-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                                                                                                        |                                                                                                       |

자료: 김철(2013)

이 되었던 공공기관 임원의 비전문성 이슈와 임원인사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원자격 기준을 상세하게 구체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대했던 바와 같이 임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지나치게 상세한 자격기준은 임원후보군을 축소시키고 특정 직업군에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임원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계량화하며, 적용의 강제성을 부여할지의 여부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4. 공공기관 임원 자격기준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공공기관 관련 법률과 달리 기관장과 이사·감사에 대한 각각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격사유 항목도 상세화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기준(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의 자격기준으로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확

“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기관장·감사 등 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를 통한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공기관의 감사의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감사위원 중 1인에게 회계 및 재무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표 3〉 공공기관 임원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 법 률                             | 대상 직위  | 자격기준                                                        | 결격사유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sup>1)</sup> | 기관장    | •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이사, 감사 | •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주: 1)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34조(결격사유)

제5조 제1항의 2에서 명시하고 있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기준으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5년 이상의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회계학 석사 학위자, 상장회사의 회계/재무업무 10년 이상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임원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엄격한 자격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기준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위원회가 없는 공공기관의 감사 직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 및 재무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운법과 감사위원회 지침에 규정된 공공기관 임원자격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 장의 해외 공공기관 임원 선임과 관련된 사례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I. 해외 사례

#### 1. OECD의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 권고안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규모가 크지 않고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을 공공

〈표 4〉 공공기관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자격요건

| 법 률                               | 대상기관 및 직위                | 회계/재무전문가 자격요건                                                                                                                                                                                                                                                                                                                                                                                               |
|-----------------------------------|--------------------------|-------------------------------------------------------------------------------------------------------------------------------------------------------------------------------------------------------------------------------------------------------------------------------------------------------------------------------------------------------------------------------------------------------------|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제1항의 2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해당 사항<br>-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br>-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관한 문제점이 일찍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국가별로 이러한 입장 차이가 있지만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2005)에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임원 임명 과정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sup>3)</sup> 특히 공기업의 임원 임명 과정에 대한 감독은 국가의 소유권 기능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임을 강조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공공기관 임원제도의 현황을 조사한 OECD의 최근 보고서<sup>4)</sup>는 이러한 정치적 임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절차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임원선임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임원선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임원진의 지나치게 잦은 교체와 부적격자 임용으로 인한 인사실패, 인사 정체로 인한 혁신성의 감소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있어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임원선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기업의 적법성을 해치고 채용절차의 경쟁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인사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평가<sup>5)</sup>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OECD는 제도적으로 확고한 임명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확고한 임원선임제도의 대원칙은 인사의 투명성,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인사의 유연성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나 임명조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

“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임원 임명 과정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공기관 임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OECD의 설문조사 결과는 OECD 회원국의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선임방법과 권한, 임원자격기준의 적용이 국가별로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원선임 권한과 임원자격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한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크게 장관의 임명권 행사, 이사회에 임명권 행사, 소유권 관리기구의 임명권한 행사, 인사특별기구 설치 등이 있다. OECD 회원국의 상당수에서 중앙정부의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이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재무부 장관이 임명권 행사에 참여하여 주무부처 장관과 권한을 양분하는 체계로서 브라질과 터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회나 내각의 참여와 같이 더 넓은 차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이사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로는 스웨덴이 해당되는데, 스웨덴은 공기업의 임원 임명에 있어서 이사회가 정부부처, 장관, 의회와의 합

3) OECD, Board of Directors of State-Owned Enterprises: An Overview of National Practices, DAF/CA/SOPPP(2012)1/FINAL, OECD(2012)

4) Summary of OECD Practices on Nomination, Composition and Evaluation of SOE Boards, DAF/CA/SOPPP(2012)1, OECD(2012)

5) Frederick, W. (2011), "Enhancing the Role of the Boards of Directors of State-Owned Enterprises", OECD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s, No.2, OECD Publishing(2012)

“  
**OECD의 임원선임의 대원칙은  
 인사의 투명성,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인사의 유연성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별도의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관리기구가 정부에서 위임받은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칠레와 슬로베니아가 포함된다. 특별인사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스라엘과 포르투갈이 있으며 특별 임원인선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력조건을 비롯한 자격기준에 대한 사안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최종 임명권은 해당 부처의 장관에게 있으나 실질적 임명권한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인사기구인 공공인사감독관실(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에 있다.

〈표 5〉 국가별 임원인사의 권한주체

| 임명권한 주체             | 국 가                          |
|---------------------|------------------------------|
| 주무부처 장관             |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뉴질랜드         |
| 재무부 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이 공조 | 브라질, 터키                      |
| 이사회                 | 스웨덴                          |
| 소유권 관리기구            | 칠레, 슬로베니아                    |
| 특별인사기구              | 이스라엘, 포르투갈, 영국 <sup>1)</sup> |

주: 1) 영국의 경우 최종임명권은 해당 부처의 장관에게 있으나 실질적 임명권한은 추천권자인 공공인사감독관실에 있음

자료: OECD, 2012

국가별로 공공기관 관리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인사에 있어서도 기존의 관

리방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임원인사에 대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유권 관리기구나 특별인사기구에서 임원 인사를 전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OECD 회원국의 임원자격기준 현황

OECD 회원국에서 시행중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직무능력에 근거한 자격요건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2년 OECD에서 실시한 설문<sup>6)</sup>에 참여한 국가 중 절반가량이 공공기관 임원진 인사에 있어 학력기준과 계량화된 업무경력을 자격기준요건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의 국가에서는 후보자의 질적 특성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계량화된 학력과 자격기준을 보유한 국가에서 가장 흔한 최소 자격요건은 최소학력에 대한 학위이며, 특정분야(법, 회계학, 경제학)에 대한 학위나 박사학위(폴란드, 이스라엘)를 요구하기도 한다. 반면, 학력과 경력에 대한 계량화된 자격요건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임원 자격요건에 대해 보다 전체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즉 개개인 임원의 자격요건 만족 여부보다는 이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기업지배구조, 사업개발, 산업 지식, 재무 및 관련 분야)이 갖춰지도록 하며, 성별, 배경, 전문성과 경험의 균형이 맞춰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합성과 공공기관의 이익에 대한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OECD 회원국은 학력이나 전문직 근속연수와 같은 수치화된 평가요소(Quantitative requirements) 보다는 직무에 적합한 후보자의 성향이나 질적인 요소(Qualitative requirements)에 대한 임원자격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국

6) OECD의 설문조사는 2011년 12월에 배포되었음. 비상장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위주로 설문이 구성됨.

은 최근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후보들의 지원을 독려하여 임원후보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임원 인사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수치화된 자격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국가도 있어 각 국가의 특성과 공공기관 임원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자격기준을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은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준칙(bylaw)으로 제정하기도 한다. 국가별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호주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상세한 자격요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금융, 법, 마케팅, 노사관계, 경영분야와 관련된 전문역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공기업 소유권 기구인 공기업 감사실(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 COMU)에서 공공분야 전문성에 대한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최근 비상장 공기업들에 대하여 내규에 의거하여 임원선발기준에서 전문성 분야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학위와 같은 최소학력기준을 자격조항으로 마련한 경우로 폴란드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5년 이상의 관련업무 임원경력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가장 엄격한 자격기준을 가진 국가로서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와 최소 5년의 임원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기업을 관리하는 정부기업관리청(Government Companies Authority, GCA)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별 이사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숙련도와 직무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르투갈 역시 최근의 입법에서 임원추천위원회(Committee on Recruitment and Selec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부기

“  
**2012년 OECD에서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국가 중 절반가량이  
 공공기관 임원진 인사에 있어 학력기준과  
 계량화된 업무경력을 자격기준요건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의 국가에서는  
 후보자의 질적 특성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업관리청(GCA)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선임에서 계량화된 자격요건을 의 무화하지 않은 국가도 상당수에 이르는데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가에서는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대신에 임원직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건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인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공기업 임원의 임명절차는 현재 기업의 상황과 필요, 당면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을 계획한다. 뉴질랜드는 소유권을 담당하는 공기업감사실(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 COMU)에서 후보자 모집, 검증, 적합후보자 명단 추출 및 추천, 선출 후 훈련까지 임명과 정 전반을 관리한다. 공기업감사실에서는 내각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잠재적 이해관계 파악 및 전방위 인사검증(background check)에도 관여함으로써 임원선출 과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 국가는 기존 공공기관 관리시스템과 인사 정책의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자격기준을

〈표 6〉 국가별 임원 자격기준

| 국 가  | 임원 세부 자격기준                                                                                                  |
|------|-------------------------------------------------------------------------------------------------------------|
| 호 주  | 회계, 금융, 법, 마케팅, 노사관계, 경영 분야와 관련된 전문역량에 대한 기준 마련                                                             |
| 이탈리아 | 비상장 공기업들에 대하여 내규에 의거하여 임원선발기준에서 전문성 분야를 강화                                                                  |
| 폴란드  | 자격시험, 박사학위 소지자                                                                                              |
| 그리스  | 대학 학위와 5년 이상 관련업무에서의 임원경력                                                                                   |
| 이스라엘 | 박사학위와 최소 5년의 임원경력, 정부기업관리청(Government Companies Authority, GCA)에서 별도의 직무적합도를 평가                             |
| 포르투갈 | 대학 학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GCA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                                                                   |
| 터키   | 대학 학위와 해당분야 경력                                                                                              |
| 영국   | 공기업실(Shareholder Executive)과 주무부처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장관에게 추천                                                        |
| 스위스  | 1) 이사회 전체에 대한 자격요건(전략적 기술, 해당 시장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br>2) 개별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통합성, 독립성, 전문성, 사회성)<br>3) 이사회 의장(리더십) |
| 스웨덴  | 임원직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건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br>현재 기업의 상황과 필요, 당면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을 계획                      |
| 뉴질랜드 | 공기업감사실(Crown Ownership Monitoring Unit, COMU)에서 후보자의 잠재적 이해관계파악 및 전방위 인사검증(background check)에도 관여           |

자료: OECD, 2012

“  
**각 국가는 자격요건을 국가별 필요성에 따라  
 활용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전적으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량화된 자격요건 혹은 질적인 자격요건을 국가별 필요성에 따라 활용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전적으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국가별 특성과 임원자격기준

OECD 회원국의 공공기관 임원자격기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인당 GDP와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의 상관도를 살펴보고, 이상의 계량화된 기준을 활용하는 국가와 정성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1995년부터 독일의 비정부기관인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해 전문가 평가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별 부패 정도를 비교한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분야에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Perception) 정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으로 1995년 첫 발표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 왔다. 부패지수는 국제적인 투명성지수로 사용되고 있는데<sup>7)</sup> 2012

7)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2, Ernst & Young

년부터는 176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우 부패(0)에서부터 매우 청렴(100)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패’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 등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을 뜻하며 최근 24개월간의 공공부문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수를 계산한다.

국가의 소득수준과 부패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의 소득수준과 부패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패의 정도는 낮으며,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패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소득수준과 부패지수를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 임원기준에 엄격한 계량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그리스, 터키 등은 OECD 회원국 내에서 국가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패도 역시 매우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성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국가는 소득수준이 매우 높고 부패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세히 살펴보면 임원의 자격기준이 부패지수와 좀 더 상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계량화된 기준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우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부패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반대로 정성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칠레와 에스토니아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패도 역시 낮은 편이다. 이상의 상관관계는 국가의 부패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계량화된 기준을 선호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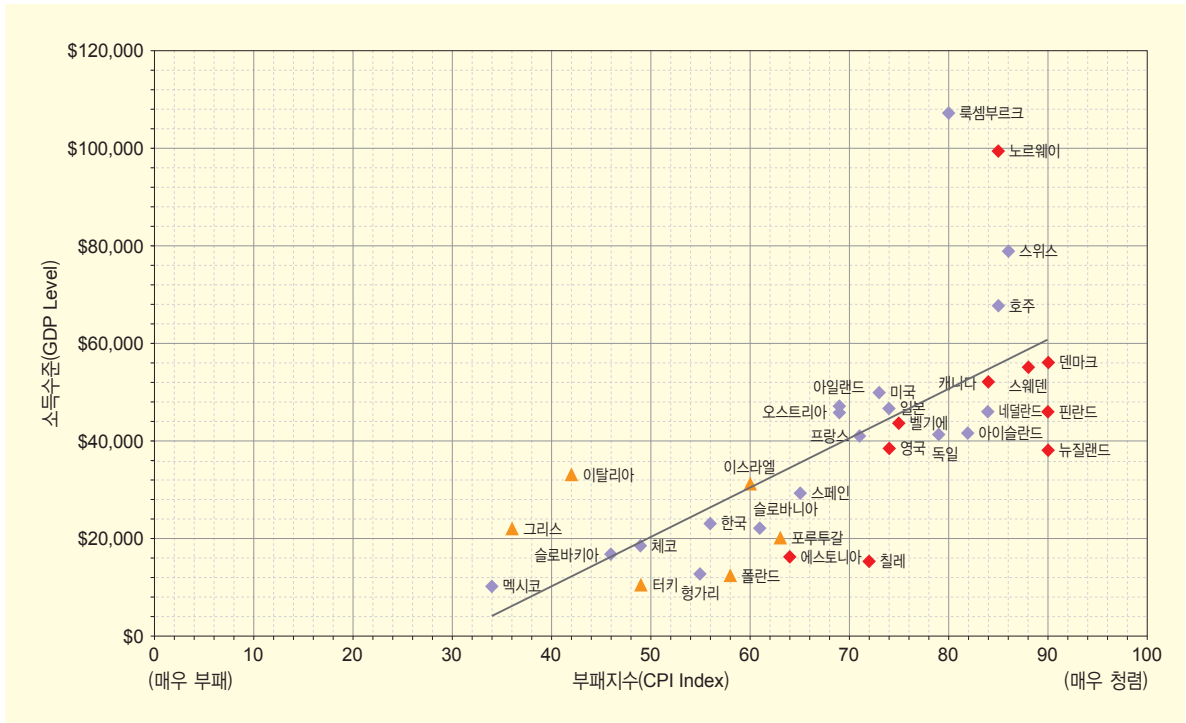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는 공공기관 임원자격요건의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가의 부패도가 높다는 것은 그 국가의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 등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

“  
**임원선임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성적 기준보다는 적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화된  
 계량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뢰도 역시 낮아지게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성적인 기준보다는 수치화된 계량기준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부패도가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우,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역시 형식을 강조하는 계량기준보다 공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임원을 적시에 폭넓게 선임할 수 있는 정성적인 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임원선임에 대해 ‘밀실 인사’ 혹은 ‘낙하산 인사’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장시간 지속되어 왔으며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임원선임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성적 기준보다는 적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화된 계량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계량 자격요건을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임원후보의 인재풀을 축소하여 임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편향된 선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적합한 자격기준의 설정은 각 기관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 주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자격기준의 강화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화된 자격요건은

[그림 1] OECD 회원국의 소득수준과 부패도, 임원자격기준



주: \* GDP와 CPI Index는 2012년 기준임  
 \*\* ◆: 정성적인 임원자격기준을 사용하는 국가  
 ▲: 계량화된 임원자격기준을 사용하는 국가

학력보다는 해당 업무 경력과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IV. 정책적 시사점 및 고려사항

향후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임원인사의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었던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불투명성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

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이에 따른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비적격자의 임원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세한 자격기준의 설정은 공공기관 임원 후보군의 범위를 좁히고, 특정 경력자(관료, 학자, 감사원)에 대한 선호를 지나치게 높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임원 자격사항에 공통적인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최근 발간된 OECD의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공기업 임원 선임과정에 적용하는 자격기준에 대한 구체

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의 자격기준 적용 여부와 이사회에 대한 규정은 임원의 자격요건 설정과 적용에 공통적으로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임원자격요건의 설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가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부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자격에 대한 명시적인 계량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 있고 부패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계량화된 구체적 자격기준보다 정성적이고 전체적인 자격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선호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에서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작용과 후보의 비전문성이 큰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매우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자격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자격기준에 대한 개선과 이행이 필요하며, 정치적 임용의 논란이 가장 많은 감사에 대해서는 재무 및 회계전문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원 자격기준의 지나친 구체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다양한 후보군이 임원후보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 경력과 학력에 대한 지나친 제한보다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해당 관련분야의 전문성이나 관리능력에 대한 기준이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기관의 목적(수익성/공익성)과 임원 직위의 특성 및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다양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격요건 설정을 각 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성과 자격요건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인사가 이러한 자격기준에 맞추어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하는 정책적 접근 역시 필요

“  
**공공기관 임원 자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과정과 선정기준,  
 선정결과, 선정된 임원의 전문성을  
 임원이 결정된 직후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이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

하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기준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투명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높이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임원 자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과정과 선정기준, 선정결과, 선정된 임원의 전문성을 임원이 결정된 직후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이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임원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낙하산 논란’이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강화된 임원자격기준의 이행은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은 후보의 비적격성과 비전문성이 주요 원인이지만 의사결정상의 정치적 영향력과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또한 큰 원인이기 때문에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재기, 「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공기업 논총』 제14권 제1호, 한국공기업학회, 2001, pp. 29~63.
- 김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 사회공공연구소, 2013.
- 김현,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사장 임용유형별 경영성과 차이 분석: 낙하산 인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7, pp. 759~783.
- 이재은 · 최무현 · 최호택, 「외국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 연구」, 한국행정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p. 343~367.
- 김병섭 · 박상희,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에 관한 연구: 법제도 및 대통령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2), 2010. pp. 85~109.
- 민희철,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재정포럼』, 2008.1, 한국조세연구원, pp. 24~30.
- 유승원,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2009, pp. 71~103.
- 이명석,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과 경영실적」,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01, pp. 139~156.
- 허경선,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재정포럼』, 200호, 한국조세연구원, 2013.2, pp. 27~48.
- Frederick, W., “Enhancing the Role of the Boards of Directors of State-Owned Enterprises,” OECD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s, No.2, OECD Publishing, 2011.
- OECD, “Board of Directors of State-Owned Enterprises: An Overview of National Practices,” DAF/CA/SOPP(2012)1/FINAL, 2012.
- OECD, “Summary of OECD Practices on Nomination, Composition and Evaluation of SOE Boards,” DAF/CA/SOPP(2012)1, OECD, 2012.

# 정책토론포럼

## ■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 개요

- 주 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 일 시           2013년 8월 26일(월)
-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 진행순서
  - ▶ 사 회 자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 주제발표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세무학과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모델 개발**  
안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의 모색**  
고숙희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토 론 자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송재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안중범 새누리당 국회의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이인영 민주당 국회의원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가나다 순)

\* 본 원고는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3년 8월 26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개최한 「2013년 국세행정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발제 1**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

**박 훈**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세무학과 교수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 도입 필요성
  - 역외 탈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은닉된 소득 · 자산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
  - 역외 은닉소득 등 미신고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자발적 신고제 \*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Offshore Voluntary Disclosure)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특별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역외 은닉소득(자산을)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자발적 신고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 (미국) 해외계좌 신고제를 운영하며, 그동안 미신고한 해외계좌 및 관련 세금을 신고 · 납부하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경, 형사고발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발적 신고제를 수차례 실시
  - (영국) 해외계좌 신고와 함께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또는 형사고발 제외 등의 혜택 부여('07, '09년)

- (벨기에) 해외 예금, 증권 등을 자진신고하고 1회성 세금으로 잔액의 9% 또는 6%(3년 이상 국내 투자시)를 납부하면 관련 세금 및 조세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자발적 신고제 실시('04년 등)

- 우리 실정에 맞는 자발적 신고제도 도입 방안
  - 우리나라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외국 사례, OECD 논의, 과거 연구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시적인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 그동안 미신고한 역외 은닉소득 · 자산을 신고하면서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처벌 경감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해 더욱 더 엄정하게 적발 ·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

\* 역외 은닉소득에 대해 자발적 신고자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요건(예시)

- ① 자발적 신고시 신고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
- ② 신고된 역외 은닉소득 또는 자산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이 있음 (벨기에, 이탈리아 등)

- 특히,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본세 · 가산세 · 과태료 경감 및 형사처벌 완화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나
  - 향후 장기적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의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본세 경감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

한 검토가 필요

- 아울러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공조 강화, 직원 전문성 제고, 역량 집중 등 행정적 측면의 보완 필요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

- 한편, 역외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과세관청의 적발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제도 측면의 개선도 필요
  - 특히, 국외거래의 경우 다툼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거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접근이 현저히 어려운 점을 고려, 국외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일부 배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사례와 같이 일정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 일단 그 비용공제를 부인하고, 그 거래의 사실 여부를 납세자측이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 등

■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기대효과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노력 외에 납세자의 협력이 필요
  - 역외 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과세행정이 점차 성과를 나타내며 처벌도 강화되는 현 시점이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
- 아울러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외 탈루소득 등에 대한 자발적 세금 납부로 세입 증대, 은닉자산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해외 소득·자산의 국내 유입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발제 2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 모델 개발

안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탈세규모(Tax Gap) 측정의 필요성

- 탈세에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ax Gap\* 측정을 토대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한정된 조직과 인력을 탈세 취약분야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음
  - \* 이론상 잠재적인 세수총액과 실제 납부된 세액의 차이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있는 분야에만 탈세규모 분석이 집중되어 전체적인 탈세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함
  - 또한 세목별 거시적 분석에 집중되어 소득수준·업종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납세순응행태 분석이 불가능하여 추정결과를 세무조사 기획 등 국세행정에 활용하기 어려웠음

■ 외국의 탈세규모 측정 사례 및 시사점

- 미국·영국은 주기적으로 주요 세목에 대해 세분화된 Tax Gap을 측정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에 활용하고 있음
  - 경제·통계학자 등이 포함된 전담조직에서 Tax Gap 측정을 담당하며, 세목 등 특성에 따라 측정방법을 달리 정함

### 미국·영국의 Tax Gap 측정 방식

| 구분   | 미 국                                                  | 영 국                                                                                               |
|------|------------------------------------------------------|---------------------------------------------------------------------------------------------------|
| 연 혁  | • '02년 NRP(National Research Program, 무작위 표본조사) 도입   | • '01년부터 Tax Gap 측정 실시                                                                            |
| 측정주기 | 5년 주기                                                | 1년 주기                                                                                             |
| 추진부서 | Research, Analysis and Statistics<br>(국세청장 직속 조직)    | Knowledge Analysis and Intelligence<br>(국세청장 직속 조직)                                               |
| 소속인원 | 경제·통계학자 등 정규직원 13명                                   | 경제·통계학자 등 정규직원 15명                                                                                |
| 조사방법 | 납세자 비접촉 조사<br>(내부자료 활용), 통신·서면 조사, 약식 대면조사, 정밀세무조사 등 | <간접세 Top Down, 직접세 Bottom up><br>• Top down : 거시경제 데이터 활용<br>• Bottom up : 국세청 자료, 무작위추출조사, 자료 대조 |

- Tax Gap 측정 관련분야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조직(T/F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 장기적으로는 통계·경제전문가, 조사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부서에서 Tax Gap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스웨덴에서는 '08년 과세분에 대해 1회적으로 Tax Gap을 측정·발표하였으며,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해서만 Tax Gap을 측정만 바 있음

- 우리 실정에 맞는 측정모델 개발과 활용방안
  -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Tax Gap 측정을 위해서는 외국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고유한 조세제도, 경제 환경, 납세인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 측정대상 세목과 발표 주기, 측정과정에서의 비교대상 자료의 파악, 무작위 추출조사 실시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 국세청은 8월 정책연구 용역을 체결하여 구체화된 Tax Gap 측정방안을 마련할 예정
  - 또한, 탈세의 축소를 위해서는 Tax Gap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업종별·유형별·규모별 탈세위험지수 등을 분석하고, 탈세 취약 분야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등 과학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발제 3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인력 체계의 모색

고속희 / 세명대학교 교수

- 현행 국세청 조직·인력체계의 문제점 진단
  - 경제·사회·문화 등 최근의 세정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의 유효성 진단
    - 탈세역량 대응 저하, 세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인력 부족 심각, 인적자원의 전문성 미흡 등 국세행정의 조직·인력체계 전반에 걸쳐 문제점 존재
- 선진국 사례 등을 토대로 한 조직·인력체계 개편 방향
  - 납세자 유형별 조직(미·호주), 범칙조사 전담 조직(미·영·프), 탈세규모 측정 조직(미), 통계생산·분석 조직(미) 등 조직운영 사례와 직무에 따른 직급·보수 차별화(미), 직렬별 구분채용(일)\* 등 인력관리 사례 조사
    - \* 직렬을 조사관·사찰관·징수관·실사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세전문관 시험(대졸), 3종 시험(고졸) 등으로 구분 채용
  - 세정환경 변화, 현행 조직·인력체계의 문제점, 외국 사례의 시사점 등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인력 개편방향 제시

|            |                                                                                                                                                                                   |
|------------|-----------------------------------------------------------------------------------------------------------------------------------------------------------------------------------|
| 조직체계 개편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 유형에 맞는 탈세 대응 및 서비스를 위한 조직 필요</li> <li>• 범칙조사 등 기능별 전담조직 신설</li> <li>• 본청 이전 등 행정여건 변화 대응</li> <li>• 세정 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인력 보강</li> </ul> |
| 인력체계 개편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의 전문성 강화</li> <li>•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li> <li>• 여직원 인사관리 체계 도입</li> <li>•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도입</li> </ul>                                          |

■ 개편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방안

- 현행 공급자 중심의 세목·기능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한 납세자 유형별 조직 및 산업·업종별 전담조직을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지하경제 양성화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탈세대응 전략수립, Tax Gap 측정·분석·활용, 과학적 조사기법 연구, 조사지원 등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센터」 신설 필요
- 조세범칙조사와 정보수집 기능의 전문성·효율성 및 외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범칙조사와 정보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전담조직과 학자금상환업무(ICL)와 채납정리를 연계한 징수전담 조직 신설 필요
- '15년 자영업자 EITC, 자녀장려세제(CTC) 시행 등 향후 세정의 복지관련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세정을 전담할 조직 설치
- 국세청 본부 기능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납세자 및 직원들의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불복업무\*, 납세자 교육,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센터 등 필요한 기능은 수도권에 존치시키는 탄력적 대응 필요
  - \* 과세전적부심 및 심사청구인의 약 70%가 수도권 거주자(12년 기준)로 세종시 이전 이후 장거리 왕래에 따른 극심한 불편 우려
- 납세인원 증가, 수도권·대도시 지역의 신규 세원 발생 등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선의 조직·인력 확충 필요

\* '99년 이후 납세인원 2.0배, 세수 2.7배 증가된 반면 국세청 정원 1.2배 증가

-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과세 정보의 부처간 공유 확대와 개인 정보 보호를 균형감 있게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통계전담 조직 강화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효과적 대응

■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 필요

- 세무직렬 이원화(예: 행정직, 조사직),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직무별 직급·보수 차별화 등 전문성 제고와 급증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보직관리 도입 필요
- 단기적 인사 집행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전략적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 전담조직의 설치와 국세청 성과평가제도(BSC) 활용성 제고, 개방형 직위·유연근무제 확대 등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 필요



토론 요약

엄정한 제재·효과적 인센티브 동시 부여해야

김연근/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역외 은닉소득 양성화 유도방안 관련

몇 년 전부터 국세청에서는 계속하여 역외 탈세 차단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왔고, 현재 어느 때보다 역외 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다. 역외 은닉소득 양성화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역외 탈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국가별로도 최우선적으로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당수의 국가가 자발적 신고제를 실시한 바 있는데, 전제조건이 나라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도가 다양하게 변형되어 시행되어 왔다. 자발적 신고제는 미신고시 신고하도록 하는 강력한 압박수단이 있어야 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금융 비밀주의도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재산 보유자가 굉장히 긴장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또한, 위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어 올해는 50억원 이상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를 받아보면, 신고를 하고 추가 탈루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우려 또는 외국 환관리법 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

액 자산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측면을 우려하는 것 같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제도 측면이 자발적 신고제 도입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인데 자발적 신고를 했을 때 납세순응도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자발적 신고제를 통해 역외 재산이나 소득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과세기반이 확충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Tax Gap 측정 관련

국세청은 수 년 전부터 NRP 도입을 검토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해왔다. 어떤 형태로든 Tax Gap 측정을 통해 국세청의 중장기 전략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NRP가 아니더라도 조사를 객관화·과학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세정 환경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Tax Gap을 가지고 중장기 세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취약분야에 대한 타깃팅을 잘 할 수 있을지 등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Tax Gap 측정결과가 조사대상 선정시스템에 과학적으로 접목된다면 중장기 조세행정 발전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Tax Gap 측정은 대단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바, 실시 시기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미국에서 경제통계전문가가 장기간에 분석하고 있는 NRP 시스템은 개인사업자 위주이나, 우리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고 개인사업자 조사자료도 비교적 잘 구축이 되어 있어 NRP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즉, Tax Gap 측정모델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장기간이 되더라도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되어야 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국세청의 전문 인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국세행정 조직·인력 체계 모색 관련

장기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인력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국세청이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최대 화두로 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많은 납세자가 수도권에 있으므로 조사, 심사,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수도권의 행정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와 조직·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나 세정수요자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성실납세 인식 갖게끔 제도 설계해야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오늘 발표한 3가지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의견을 말하겠다.

우선 역외 소득 양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계좌신고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계좌 상태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역외 소득 양성화 방안은 이러한 개념을 더 발전시켜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외 은닉소득이라는 개념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은 flow 개념인데, 은닉자산은 stock 개념이다. “역외 은닉소득”이 소득 개념으로 적절한지, 기존에

존재하는 “미보고소득”이란 개념을 사용하면 왜 안 되는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자발적 신고제 도입에 앞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계좌신고제도가 적정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해외계좌 신고대상 기준금액이 10억원인데, 이는 미국(1만달러), 일본(5,000만엔)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기준선이 낮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1인당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준금액을 3억원 정도로 대폭 인하하고, 대상 자산 종류를 확대하며 과태료 수준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서는 해외금융계좌의 소득과세에만 적용할지 등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국한할 경우에 제도가 복잡해지고 실익이 없어진다. 체납액에 대한 납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가 좋으나, 체납세금 자체를 감면해 주거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납세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끔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Tax Gap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어떤 상황인지 시계열적으로 동일한 방식에 의해, 주기적으로 부가세 갭을 국세청이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정책적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VAT Gap의 문제점은 매입세액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조사에서 맹점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입세액환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면세제도가 최종재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 투자 단계에서 적용된다면 환수, 누적효과 때문에 VAT Gap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목별 조사에 치중하지 않고 영역별 업종

별 (부동산, 의사, 변호사)로 집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연구 중 납세자 유형별 조직이 핵심 내용인 것 같다. 국세청이 전문성을 가진 조력자를 두고 있는 납세자와 다름이 있을 경우,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보수 등이 부족하므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문성이 더 필요하므로 납세자 유형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국 체제를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업종별 전문화(예를 들어 금융기관, 유통산업)로 나누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세정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직렬이원화는 더 실익이 없다고 본다.

## 탈세규모 추정, 활용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문창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처음에 해외계좌신고제를 도입할 때, 자발적 신고제도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해외계좌신고제도 자체의 도입이 중요시되어서 자발적 신고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미루어 놓았던 부분이다. 조세사면도 중장기적으로는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해외계좌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점진적으로 매년 제도가 강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자발적 신고제도 도입은 시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국외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세법개정안에 과세관청 입증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금융계좌 자금추적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부

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입증책임 배분 문제는 소송법 체계 전반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ax Gap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세 정책, 세무행정의 좌표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추정 에 대한 필요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하여, 탈세규모나 업종·대상·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다만 미국, 영국을 제외한 국가는 주기적인 추정·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에서 추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라든지, Tax Gap 외의 다른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5년 정도의 시차, 영국은 18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목적이 먼저 정확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추정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될 것이다.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충분히 활용할 것인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조직인력체계 모색과 관련하여 본청과 지방청의 조직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맞춰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조세특례체계 등에 맞춰 유형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에는 일리가 있으나, 개인 납세자의 소득 유형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현재 3단계인 법인세율이 고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대내외 세정 수요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지방청이나 세무서 신설,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복지업무 급증에 따른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효율화 작업을 선행한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세정 이외의 제도 관련 문제는 관련부처와 신중하게 협의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도 세종시로 옮길 텐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본부를 수도권에 일부 남기는 것은 국세청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처간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계전담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및 정부 다른 부처에서 반발이 많은데, 국세청에서 자료 제공에 노력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사전에 이행되어야 조직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세공무원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현행 체계와 비교하여 장단점, 타 직렬과의 형평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career development를 먼저 시행해 보고 나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자발적 신고 유도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송재현 /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실무적인 차원에서 발표에 대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적으로 역외 은닉소득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의식은 미약하고, 납세자는 내가 신고해야 하는지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 가장 큰 실무적인 문제는 5년이나 10년간의 체납세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일시납부 부담 때문에 자발적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산세 면제, 본세(3년 전) 면제 등)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역외 소득은 그동안 과세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권 내로 이끌어 온다고 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역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내에서 신고하지 아니하는 납세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사전에 주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고 신고를 안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외 소득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역외 소득이 있는 자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겠다.

둘째, 국세행정 조직체계를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탈세 유형과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이러한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기업 수가 적으므로 대기업은 중앙청에서 하고, 중소기업은 일선 세무서에서 관리하거나 세무서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담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인터넷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등 전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들도 전산체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조직도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산화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데이터 및 금융자료 등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이전에 제공하고 납세자는 모든 서식을 전자신고하도록 하여 세원관리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파악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조세정보 활용한 정부 3.0 구현

안종범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정부 3.0이다. 현재 정부 2.0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3.0으로 바로 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이 어떤 국가들보다 IT강국이며 이를 이용하여 수없이 많은 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보가 공개·공유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정부 3.0이고 그 중심에는 국세청이 있고 세무정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정보와 금융정보를 융합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자는 것이 이번에 통과된 FTU법이다. 그 외에 조세정보와 복지 관련 정보를 융합한 정보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제공하여 활용하고, 사회보험의 징수와 관련된 통합징수망에 조세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파악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 정부 3.0이다. 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각 정부기관들은 아직까지도 정부 3.0에 적극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철저하게 칸막이를 쳐 놓고 자기 부처의 정보 유출을 꺼리고 있다. 현재 FTU법으로 국세청은 많은 정보를 받았지만 아직도 활용 가치가 높은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사 기법을 보다 객관화·과학화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세무조사 제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 NRP이다. 이 NRP의 기초연구가 Tax Gap이라는 지적을 해 왔는데, 현재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능하면 업종별, 지역별 탈세규모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도 NRP와 같은 과학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적어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 개혁은, 기능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납세자 유형별로 개편하는 것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기능 강화와 확대이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간 국가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탈세 은닉 적발기법도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민간시장에서는 금융기법이나 은닉기법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과세당국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역외 탈세, 나아가서 과표양성화를 위해 세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조직개편시 여성인력에 대한 검토 필요

원경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우선, 역외 은닉자산 양성화 방안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 해 135조원의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 금융기법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발적 신고제를 통해서 역외 탈세에 대한 세법 및 행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

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역외 은닉자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하고 조세행정이 이 부분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역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세범처벌 문제, 가산세 과태료 등 인센티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추징모델 개발은 복지재원 조달 문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책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5년, 영국은 1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의 방법도 연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국세청이 국가 세입을 차질 없이 조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여성인력이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늦었지만, 여성인력들의 출산, 육아 및 주거지역 제한 문제 등 여성인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종별 조사전담 및 조세범 관리조직의 편성이나 전담할 요원 양성 등도 보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 조직과 인력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모든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조세신고 적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세신고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세무법인을 통해 성실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외국의 조직개편 사례 중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국세청 조직개편 진행시 일본이나 독일 체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납세 순응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및 인력 개편 해야

윤태화/가천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최근 국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특징은 개인 및 법인 납세자들의 비즈니스 글로벌화, 저성장 기조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하에서 조세징수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결국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공정한 과세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논의되는 3가지 주제가 모두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세청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했으나 변화하는 조세환경을 국세행정 조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전략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국세청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의 조직 및 인적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선진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인 국세공무원이 필요한데, 실무진의 인력 채용 방식이 MB정부에서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졸자 채용 방식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방식을 대학에서 통계학, 세무, 법 등을 전공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국민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세금을 조사하고 징수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역외 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신고 유도 제도의 한시적 운영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기

존에 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이나, 은닉자들이 계속 은닉하는 것도 중요한 불형평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많이 운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역외 은닉소득이나 재산들은 해외로 떠도는 자산이므로 이를 양성화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이러한 소득이나 재산이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제도를 통해 역외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납세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한시적 신고유인을 부여함과 동시에 향후 역외 탈세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세청은 정보를 알 수 없는 반면에 납세자들은 정보를 독점하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두거나, 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제도는 기존 제도와 다르므로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탈세규모 추정에 대한 논의는 과거 학자들 간에 이루어지던 주제였는데, 국세청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 어디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탈세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어떤 분야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느냐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세목에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미국식으로 할지 또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추정할 것인지, 대면조사도 포함할지 영국식으로 표본조사방식만을 택할지 그리고 조사주기를 1년에서 5년 중 어떻게 할지 등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 만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은 있으나 미국식처럼 전 세목에 대하여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며, 탈세규모는 추정이므로 매년 추정하는 것보다 2년 또는 3년 등 일정기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과학적인 Tax Gap 측정으로 형평성 제고

이인영 / 민주당 국회의원

역외 은닉소득과 관련하여 기본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준비 중인데, 세법 속에 분산되어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기본법을 통해 모으거나 특별법을 통해 대처하는 방법이 어떨지 물어보고 싶었다. 특정 집단에서 역외 탈세가 일어난다면 기존처럼 산재되어 있지 않는 통일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만약 Tax Gap 측정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기존 조직체제 속에서 어떻게 포섭해야 하는지 혹은 분리해야 하는지, 그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고 싶었다. 걷어야 할 tax와 실제 걷은 tax 간의 차이를 측정하면 세제·세정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유용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자께서 지하경제, 조세탈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확장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여 높이 평가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국세청 세수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하경제 규모 산출에 헛되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Tax Gap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확보 가능한 최대한의 추가 세원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되

고 있는지, 특히 세목과 납세자 유형, 지역 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수확보와 조세행정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국가정책 수립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조세정의라는 것이 투명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투명성 부분은 Tax Gap을 통해 굉장한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형평성이라는 조세정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탈세의 문제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국세청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다면, 과연 세금을 더 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내고 있는지, 걷어야 할 tax와 실제로 걷은 tax의 문제 외에도 더 내야 할 tax, 더 낼 수 있는 tax 등 세금을 내는 사람 간의 누진성, 형평성의 문제까지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조세행정, 조세제도가 정부 3.0까지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탈루의 문제를 넘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 간의 누진성·형평성의 문제에까지 한국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기능·역할·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런 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매우 기쁘다.

### 자발적 신고제, 장기적으로 형평성 제고 기여

장경덕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 형평성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공평하게 세금 부담을 나누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아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세정,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세행정을 하는 데 중요한 것이 현실에 바탕을 둔 실용주의라고 생각한다. 역외 은닉소득 양성화 문제, Tax Gap 추정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도 실용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외재산과 소득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과연 자발적으로 얼마나 신고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설계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생각해 봤을 때, 당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한 번 드러난 자산을 다시 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원을 투명하게 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해외계좌신고제가 3년째 실시되고 있는데, 신고 현황을 보면 10억원 이상 해외계좌를 가진 신고자가 개인의 경우 310명에 불과하다. 어느 연구소에서 추정 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 금융자산만 10억원 이상 가진 개인이 16만명이다. 물론 국내와 국외는 다르겠지만, 310명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센티브가 부족하거나, 처벌이 충분히 엄정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제대로 신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슈나이더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는 GDP의 24~26% 정도 된다. 300조원 이상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경우 9%, 영국은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자발적인 신고제도가 도움이 되었다면 한국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영세사업자 보다는 국외 자산·소득을 숨겨놓은 사람이 1차적인 타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인센티브를 많이 주느냐가 중요하다. 일정한 신고기한이 지나면 훨씬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더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채찍이 중요한 유인이 될 수 있다.

Tax Gap 문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거시·미시적으로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생생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세율이 높을수록, 비과세·감면제도가 복잡할수록, 현금거래가 많을수록 지하경제가 커지는 것인데 세제 차원에서 동시에 지원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세정과 세제가 함께 좋아지고 보통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좀 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 금융거래 중심 과세 인프라 구축 긴요

허승호/동아일보 논설위원

### 기자의 시선

방송에 탈세행위를 추적, 추징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비전문가들이 방송을 통해 탈세 기법을 배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방송은 세무공무원이 매우 힘들게, 또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자칫 '추징이 쉽지는 않구나. 모든 공무원들이 저처럼 헌신적이고 창의적이지는 않을 거야. 탈세해도 추징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중요하겠지만, 탈세에 공분을 일으키고 정의 구현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면 시정률은 충분히 확보된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탈세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물론 추적 기법을 낱알이 보여주면 프로그램이 더 재미 있어지기는 하겠지만 득보다 부작용이 많지 않나 걱정된다.

송기봉 국세청 공보관님께 특히 드리는 말씀이다.

### 과세 인프라 구축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역외 탈세 대응 방안’이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①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구축과 ②입증책임 재분배 문제다.

실물거래에서의 탈세 적발은 건건이 이뤄진다. 반면 금융을 통한 탈세 적발은 그물로 거르는 방식이다. 비유하자면 물고기 사냥에서 전자가 작살식이라면 후자는 그물식이다. 후자가 훨씬 효율적이다. 세원을 넓히고 조세공평을 이루기 위해 금융거래를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차명계좌 금지도 이를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 전면화가 탈세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세원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다.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적으로 지우기는 힘들다. 그러나 역외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탈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울 명분이 있다. 불성실납세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같은 제도개혁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국세청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연히 거부하고 징세행정기관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결단이 필요하다.

김덕중 국세청장님께 특별히 드리는 말씀이다.

### 역외 거래

최근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내국인 명단을 공개했는데, 등장하는 이름들이 화려하다. 여기에 대해 검찰과 관세청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과문(寡聞)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국세청의 관심은 덜한 느낌이다. 국세청이 자체 확보한 역외 탈세 혐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겠지만 공개된 자료를 놓친다면 국세청의 위상,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 사실 이는 원래 국세청의 고유 직무에 속한다.

김연근 국세조세관리관님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 새로운 도전의 기회

박근혜 정부의 135조원 공약이행 재원 중 27조원을 국세청이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제도 등으로 지하경제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했다.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현금거래, 자료상, 부의 편법이전, 역외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미발굴 노다지’인 셈이다. 과거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이 같은 일들이 하나둘 이루어져 조세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국세청의 전 직원들께 올리는 말씀이다. KPF



#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동향 13-08

##### 요약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세제 개편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A Better Bargain for the Middle Class: Jobs)’ 을 발표함
  -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고, 특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실효세율 상한을 2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미국기업의 해외소득(foreign earnings)에 대해 최소 수준의 세금(minimum tax)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함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7월 15일 지분투자와 채권 투자의 성격을 모두 가진 혼성금융상품(hybrid investment)투자에 관한 기업소득세 과세규정을 발표하고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7월 25일에는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발표함
  - 7월 29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소기업에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발표함
- 벨기에는 7월 17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개정한 세법을 발표함
- 터키는 7월 31일까지였던 조세사면(Tax amnesty)

기간을 2개월 연장함

#### 1.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A Better Bargain for the Middle Class: Jobs)’

##### 가. 개요

- 2013년 7월 30일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세제 개편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 (Factsheet : A Better Bargain for the Middle Class: Jobs)’ 을 발표함
  - 본 발표사항은 공화당의 법인세율 인하 요구를 받아 들이면서 제안한 것으로, 추후 공화당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대타협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소득에 대한 최소 수준의 세금부과 등 기업세제에 관한 개편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2월에 제안했던 ‘기업세제개혁의 설계(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를 근간으로 한 것임
    - 이 ‘기업세제개혁의 설계’ 에는 i)세무상 허점(loop-hole) 제거와 세원 확대, ii)국내 제조업 강화, iii)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iv)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조세시스템 정비, v)재정건전성 회복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이번 오바마 대통령 제안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 국내 공공기반시설의 재건, 10년 내에 45개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기관(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s)’의 건립, 미래 근로자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투자 등이 있음
- 또한 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노력을 촉구함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종료된 ‘재정지출자동감축(sequester)’을 대신하여, 향후 개인소득세제 개편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정책’ 시행을 약속함

#### 나. 기업세제에 관한 제안 내용

- 이번 발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세금부과 및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 성장지향의 4가지 기업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함
- 첫째,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세무상 허점(loop-hole)’을 제거하는 한편,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를 제안함
  - 기존 세무상 허점으로는 재고자산에 대한 후입선출법 적용, 석유 및 가스류(oil and gas)에 대한 세계 특혜, 과도한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sup>1)</sup>)의 자본이익의 분류, 법인 전용기(corporate jets)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등이 있음

- 둘째, 제조업체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및 클린에너지 생산활동 지원 등의 각종 공제 · 감면제도를 재정비하여, 제조업체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을 25% 이하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 양질의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셋째, 소규모 사업자에게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공장 건립이나 장비 취득에 대해 1백만달러까지 즉시 비용처리를 허용함
  - 세무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미국법인들의 해외 소득(foreign earnings)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되 최소 수준의 세금(minimum tax)을 부과하고자 제안함
  - 이를 통해 제조 · 생산기지만만 아니라 과세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함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 2. 중국의 기업소득세 과세규정 발표

### 가.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기업소득세 과세규정

- 7월 15일 국가세무총국은 지분투자자와 채권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성금융상품 투자(hybrid investment)에 관한 기업소득세 과세규정을 발표하고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 혼성금융

1) ‘Carried interest’란 헷지펀드나 사모펀드 등과 같은 변형적인 투자형태에 있어서, 해당 매니저가 파트너십에 기여한 부분보다 초과하여 지급받게 되는 투자펀드의 이익분배금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



투자상품으로 간주함

- 피투자기업은 투자약정상 이율에 따라 정기적인 이자 지급의 의무가 있을 것
- 투자기간과 특별한 조건이 명확하게 정의된 것으로서 투자기간이 종료되거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은 투자원금상환의 의무를 부담할 것
-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것
- 투자기업은 의결권을 갖지 않을 것
-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일상적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
- 적격 혼성금융상품에 투자한 기업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이자지급일에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피투자기업은 동일한 시기에 해당 이자비용이 공제되어야 함
  - 이자소득에는 최저보증이자, 확정수익 또는 확정 배당금이 포함됨
- 또한 피투자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은 투자원금과 상환금과의 차액을 채무조정손익으로 간주하여 각각 당기 손익에 포함시켜야 함

나.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규정 명확화

- 7월 25일 국가세무총국은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제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발표함
- 현행 규정상 2011년 1월 1일 이후 중국 본토에 설립된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은 5년간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음
  - 2년간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되며, 그 다음 3년간 50%가 감면됨

- 감면조치를 개시하는 시점은 해당 기업에 처음 수익이 발생한 연도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함

-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의 정의, 총소득의 개념, 감면조치 개시연도 등을 명확히 함
  -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은 관할기관의 인증을 받고, 간주기준이 아닌 실제기준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의 요건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소득이 총소득의 50%(자가개발 소프트웨어는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 총소득을 「기업소득세법」 제6조에 따라 계산한 총합계액으로 명확히 함
- 감면조치 개시연도는 사업개시 후 과세소득이 발생한 첫 해이며, 개시된 후에는 연속하여 적용해야 하고 도중에 기간을 정지할 수도 없음

다. 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면제

- 7월 29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소기업에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발표함
- 이 규정은 월 평균 매출액이 2만위안 이하인 소기업에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소기업은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
-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증대를 기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마정화 전문연구원)

### 3. 벨기에의 개정 세법 발표<sup>2)</sup>

- 벨기에 정부는 2013년 7월 17일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원천징수세, 등록세, 소비세 등을 개정한 세법을 발표함
- 법인세법 개정은 벨기에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가상이자율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에 대한 것으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함
  - 가상이자율 제도는 벨기에 투자 유치를 위한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로 다국적기업이 자기 자본금으로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는 제도임<sup>3)</sup>
  - 이 제도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고 투자수익률 증가로 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현재 벨기에에서 동 제도가 남용되어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가상이자율 제도 시행 후, 벨기에 정부는 2008년과 2010년 2차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업들이 자기자본 액수를 부풀려서 신고하는 등 제도 남용 사례들이 있었으며 그 건수가 2008년 3천여 건, 2010년엔 5천여 건에 달함
- 금번 법인세 개정으로 인한 가상이자율 결정 방법은 벨기에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채이자율과 연동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014년부터는 해당 이자

율은 과세연도의 두 해 전 7,8,9월의 평균 이자율로 정함

-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가상이자율이 2.742%이며 (중소기업은 3.2425%) 최대 가상이자율은 3%(중소기업은 3.5%)로 될 것임
- 현재는 전년도 전체의 평균 이자율로 하고 있음
- 개정된 이자율 산정법은 가상이자율이 이전의 방법보다 벨기에의 10년 만기 국채이자율과 비슷해지게 하면서 가상이자율을 낮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sup>4)</sup>

〈표 1〉 벨기에의 최근 가상이자율 일람표

(단위: %)

| 가상이자율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대기업   | 3.442 | 3.781 | 4.307 | 4.473 | 3.8   | 3.425 | 3     | 2.742 |
| 중소기업  | 3.942 | 4.281 | 4.807 | 4.973 | 4.3   | 3.925 | 3.5   | 3.242 |

자료: OECD, Taxation of corporate and capital income, 2013.

- 손금산입의 계산 기초사항도 변경되어 간접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들은 가상이자율 적용 대상 자본에서 제외되며 배당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식들도 가상이자율 적용 대상 자본에서 제외됨
- 현재는 최초 투자금을 250만유로 이상을 포함한 간접투자주식의 투자 유지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가상이자 손금산입 제도의 대상이 되며 해당 주식들은 배당소득 공제의 혜택도 동시에 누리고 있었음
-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벨기에 내의 주식들은 배당소득 공제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배당소득

2)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nlpdf/2013.nsf/PDFs/TT700729.pdf/\\$file/TT700729.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nlpdf/2013.nsf/PDFs/TT700729.pdf/$file/TT700729.pdf)

3)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534&\\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30620093729405431](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534&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30620093729405431)

4) <http://www.loyensloeffnews.be/en/publications/newslashes/tax-newsashes/tax-newsletter-june-2013.html>



공제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주식들만 가산  
이자 손금산입제도의 계산 기초로 산입됨

■ 소득세법 개정은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보너스(work  
bonus)'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음

- 종전의 고용보너스는 월 소득의 5.7%를 85유로 한  
도로 사회보장부담금에서 공제해 주었으나 금번 개  
정으로 월 소득의 8.95%를 최대 130유로까지 공제  
해 주는 것으로 인상되었음<sup>5)</sup>
- 벨기에에 거주자를 가지고 있거나 수입의 75% 이상  
이 벨기에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들도 이번 공제 인  
상의 수혜자 대상임
- 벨기에 연방정부는 근로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대폭 감면하였으며 이후 '고용보너  
스'로 불리게 되었음<sup>6)</sup>

■ 원천징수세 개정에서는 청산인여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을 종전 10%에서 25%로 인상하여 201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5%의 세율은 일반적인  
배당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세율임<sup>7)</sup>

- 청산인여는 회사 청산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액을 초과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을 의미함
- 즉, 청산인여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고 동  
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조치는 개인소유의  
회사에 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인 소유의 회사 청산 시 소유자가 받게 되는 지  
분율을 초과하는 지급에 대해, 배당과 동일한 세

율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지  
급에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함

- 다국적 기업은 EU의 청산소득세 면제를 규정하  
고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련 지침' 과 그 지침을  
준수하는 벨기에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산인여  
가 발생하더라도 금번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벨기에에는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부터 법  
인과 기타 법적인 실제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신고를  
하게 됨

- 이번 개정은 세무당국이 납세자들의 세무적 요구사  
항에 대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세금 산출사항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납세자들이 세무당국  
에 대한 여러가지 민원청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기  
간 등을 조정하는 근거가 됨

■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교육서비스 중 공  
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만 면  
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

■ 등록세 중 고정요율로 부과되는 등록세는 현행 25유  
로에서 50유로로 2배 인상 되었고 건물 또는 장기 리  
스의 이전, 또는 토지 임차권에 대한 등록세는 현행  
0.2%에서 2%로 인상됨(유연장 등록이나 혼인 신고가  
그 예임)

- 고정된 요율로 부과되는 등록세는 유연장 등록이나  
혼인 신고 등의 경우에 적용함
- 건물 또는 장기 리스의 이전, 또는 토지 임차권에 대  
한 등록세는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0.5%를 적용함

5) <http://www.bdo.be/en/tax-and-legal-services/tax/personenbelasting-2013/>

6) 한국노동연구원, 벨기에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고용보너스), 2011.11.

7) <http://www.clearstream.com/ci/dispatch/en/cic/CIC/Announcements/LuxCSD/Tax/2013/L13106.htm>

- 인상된 등록세는 7월 1일부터 적용함
- 등록세 인상으로 발생할 추가 세입은 2013년 48.5백만유로, 2014년에는 109.9백만유로, 2015년에서 112.9백만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담배 소비세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으며 2013년에는 5천만유로, 2014년에는 1억유로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sup>8)</sup>
  -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종가세<sup>9)</sup>를 0.1% 인상하였고 특별소비세는 1,000개피당 0.1유로 인상하였음
  - 쉐넬(잎담배)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1kg당 0.5유로 인상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흥성열 회계사)

#### 4. 터키, 조세사면 기한 9월 30일로 연장<sup>10)</sup>

- 터키 재무부는 8월 1일,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였던 조세사면(Tax amnesty)기간의 2개월 연장을 발표함<sup>11)</sup>
  - 터키는 역외에 은닉되어 있는 터키 국민들의 자산이 터키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되도록 「조세사면법(Amnesty law)」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거 2008년 11월에 시작하여 2009년 말에 끝난 지난 조세사면에서는 납세자들이 473억터키리라(TRY) 상당의 자산을 신고하였으며 과세당국은 15억 6천만터키리라의 세수를 확보하였음

- 동 기간 납세자들은 미신고 상태의 현금, 금, 외국화폐, 유가증권, 자본시장의 금융상품, 부동산 등 260억 달러(504억터키리라)의 자산을 자진 신고함
- 조세사면의 결과 5억 1천 5백만달러의 세수가 발생하였으며 신고한 자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2〉 등록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세입 예상액

(단위: 억터키리라)

| 자산 종류         | 신고된 금액 |
|---------------|--------|
| 현금과 편드        | 490.38 |
| 금             | 8.19   |
| 유가증권과 기타 금융상품 | 5.18   |
| 유형자산          | 0.19   |
| 부동산           | 0.12   |

- 금번 조세사면은 신고된 자산에 자산의 시장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의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였음
  - 일반적인 과세 방법은 이익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에 15~35%의 범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그러나 혜택이 적용된 세율에 의한 세금 납부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시 공제되지 않는
- 또한 금번 조세사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자산의 원천에 대해 확인하는 조사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함

8) [http://www.deloitte.com/view/en\\_BE/be/services/tax/tax-news-and-publications/tax-reforms-hub/belgium-budget-2013/6940e95dc790b310VgnVCM3000003456f70aRCRD.htm#Other\\_individual\\_tax\\_measures](http://www.deloitte.com/view/en_BE/be/services/tax/tax-news-and-publications/tax-reforms-hub/belgium-budget-2013/6940e95dc790b310VgnVCM3000003456f70aRCRD.htm#Other_individual_tax_measures)

9) 과세물건의 가격에 부과하는 조세임.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의 분류는 과세물건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과세물건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음

10)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T700812.pdf/\\$file/TT700812.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T700812.pdf/$file/TT700812.pdf)

11) 조세사면은 과거 고의적으로 회피된 세금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 숨겨져 있던 자산들이나 소득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역외로 은닉된 자산들에 대하여 특례 세율 적용, 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어 국내로 자산이 반입되는 효과를 가짐



- 자산이 터키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통계청 2013년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소폭 상승<sup>1)</sup>(2013.8.14.)
  - 2013년도 2분기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유로존(EA17)과 EU 27개국 모두 0.3%로 소폭 상승
  - 2013년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유로존(EA17)은 -0.7%, EU 27개국은 -0.2%를 기록

〈표 1〉 유로존(EA17) 및 EU 27개국의 2013년 1분기 GDP 성장률

| 국가                  | 전분기 대비 |      |      |      | 전년 동기 대비 |      |      |      |
|---------------------|--------|------|------|------|----------|------|------|------|
|                     | 2012   |      | 2013 |      | 2012     |      | 2013 |      |
|                     | Q3     | Q4   | Q1   | Q2   | Q3       | Q4   | Q1   | Q2   |
| 벨기에                 | 0.0    | -0.1 | 0.0  | 0.1  | -0.4     | -0.5 | -0.6 | -0.1 |
| 독일                  | 0.2    | -0.5 | 0.0  | 0.7  | 0.9      | 0.3  | -0.3 | 0.5  |
| 에스토니아               | 1.4    | 0.6  | -1.0 | 0.1  | 3.1      | 3.0  | 1.3  | 1.4  |
| 아일랜드                | -1.0   | -0.2 | -0.6 | -    | -0.5     | -1.0 | -1.0 | -    |
| 그리스 <sup>2)</sup>   | -      | -    | -    | -    | -6.7     | -5.7 | -5.6 | -4.6 |
| 스페인                 | -0.3   | -0.8 | -0.5 | -0.1 | -1.6     | -1.9 | -2.0 | -1.7 |
| 프랑스                 | 0.2    | -0.2 | -0.2 | 0.5  | 0.0      | -0.3 | -0.5 | 0.3  |
| 이탈리아                | -0.3   | -0.9 | -0.6 | -0.2 | -2.6     | -2.8 | -2.3 | -2.0 |
| 키프로스                | -0.8   | -1.4 | -1.7 | -1.4 | -2.3     | -3.5 | -4.7 | -5.2 |
| 룩셈부르크               | -0.2   | 2.2  | -1.6 | -    | -0.3     | 1.6  | 1.0  | -    |
| 말타                  | 0.6    | 0.1  | 0.0  | -    | 1.8      | 1.7  | 1.7  | -    |
| 네덜란드 <sup>3)</sup>  | -0.9   | -0.6 | -0.4 | -0.2 | -1.5     | -1.5 | -1.4 | -1.8 |
| 오스트리아 <sup>4)</sup> | 0.1    | -0.1 | 0.1  | 0.2  | 0.8      | 0.7  | 0.2  | 0.2  |

1) EU 통계청, Euro area GDP both up by 0.3%, 2013.8.14.

2) EU 이사회, Council adopts position on 2014 EU budget, 2013.9.2.

| 국가                  | 전분기 대비 |      |      |      | 전년 동기 대비 |      |      |      |
|---------------------|--------|------|------|------|----------|------|------|------|
|                     | 2012   |      | 2013 |      | 2012     |      | 2013 |      |
|                     | Q3     | Q4   | Q1   | Q2   | Q3       | Q4   | Q1   | Q2   |
| 포르투갈                | -0.9   | -1.8 | -0.4 | 1.1  | -3.6     | -3.8 | -4.1 | -2.0 |
| 슬로베니아               | -0.6   | -1.0 | -0.7 | -    | -2.8     | -2.8 | -3.3 | -    |
| 슬로바키아               | 0.2    | 0.1  | 0.2  | 0.3  | 1.9      | 1.0  | 0.8  | 0.8  |
| 핀란드                 | -0.1   | -0.8 | 0.2  | 0.7  | -1.6     | -2.2 | -2.4 | 0.0  |
| EA 17               | -0.7   | -0.6 | -0.3 | 0.3  | -0.7     | -0.9 | -1.1 | -0.7 |
| 불가리아                | 0.1    | 0.1  | 0.1  | -0.1 | 0.7      | 0.6  | 0.4  | 0.2  |
| 체코                  | -0.3   | -0.3 | -1.3 | 0.7  | -1.4     | -1.6 | -2.4 | -1.2 |
| 덴마크                 | 0.9    | -0.6 | 0.0  | -    | 0.0      | -0.4 | -0.7 | -    |
| 크로아티아 <sup>3)</sup> | -0.3   | -0.4 | 0.0  | -    | -1.9     | -2.3 | -1.5 | -    |
| 라트비아                | 1.3    | 1.2  | 1.2  | 0.5  | 5.3      | 5.6  | 5.6  | 4.3  |
| 리투아니아               | 1.5    | 0.7  | 1.3  | 0.6  | 3.8      | 3.1  | 4.2  | 4.1  |
| 헝가리                 | 0.0    | -0.5 | 0.6  | 0.1  | -1.7     | -2.5 | -0.5 | 0.2  |
| 폴란드                 | 0.4    | 0.1  | 0.2  | 0.4  | 1.7      | 0.8  | 0.7  | 1.1  |
| 루마니아                | -0.5   | 1.0  | 0.3  | 0.3  | -1.0     | 0.8  | 2.2  | 1.2  |
| 스웨덴                 | 0.1    | 0.0  | 0.6  | -0.1 | 0.3      | 1.5  | 1.6  | 0.6  |
| 영국                  | 0.7    | -0.2 | 0.3  | 0.6  | 0.1      | 0.0  | 0.3  | 1.4  |
| EU 27               | 0.0    | -0.5 | -0.1 | 0.3  | -0.4     | -0.7 | -0.7 | -0.2 |
| EU 28               | 0.0    | -0.5 | -0.1 | 0.3  | -0.5     | -0.7 | -0.7 | -0.2 |

주: '-' Data not available

- 1) The seasonal adjustment does not include a working-day correction for the following Member States: Ireland, Portugal, Romania and Slovakia
- 2) Percentage change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non-seasonally adjusted data.
- 3) Percentage change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working-day adjusted data.
- 4) Growth rates are calculated using the trend component.

- EU 이사회, 2014년 EU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 (2013.9.2.)<sup>2)</sup>
  - EU 이사회는 2014-2020 장기예산안(MFF) 기간 중 첫 번째 해인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
  - 이사회는 입장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수요를 위한 적



절한 마진을 유지하면서 장기예산안(MFF)의 지출  
한도를 철저히 준수

- EU commitment<sup>3)</sup>는 1,422억 3천만유로로 2013  
년 첫 번째 수정예산안 대비 6.15% 감소
- EU 분담금<sup>4)</sup>은 1,350억 유로로 2013년 첫 번째 수  
정예산안 대비 1.35% 증가

• 10월 넷째주에 EU 의회와의 협의 및 수정을 통해  
최종안이 채택될 예정이며, 이사회와 의회의 입장이  
상이할 경우 3주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

■ EU 의회, 2012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  
아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EU연대기금(The European  
Solidarity Fund:ESF)<sup>5)</sup> 지원 승인(2013.9.10.)<sup>6)</sup>

- EU연대기금은 2012년 10~11월 슬로베니아, 크로  
아티아, 오스트리아의 폭우 및 홍수 피해 복구를 위  
해 1,460만유로를 지원할 예정
-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슬로베니아에 1,400만유로,  
크로아티아에 약 28만유로, 오스트리아에 24만유  
로를 지원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IMF

■ 비관습적인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UMP)<sup>7)</sup>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2013.8.23.)\*

\* 연방준비은행 주최의 '경제정책 심포지엄' (Economic Policy  
Symposium)에서 Lagarde 총재 연설

• 비관습적인 통화정책 결과 금융시스템의 붕괴방지  
와 경제활동 부흥 등의 긍정적인 효과

-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무제한 국채 매입프  
로그램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 도입은 유로존의 극단적인 위험(tail risk)을 크게  
감소

- 또한 UMP의 확산효과(spillover)로 미국 연방 준  
비은행의 양적완화에 따라 미국 채권금리는  
100bp를 초과하였으며 세계 생산량이 1% 이상 증  
가되도록 기여

• 정책형성자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안정과 성장 회복 및 불균형 감소를 목표  
로 노력 필요

- 향후 비관습적인 통화정책의 종료는 각 국의 경제  
회복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출구전략의 형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

■ IMF, G-20 정상회의에 앞서 *Global Prospects and  
Policy Challenges* 보고서 발표(2013.9.4.)

• (동향 및 전망) 2013년 상반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2.75%로 경제는 여전히 약세이나, 2014년에 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선진국이 세계 경제성  
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주로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인하고, 미국은  
재정긴축 완화와 경기 순응적 통화정책 시행으로  
주택 · 노동시장의 개선과 함께 민간수요 증가

3) commitment는 수년간 시행될 조치에 소요되는 자금 지출을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4) 분담금(payment)은 EU 총국민소득의 1% 상당

5) EU연대기금(The European Solidarity Fund:ESF): 재정원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의 자연재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설립된 기금으로 연간  
한도는 10억유로

6) EU 의회, *Slovenia, Croatia and Austria to get 114 million aid to repair 2012 flood damage*, 2013.9.5.

7) 미국의 양적 완화, 영국의 대규모의 자산 매입 조치 등이 해당

- 이전에 경제성장 동력으로 지목되었던 신흥개발국은 경제성장률이 2010년 대비 2.5%p 하락
  - ☞ 주로 브라질 · 중국 · 인도의 약세에 기인하며 상품수출국(BRICS 포함)의 경제전망도 악화
- (위험요인) 세계 경제에 하방리스크는 여전히 존재
  - 유로존 금융시장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반면, 개별국가들 혹은 유로존이 당초 달성하고자 한 정책적 의지를 충분히 실천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재발할 가능성 존재
  - 일본은 재정건전화와 구조적 개혁이 미흡하게 집행될 시 하방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
  - 신흥개발국은 미국의 출구전략 전환과 자국의 악화된 경제기초(fundamental)로 인해 금융제약과 시장압력이 증가
- (정책적 대응) G-20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공조와 협력이 필요
  - (선진국) 비관습적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에 대해서 중앙은행 및 폭넓은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중기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건축 속도 조절이 중요
    - ☞ 이와 더불어 의무지출 개혁을 포함한 신뢰성 있는 부채감축 계획이 필요하고, 유로존은 은행 대차대조표 개선을 통한 신용공급의 완화 및 은행연합의 진전 등이 필요
  - (신흥개발국)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책적 대응을 하고, 환율방어를 위한 환율개입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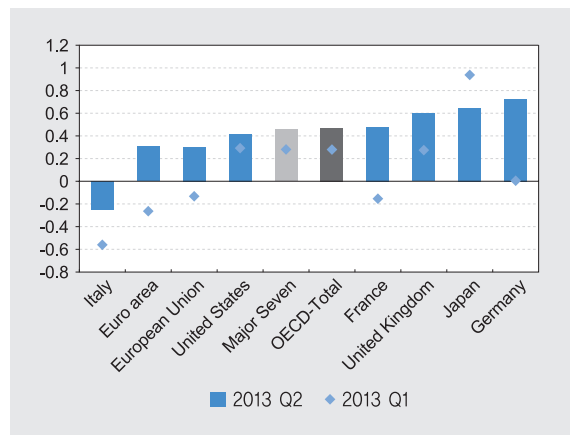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 OECD, 201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13. 8.22.)<sup>8)</sup>
  -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5%로 2013년 1분기 대비 0.3%p 증가
    - 유로지역 국가들의 실질 GDP 성장률 0.3%, 미국 0.4%, 영국 0.6%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높은 성장률을 보임
    - 반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0.6%로 직전분기 대비 0.3%p 감소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주: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을 거침  
 자료: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Quarterly growth rates of real GDP

- OECD,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sup>9)</sup> 발표 (2013.9.3.)<sup>10)</sup>
  - 선진국 경제상황은 회복되었으나 세계경제성장률은

8) <http://www.oecd.org/std/na/quarterlynationalaccounts-gdpgrowth-secondquarter2013oecd.htm>

9)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은 매년 5월과 11월에 발표되는 Economic Outlook의 중간보고서로 G7국가 중심의 약식 경제전망 보고서

10) <http://www.oecd.org/newsroom/advanced-economies-growing-again-but-some-emerging-economies-slowing.htm>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우 2013년 2분기 GDP 대비 2.5% 수준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흥국의 경우 위험요인의 잔재로 경제성장률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 북미지역, 영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로지역도 경기침체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신흥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필요

- 미국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이 요구
- 유로지역 국가들은 자동안정화장치가 확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은 2014년부터 소비세 인상을 단행할 예정
- OECD 회원국은 잔존하는 위험요인을 해결하고 경제성장률 증가추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재정 및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 유로존의 은행권 부실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 해결이 요구
- 선진국 및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 추세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성장제고 개혁, 글로벌경제 재조정, 일자리 창출을 막는 구조적 요인 감축 등의 정책 필요

〈표 2〉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GDP) 전망<sup>1)</sup>

(단위: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의 연율화, %)

|                      | 2012년 4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2분기 | 2013년 3분기 | 2013년 4분기 | 2012 | 2013 (Implied) |
|----------------------|-----------|-----------|-----------|-----------|-----------|------|----------------|
| 미국                   | 0.1       | 1.1       | 2.5       | 2.5       | 2.7       | 2.8  | 1.7            |
| 중국                   | 7.8       | 6.6       | 7.0       | 7.2       | 8.1       | 7.8  | 7.4            |
| 일본                   | 1.0       | 3.8       | 2.6       | 2.6       | 2.4       | 2.0  | 1.6            |
| 독일                   | -1.8      | 0.0       | 2.9       | 2.3       | 2.4       | 0.9  | 0.7            |
| 프랑스                  | -0.7      | -0.6      | 1.9       | 1.4       | 1.6       | 0.0  | 0.3            |
| 이탈리아                 | -3.7      | -2.2      | -1.0      | -0.4      | -0.3      | -2.4 | -1.8           |
| 영국                   | -0.9      | 1.1       | 2.9       | 3.7       | 3.2       | 0.2  | 1.5            |
| 캐나다 <sup>2)</sup>    | 0.9       | 2.2       | 1.7       | (4.8)     | (2.5)     | 1.7  | 2.0            |
| 유로 3개국 <sup>3)</sup> | -2.0      | -0.8      | 1.6       | 1.3       | 1.4       | 0.4  | 0.4            |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호주

1. 기타

- 호주 총선, 자유·국민당 6년 만에 정권교체(2013.9.7.)
- 자유·국민당 공약 소요 비용 추계(Fiscal Budget Impact of Coalition Policies) 발표<sup>11)</sup>(2013.9.5.)
- 2016-17년 60억호주달러 흑자 달성, 2016-17년까지 160억호주달러의 적자 감축 목표

-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재정상황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각 국가들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11) 자유·국민 연립당(The Liberal Party of Australia), <http://www.liberal.org.au/>, 2013.9.5

〈표 3〉 자유 · 국민당 공약 소요 비용 추계

(단위: 백만 호주달러)

|                          | 2013-14 | 2014-15 | 2015-16 | 2016-17 | 합계      |
|--------------------------|---------|---------|---------|---------|---------|
| 예산에 대한 효과 (Fiscal Basis) | 2,183   | 4,417   | 1,804   | 386     | 8,791   |
| 예산절감                     | 3,431   | 11,202  | 11,741  | 15,593  | 41,969  |
| 공약 소요 비용                 | -1,247  | -6,787  | -9,937  | -15,207 | -33,178 |
| 예산에 대한 효과 (Cash Basis)   | 1,141   | 2,429   | 1,943   | 576     | 6,090   |
| 기타 예산절감                  | 3,548   | 3,781   | 1,646   | 992     | 9,967   |
| 적자 감축효과                  | 4,689   | 6,210   | 3,589   | 1,568   | 16,057  |

자료: Fiscal Budget Impact of Coalition Policies

- 탄소세 폐지로 인해 향후 4년간 약 135억호주달러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광산세 폐지의 경우, 관련 지출이 중단됨에 따라 향후 4년간 146억호주달러 규모의 예산 순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표 4〉 탄소세 · 광산세 폐지에 따른 예산 효과

(단위: 백만 호주달러)

|              | 2013-14 | 2014-15 | 2015-16 | 2016-17 | 합계      |
|--------------|---------|---------|---------|---------|---------|
| 탄소세 폐지 순효과   | 179     | 91      | -2,240  | -4,079  | -6,048  |
| 탄소세 세수 감소    | -       | -2,245  | -4,530  | -6,744  | -13,519 |
| 탄소세 관련 지출 절감 | 179     | 2,336   | 2,290   | 2,666   | 7,471   |
| 광산세 폐지 순효과   | 1,884   | 4,325   | 4,430   | 4,032   | 14,670  |
| 탄소세 세수 감소    | -       | -800    | -1,100  | -1800   | -3,700  |
| 탄소세 관련 지출 절감 | 1,884   | 5,125   | 5,530   | 5,832   | 18,370  |

자료: Fiscal Budget Impact of Coalition Policies

- 해상 난민 봉쇄, 각종 보조금 중단 등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해 향후 4년간 약 420억호주달러의 예

산을 절감할 계획

〈표 5〉 예산 절감 계획

(단위: 억호주달러)

| 주요 예산 절감 항목                                        | 향후 4년간 절감 예상액 |
|----------------------------------------------------|---------------|
| 학생 보너스(School Kids Bonus) 지급 중단                    | 40            |
| 연방 공무원 감원                                          | 50            |
| 퇴직연금 납부를 증가 2년 연기                                  | 21            |
| 저소득층 퇴직연금 상쇄(low-income super offset) 혜택 폐지        | 29            |
| 인도적 차원의 난민유입 정책 폐지                                 | 13            |
| 실업자, 학생, 학부모 보조금(supplementary allowance) 중단       | 10            |
| 청정에너지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폐지     | 16            |
| 유급 육아양육(PPL: Paid parental leave) 제도 시행으로 기존 제도 대체 | 11            |
| 광산세 폐지에 따른 관련 지출 중단                                | 50            |
| 탄소세 폐지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중단                              | 75            |

자료: 자유 · 국민 연립당, <http://www.liberal.org.au/>

-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년 2분기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sup>12)</sup> (2013.9.6.)
  -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측면에서 가계 최종 소비 지출(0.4%p), 사적 총고정자본형성(1.4%p), 재고자산 변동(0.2%p)은 전기 대비 증가
    - 반면, 공공 총고정자본형성은 -1.4%p 감소

12) 호주통계청, <http://www.abs.gov.au/>, 2013.9.6.



〈표 6〉 2013년 2분기 호주 국민계정

(단위: %, 계절조정)

|                                                        | 2013년 1분기 대비 | 2012년 2분기 대비 |
|--------------------------------------------------------|--------------|--------------|
| GDP                                                    | 0.6          | 2.6          |
| 소비지출<br>(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 0.5          | 1.5          |
| 총고정자본형성<br>(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0.1         | -1.6         |
| 교역조건<br>(Terms of trade)                               | 0.1          | -4.9         |
| 실질 순 국민가처분 소득<br>(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 0.4          | 0.7          |

자료: 호주통계청 보도자료, 2013.9.6.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러(2%) 감소

〈표 7〉 캐나다 1분기 Fiscal Monitor 주요 결과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                          |                                               | FY2012-13 <sup>1)</sup> | FY2013-14 <sup>1)</sup> |
|--------------------------|-----------------------------------------------|-------------------------|-------------------------|
| 수입 (Revenues)            |                                               | 61,871                  | 64,530                  |
| 지출<br>(Expenses)         | 프로그램지출<br>(Program expenses)                  | 56,854                  | 59,412                  |
|                          | 공공채무비용<br>(Public debt charges) <sup>2)</sup> | 7,829                   | 7,670                   |
| 재정수지 (Budgetary balance) |                                               | -2,812                  | -2,552                  |

주: 1) 4~6월 누계액 기준

2) 공공채무비용은 시장채무비용, 비시장성부채에 대한 이차지출 등을 포함

자료: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June 2013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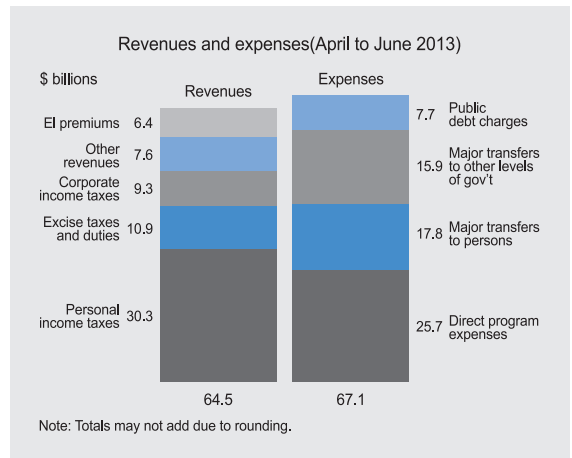
1. 예산 · 결산 등

■ 캐나다 재무부, FY2013-14 1분기 FISCAL MONITOR 발표<sup>13)</sup>(2013.9.6.)

- FY2013-14 1분기 재정적자(4~6월 잠정 누계액)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캐나다달러가 감소된 26억캐나다달러
  - (수입) 수입은 개인소득세, 고용보험료, 기타 세입이 반영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27억캐나다달러(4.3%) 증가한 약 645억캐나다달러
  - (프로그램지출) 프로그램 지출은 이전지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26억캐나다달러(4.5%) 증가한 594억캐나다달러
  - (공공채무비용) 공공채무비용은 약 2억캐나다달

〈그림 2〉 FY2013-14 1분기 세입 · 세출 구성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자료: The Fiscal Monitor-June 2013, 캐나다 재무부

■ FY2013-14 1분기 세출예산 집행 결과 보고서<sup>14)</sup> 발표<sup>15)</sup>(2013.9.6.)

13) 자료: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June 2013

14)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Quarterly Financial Report for the Quarter Ended June 30, 2012(UNAUDITED): 「재정관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의해 각 분기(1분기 제외)마다 발표되는 보고서로, 의회로부터 부처가 승인받은 지출규모와 이에 대한 지출 진행상황을 보고

15) 자료: 캐나다 재무부, Quarterly Financial Report

- 캐나다 재무부는 FY2013-14 1분기 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 가능한 잔액(authorities available for use)을 보고함

**〈표 8〉 FY2013-14 1분기 세출예산 집행 결과 및 지출가능 잔액**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                                                            | FY2013-14    |          | FY2012-13    |          |
|------------------------------------------------------------|--------------|----------|--------------|----------|
|                                                            | 회계연도내 지출가능잔액 | 1분기 지출   | 회계연도내 지출가능잔액 | 1분기 지출   |
| 총 일반예산<br>(Total budgetary authorities)                    | 87,611.8     | 38,956   | 85,398.4     | 38,248   |
| 총 투용자예산 <sup>1)</sup><br>(Total non-budgetary authorities) | -            | 16,745.9 | 20.6         | 16,655.8 |

주: 6월 30일 기준

1) 투용자예산은 융자, 투자 및 선금으로 구성

자료: 캐나다 재무부, 『FY2013-14 1분기 세출예산 집행결과보고서』, Statement of Authorities 재구성

## 2. 기타

- 캐나다 재무부, 9월 초 신학년을 대비한 ‘백 투 스쿨(Back-to-School)’ 시즌 세금 감면 실시(2013.8.27.)<sup>16)</sup>
  - ‘백 투 스쿨(Back-to-School)’ 시즌 세금 감면으로 캐나다 가구에 연평균 3,200캐나다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예상
  -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음
    -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자녀 야외활동 비용 최대 500캐나다달러에 대한 15%의 비환급성 세액공제
    - Children’s Arts Tax Credit: 예술 및 문화관련

수업 최대 500캐나다달러에 대한 15%의 비환급성 세액공제

- Public Transit Tax Credit: 월간 대중교통 패스 비용 15%에 대한 비환급성 세액공제
-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Tax Credit: 대학 등록금 및 교과서 금액 15%에 대한 비환급성 세액공제
- Tax Exemption for Scholarships, Fellowships and Bursaries: 장학금 세금 감면
- Student Loan Interest Tax Credit: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15%의 비환급성 세액공제
- Registered Education Saving Plan(RESP): 캐나다 교육적금(RESP)에 대한 세금 감면

- 캐나다 재무부, 고용보험료율(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ate) 동결 발표<sup>17)</sup>(2013.9.9)
  - 캐나다 재무부는 고용 진작을 위해 2014년부터 향후 3년간 고용보험료율을 2013년 현행 수준으로 동결
    - *Economic Action Plan 2013*에서는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2015년에 100캐나다달러당 1.98캐나다달러까지 인상하고, 2016년에 1.93 캐나다달러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회복세로 인해 실업률이 감소함에 따라 2013년 수준(1.88캐나다달러)으로 동결하기로 함
    - 고용보험료율 동결로 인해 고용자 및 피고용자는 2013년에 약 6억 6천캐나다달러 절약 예상
    - 2017년부터 보험료율에 ‘Seven-year rate setting mechanism’<sup>18)</sup>을 적용할 계획이며, 보험

16) 자료: 캐나다 재무부(<http://www.fin.gc.ca/n13/13-107-eng.asp>)

17) <http://www.fin.gc.ca/n13/13-114-eng.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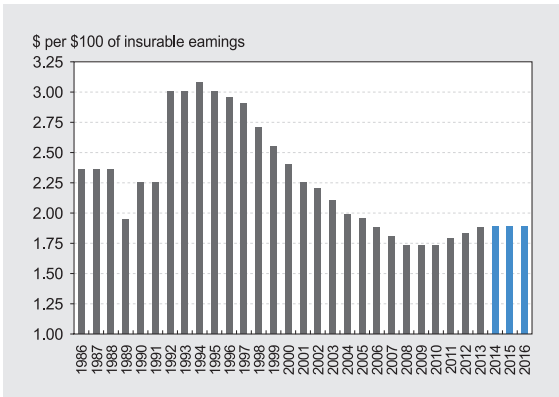
18) *Economic Action Plan 2012*는 고용보험료의 요율 안정화를 위해, 고용보험 계정의 균형이 달성된 이후부터 요율을 7년간 동결하는 ‘Seven-year rate setting mechanism’를 논의한바 있음



료율 조정폭은 최대 5센트로 제한

[그림 3] 고용보험료를 추이

(단위: 캐나다달러)



자료: 캐나다 재무부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 프랑스

### 1. 예산·결산 등

- 2014년 예산 가이드라인 발표(2013.9.11.)<sup>19)</sup>
  - (경제전망) 경제성장률은 대외환경 개선과 내수진작에 힘입어 2013년 0.1%에서 2014년 0.9%로 상승할 전망
  - (5가지 정책 핵심과제)
    -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 5%로 감소 등

19) 자료: 정부포탈, <http://www.gouvernement.fr/>

20) 자료: 정부포탈, <http://www.gouvernement.fr/>

21) 자료: 정부포탈, <http://www.gouvernement.fr/>

22) -프랑스 연금제도는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3층으로 구성되며, 1층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제도, 2층은 기업연금성격의 의무보험제도이며 3층은 임의가입 추가제도

-2020년 연금적자 207억유로=기초연금제도 76억유로+기업연금성격의 의무보험제도 87억유로+임의가입 추가제도 44억유로

- 재정적자 감축 노력의 지속: 150억유로의 전례없는 재정지출 절감 실시
- 사회·조세정의 실현: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기초 의료보험 수혜대상자 확대 등
- 기업혁신 촉진위한 법인세제 개편: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CICE)' 혜택 확대 등
- 가계에 대한 세금 정비: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세율 재조정 등
- 예산안은 9월 25일경 발표될 예정

### 2. 기타

- 재무부, 『경제·고용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2013.8.21.)<sup>20)</sup>
  - (경제상황) 2013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전 두 분기 대비(2012년 4분기와 2013년 1분기 연속 -0.2%) 0.7%p 증가한 0.5%로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경기회복세에 진입
  - (고용상황) 경기회복이 점차 고용상황을 개선하여 2013년 상반기 일자리 감소수는 지난해(9만 2천개) 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3만 6천개로 집계
  - (정책)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시간제 근무제도 활용을 장려하고 구직자 직업훈련 지원을 증대할 계획
- 연금개혁안 발표(2013.8.27.)<sup>21)</sup>
  - (배경) 인구고령화로 연금적자<sup>22)</sup>는 2020년 207억유

로, 2040년 270억유로로 증가할 전망이며,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 필요성 대두

- (목표) 2020년까지 연금재정의 균형 달성과 2020-40년 균형재정 유지를 목표로 설정
- (주요 개혁안)
  - 2017년까지 노동자와 고용주의 연금기여금 총 0.3%p 인상
  - 연금 전액을 수령받기 위한 기여금 납입기간이 2020년 이후 3년마다 1분기씩 점차 늘어나 2035년에는 41년 3분기에서 43년으로 증가
    - ☞ 법정 퇴직연령은 62세로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62세보다 더 일해야 완전 연금의 수급 가능

〈표 9〉 완전연금의 수급을 위한 납입기간

| 출생년도                | 퇴직연령 62세 도달시점 | 기여금 납입기간 |
|---------------------|---------------|----------|
| 1958년               | 2020년         | 41년 3분기  |
| 1961년               | 2023년         | 42년      |
| 1964년               | 2026년         | 42년 1분기  |
| 1967년               | 2029년         | 42년 2분기  |
| 1970년               | 2032년         | 42년 3분기  |
| 1973년 <sup>1)</sup> | 2035년         | 43년      |

주: 1) 1973년 이후 출생자 43년 적용  
 자료: R forme des retraites, 2013,8,27.

- 2015년까지 평균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는 중노동(hard labor)<sup>23)</sup>의 방지를 위한 근로자 계좌가 생성되며, 어려움의 노출정도에 따라 계좌에 포인트가 적립되어 재취업 훈련, 조기연금수령 등에 사용
- (연금재정 전망) 프랑스의 3층 연금제도 중 연금개

편 대상인 1층 기초연금제도의 연금개편에 따른 적자는 2014년 50억유로에서 2040년 균형재정 전망

〈표 10〉 연금개편에 따른 적자 변화

(단위: 십억유로)

| 구 분                                | 2014 | 2020 | 2030 | 2040 |
|------------------------------------|------|------|------|------|
| (1) 기초연금제도 적자 <sup>1)</sup>        | -8.8 | -7.6 | -8.7 | -13  |
| (2) 장·단기 총 회복 조치                   | 3.8  | 7.3  | 11.5 | 16   |
| (3) 공정한 연금시스템                      | -0.2 | -0.7 | -2.7 | -4.1 |
| (4) 중노동관련 기업부과금                    | 0    | 0.5  | 0.5  | 0.8  |
| (5) 농업연금정비                         | 0.2  | 0.2  | 0.3  | 0.3  |
| 연금개혁후 적자<br>(=(1)+(2)+(3)+(4)+(5)) | -5   | -0.3 | +0.9 | 0    |

주: 1) 연금개편 대상인 1층 국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제도  
 자료: R forme des retraites, 2013,8,27.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 독일

### 1. 기타

- 재무부, 『정부 보조금 보고서』\*를 내각에 제출(2013. 8.14.)<sup>24)</sup>
  - \* 본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보조와 조세 감면 추세를 2년마다 발표함
  - (규모) 연방 예산의 보조금은 2009년 284억유로에서 2013년 213억유로로 감소

23) 무거운 짐의 운반, 먼지와 매연·기계적 진동·유해화학물질·소음이 많은 작업환경하의 노동 등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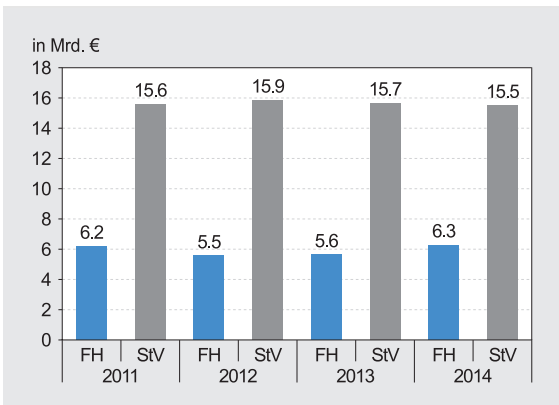
24) 독일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3/08/2013-08-14-PM62.html>



[그림 4] 보조금 규모 추이(2011-2014)

(단위: 십억유로)



주: 연도별 재정보조(FH)과 조세 감면(StV)의 추세임

자료: 독일 재무부, 24th Subsidy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 GDP 대비 보조금 규모 역시 2009년 1.2%에 2013년 0.8%로 감소

- 경제·금융위기의 여파로 높았던 보조금 수준을 정부가 조속하게 감축함

• 분야별 변화

- (재정보조) 에너지 시스템 변경과 관련한 추가적 재정보조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 보조의 감축으로 재정보조 수준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조세 감면) 조세감면으로 인한 연방 수입 부족분은 2010년 186억에서 2014년 155억으로 감소함

• (보조금 정책) 보조금 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양적 증가와 배분적, 경쟁적, 환경적 효과임

- 이를 지향하는 보조금 정책은 재정 건전화의 목표 준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효율성도 증대함

■ 일반정부, 2013년 상반기 약 85억유로의 재정흑자 달성(2013.8.23.)<sup>25)</sup>

• 독일은 상반기의 양호한 고용 여건과 안정적 경제발전 전에 힘입어 GDP 대비 약 0.6%의 흑자 달성(연방 통계청 발표)

•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는 22억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주 정부는 12억유로, 지방 정부는 53억 유로, 사회보장기금은 43억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 (수입) 2013년 상반기 일반정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3억유로(2.8%) 증가한 6,045억유로

- (지출) 2013년 상반기 일반정부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8억유로(2.7%) 증가한 5,960억 유로

■ 독일 내각, 『연방의 재정 상황 및 독일 경제에 관한 보고서』 채택(2013.8.28.)<sup>26)</sup>

• Schäuble 재무 장관은 성공적인 재정건전화는 건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 정책의 결과라고 강조함

• (재정 상황) 보고서는 독일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으며, 실업률은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 2014년까지 연방정부는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임

- 향후 4년 내에 채무 비율을 GDP의 68.5%으로 10%p 이상 감축할 것임

• (경제·재정 전략) 공공 재정 건전화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고용 증대, 소득 향상, 견고한 세입 기반을 제공함

- 성장 친화적인 건전화는 명확한 우선순위와 효율

25) 독일 통계청 [https://www.destatis.de/EN/PressServices/Press/pr/2013/08/PE13\\_279\\_813.html](https://www.destatis.de/EN/PressServices/Press/pr/2013/08/PE13_279_813.html)

26) 독일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3/08/2013-08-28-PM64.html>

성 제고와 관련 있음

- 연방정부는 R&D, 교육, 인프라 등에 투자하여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있음
- 연방정부는 조세 감면, 행정 간소화,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효율성 강화, 구조 개혁 등을 추진해왔으며, 장기적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 실적 발표(2013.9.5.)<sup>27)</sup>
  - 2013년 상반기 공적건강보험은 8.9억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하반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면 2013년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될 전망
  - (공적건강보험조합) 2013년 상반기 10.9억유로의 흑자 기록하며 재정 상태가 향상됨
  - (건강보험기금) 2013년 상반기 19.8억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계절적 요인을 포함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거의 상쇄되어 균형을 이룰 전망
  - 2013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재정 준비금은 277억유로를 형성함(공적건강보험조합 166억유로, 건강보험기금 111억유로)

〈표 11〉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2013년 상반기)

(단위: 백만유로)

|          | 공적건강보험조합 | 건강보험기금 |
|----------|----------|--------|
| 지출       | 96,584   | 96,001 |
| 수입       | 97,672   | 94,021 |
| 흑자 또는 적자 | +1,089   | -1,979 |

자료: 독일 보건부 보도자료 재구성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27) 독일 보건부 보도자료

<http://www.bmg.bund.de/ministerium/presse/pressemitteilungen/2013-03/positive-finanzielle-bilanz-der-gkv.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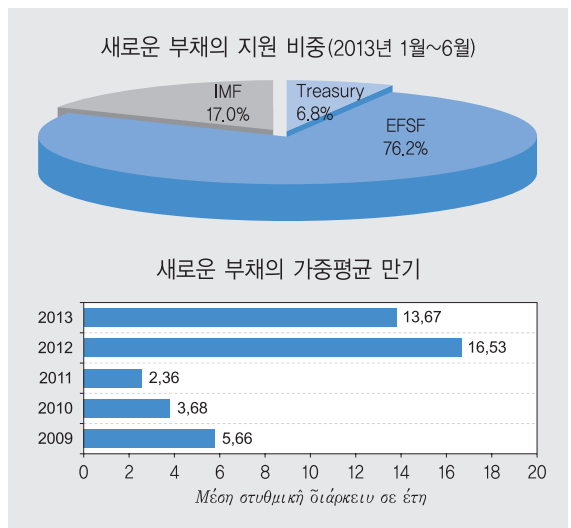
28) 자료: 그리스 재무부

## 그리스

### 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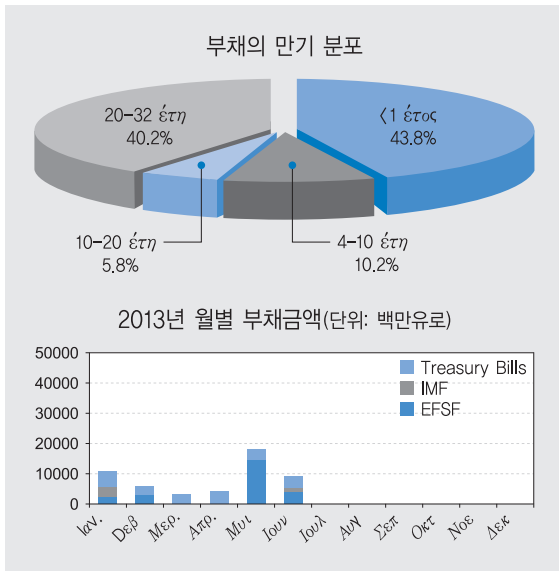
- 그리스 재무부는 국가부채(sovrenign debt)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2013.8.25.)<sup>28)</sup>
  - 최근 발표된 2013년 2분기 중앙정부의 부채는 2012년 12월 3,055억유로에서 2013년 6월 3,213억유로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이는 EFSF에서 은행의 자본확충을 얻기 위함이 지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언급
  - 2013년 상반기 새로운 부채의 지원비율은 EFSF가 가장 많으며 가중평균 만기는 2012년 16.5년에서 2013년 13.7년으로 줄어 들

〔그림 5〕 그리스 부채 현황





[그림 5]의 계속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이탈리아**

1. 예산·결산 등

- 국가종합회계실(Ragioneria Generale Dello Stato: RGS), 2013년 지출예산예측치(IL BUDGET RIVISTO 2013) 발표(2013.8.30.)<sup>29)</sup>
  - 예산정보 및 경제 데이터 정보를 확장하고 정부의 지출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09년 재정법(n.196)<sup>30)</sup>과 2013년 예산개정과 함께 정부부처 활동에 관한 예산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2013년(n.24) 지침<sup>31)</sup>에 의해 작성

29) RGS (<http://www.rgs.mef.gov.it/VERSIONE-I/e-GOVERNME1/Contabilit/Pubblicazioni/Budgetrivisto2013/index.html>)

30) 공공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예산 감시 및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31) RGS, *Circolare del 13 maggio 2013*, n. 24. ([http://www.rgs.mef.gov.it/VERSIONE-I/CIRCOLARI/2013/Circolare\\_del\\_13\\_maggio\\_2013\\_n\\_24.html](http://www.rgs.mef.gov.it/VERSIONE-I/CIRCOLARI/2013/Circolare_del_13_maggio_2013_n_24.html))

32) 재무성, 「平成26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 예산조정법안과 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초기지출 예산에 관한 예측치를 업데이트

〈표 12〉 2013 예산과 예측치 비교

(단위: 천유로, %)

|             | 예측치(A)     | 예산(B)      | 차이(A-B)   | % 변화  |
|-------------|------------|------------|-----------|-------|
| 인건비         | 75,348,160 | 74,844,277 | 503,882   | 0.67  |
| 임금          | 73,035,269 | 73,072,935 | -37,666   | -0.05 |
| 기타 인건비      | 2,312,890  | 1,771,342  | 541,548   | 30.57 |
| 관리비         | 8,347,889  | 7,578,254  | 769,635   | 10.16 |
| 소비재         | 2,628,804  | 2,241,290  | 387,515   | 17.29 |
| 서비스 및 재화 구입 | 5,185,446  | 4,840,508  | 344,938   | 7.13  |
| 기타비용        | 533,638    | 496,456    | 37,182    | 7.49  |
| 특별비         | 878,660    | 848,961    | 29,699    | 3.50  |
| 금융서비스       | 774,648    | 776,728    | -2,080    | -0.27 |
| 특수비용        | 3,280      | 2,687      | 593       | 22.08 |
| 지출소송        | 100,732    | 69,546     | 31,186    | 44.84 |
| 감가상각        | 1,525,255  | 1,549,575  | -24,320   | -1.57 |
| 총합          | 86,099,964 | 84,821,068 | 1,278,896 | 1.51  |

자료: IL BUDGET RIVISTO 2013

〈자료 수집 및 정리: 최주연 연구원〉

**일본**

1. 예산·결산 등

- 99조 2,500억엔 규모의 FY2014 예산 요구액 발표<sup>32)</sup> (2013.9.4.)
  - FY2014 일반회계 개산 요구액은 99조 2,500억엔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조 6,384억엔 증가

- 총지출 요구액은 73조 9,707억엔이며, 후생노동성이 30조 5,620억엔으로 각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준

〈표 13〉 FY2014 일반회계 개산 요구액

(단위: 억엔)

| 소 관           | 전년도 예산액<br>(당초) | FY2014    |        |           | 전년 대비<br>증감액 |
|---------------|-----------------|-----------|--------|-----------|--------------|
|               |                 | 요구액       | 요망액    | 합계        |              |
| 황실비           | 61              | 55        | 8      | 63        | 2            |
| 국 회           | 1,350           | 1,377     | -      | 1,377     | 27           |
| 재판소           | 2,989           | 3,100     | 67     | 3,167     | 178          |
| 회계감사원         | 159             | 166       | 7      | 174       | 15           |
| 내각·내각본부등      | 6,042           | 5,785     | 1,285  | 7,070     | 1,028        |
| 경찰청           | 2,410           | 2,391     | 268    | 2,659     | 249          |
| 총무성           | 172,329         | 174,968   | 431    | 175,399   | 3,069        |
| (내 지방교부세교부금등) | (163,927)       | (167,654) | (-)    | (167,654) | (3,727)      |
| 법무성           | 6,965           | 7,120     | 462    | 7,582     | 616          |
| 외무성           | 6,083           | 5,734     | 1,109  | 6,843     | 760          |
| 재무성           | 25,628          | 21,674    | 728    | 22,402    | △3,277       |
| 문부과학성         | 53,558          | 50,633    | 8,402  | 59,035    | 5,477        |
| 후생노동성         | 294,316         | 304,003   | 1,617  | 305,620   | 11,304       |
| 농림수산업성        | 21,292          | 20,356    | 3,745  | 24,101    | 2,808        |
| 경제산업성         | 8,948           | 10,098    | 2,216  | 12,314    | 3,366        |
| 국토교통성         | 51,454          | 46,764    | 12,688 | 59,452    | 7,998        |
| 환경성           | 2,585           | 2,994     | 539    | 3,533     | 948          |
| 방위성           | 47,532          | 47,312    | 1,606  | 48,917    | 1,385        |
| 소 계           | 703,700         | 704,530   | 35,177 | 739,707   | 36,007       |
| 국채비           | 222,415         | 252,792   | -      | 252,792   | 30,377       |
| 합 계           | 926,115         | 957,323   | 35,177 | 992,500   | 66,384       |

주: 1)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개산 요구액은 세수 등에 대해서 기계적 전망을 실시한 임시 금액  
 2)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각 부처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집계한 것으로, 조사 결과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재무성, 「FY2013 제 1사분기 예산사용 상황의 개요」 발표<sup>33)</sup> (2013.9.10.)

- FY2013 1분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9.1%, 이번 연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1분기 국가 지출 비율은 28.5%를 기록
- FY2013 1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32.0%, 이번 연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1분기 국가 지출 비율은 32.9%를 기록

〈표 14〉 FY2013 1분기 예산사용 상황의 개요

(단위: 억엔, %)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
| 세입                  |           | 세출                         |             | 세입                  |             | 세출                         |             |
| 세입예산액(A)            | 926,115   |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D)            | 1,003,000   | 세입예산액(A)            | 4,084,830   |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D)            | 4,015,929   |
| 1분기 국가 수납 금액(B)     | 85,129    | 1분기 국가 지출 금액(E)            | 285,909     | 1분기 국가 수납 금액(B)     | 1,308,383   | 1분기 국가 지출 금액(E)            | 1,324,180   |
|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 9.1 (2.1) |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 28.5 (20.9) |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 32.0 (32.5) |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 32.9 (31.9) |
| 1분기 까지 누계(C)        | 85,129    | 1분기 까지 누계(F)               | 285,909     | 1분기 까지 누계(C)        | 1,308,383   | 1분기 까지 누계(F)               | 1,324,180   |
|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 9.1 (2.1) |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F/D) | 28.5 (20.9) |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 32.0 (32.5) |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F/D) | 32.9 (31.9) |

주: ( ) 는 전년 동기 비율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33) 재무성, 「平成25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포르투갈**

1. 기타

- 통계청, 2013년 2분기 GDP 성장률 직전 분기 대비 1.1% 증가 발표<sup>34)</sup> (2013.8.14.)
-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10분기 연속 GDP 하락 이후 첫 GDP 증가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2%를 기록

〈표 15〉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

|                | 2011Q3 | 2011Q4 | 2012Q1 | 2012Q2 | 2012Q3 | 2012Q4 | 2013Q1 | 2013Q2 |
|----------------|--------|--------|--------|--------|--------|--------|--------|--------|
| 전년동기 대비 GDP성장률 | -1.8   | -3.1   | -2.3   | -3.2   | -3.6   | -3.8   | -4.1   | -2.0   |
| 직전분기 대비 GDP성장률 | -0.5   | -1.6   | -0.1   | -1.1   | -0.9   | -1.8   | -0.4   | 1.1    |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스페인**

1. 예산 · 결산 등

- 내각, 지역정부의 2014~2016년 재정목표와 공공채무 한도 승인(2013.8.30.)<sup>35)</sup>
- 지난 7월 말에 열린 재정정책회의(CPFF; Consejo de Política Fiscal y Financiera)를 통해 지역정부의 재정적자 목표와 채무한도를 설정했으며 8월 30일 내각이 이를 승인

- 지역정부(comunidades autonomas)의 2014~2016년 재정적자 목표(GDP 대비): (2014) -1.0% → (2015) -0.7% → (2016) -0.2%
- 지역정부의 채무한도는 2016년까지 GDP 대비 20.3%로 축소할 것을 계획

2. 기타

- 2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집계(2013.8.29.)<sup>36)</sup>
-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2013년 1분기: -0.5%) 대비 0.4%p 개선된 -0.1%
  - 스페인 경제는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2분기 마이너스 폭이 약 2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통계청은 수출 증가(전기 대비 6% 증가) 및 가계 소비지출 증가(전기 대비 0.1% 증가)가 경기 후퇴 속도를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
- 스페인 정부는 수출 확대, 재정적자 개선, 관광산업 호황 등이 지속된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로 반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노동개혁안 발표(2013.8.29.)<sup>37)</sup>
- 파티마 바네스(Fatima Banez) 노동부 장관, 근로계약과 고용형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안을 발표함
  - 현재 41개의 근로 계약을 5개로 간소화해 중소기업들의 채용 · 해고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게 함
  - 현재 산재되어 있는 성과급 관련 규정들을 고용법

34)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Produto Interno Bruto diminuiu 2,0% em volume no 2º trimestre de 2013 - 2º Trimestre de 2013

35) 스페인 재정부([http://www.minhap.gob.es/es-ES/Paginas/20130830\\_CM.aspx](http://www.minhap.gob.es/es-ES/Paginas/20130830_CM.aspx))

36) 스페인 재정부([http://www.minhap.gob.es/es-es/prensa/en%20portada/2013/Paginas/20130730\\_DEFICIT.aspx](http://www.minhap.gob.es/es-es/prensa/en%20portada/2013/Paginas/20130730_DEFICIT.aspx))

37) 스페인 총리실(<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inisterioEmpleoySeguridadSocial/2013/290813contratacion.htm>)

내에서 규정화하기로 함

- (기대효과) 이번 노동개혁안으로 인해 일자리 소멸 (Job-destruction)의 속도를 늦추고(22만 5천개의 일자리 소멸 방지) 1~1.2%p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지혜 연구원)

 영국

1. 예산 · 결산 등

- 영국 재무부, 해외 도박세(gambling tax)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 발표(2013.8.16.)<sup>38)</sup>
  - 해외에서 도박 회사를 운영하여 영국 소비자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경우, 2014년부터 영국에 도박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 발표
    - 현재까지는 해외에서 도박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영국에 도박세를 납부하지 않음
    - 이를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무제한적 벌금 (unlimited fines) 또는 도박운영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예정
  - 도박 위원회(Gambling Commission)는 영국의 해외 도박 시장이 매년 20억파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규제로 연 3억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재무부 경제차관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는 “해외 도박장 운영으로 영국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번 개혁으로 영국 소비자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해외 도박 운영자들은 공공재정

에 공정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영국 통계청, Economic Review 발표(2013.9.4.)<sup>39)</sup>
  - 영국 통계청은 Economic Review, September 2013에서 2013년 2분기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
    - 2013년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여 2분기 연속 성장세를 나타냄
      - ☞ 영국 경제는 2013년 상반기(1~6월)에 2012년 상반기 대비 0.9% 성장하였으며, 이는 3월 발표된 예산책임청(OBR)의 경제 · 재정전망보고서(Economic and Fiscal Outlook) 전망인 0.6%를 뛰어넘는 수치
    - FY2012-13 공공부문 순채무(Public Sector Net Debt: PSND)는 2013년 2분기 GDP 대비 74.9%를 차지
    - 실업률은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

〈표 16〉 주요 경제 지표

|                           | 2012 | 2012 | 2013 | 2013 | 2013 | 2013 | 2013 | 2013 |
|---------------------------|------|------|------|------|------|------|------|------|
|                           |      | Q4   | Q1   | Q2   | 4월   | 5월   | 6월   | 7월   |
| GDP <sup>1)</sup>         | 0.2  | -0.2 | 0.3  | 0.7  |      |      |      |      |
| PSND(% GDP) <sup>2)</sup> | 74.2 | 74.7 | 74.2 | 74.9 | 73.9 | 74.2 | 74.9 | 74.5 |
| Unemployment Rate         | 7.9  | 7.8  | 7.8  | 7.8  | 7.8  | 7.8  | 7.8  |      |
| CPI <sup>3)</sup>         | 2.8  | 2.6  | 2.8  | 2.7  | 2.4  | 2.7  | 2.9  | 2.7  |

주: 1) Percentage change on previous period, seasonally adjusted  
 2) 2012-13 Financial Year  
 3) Percentage change on previous period a year ago, seasonally adjusted

자료: 통계청, Economic Review, September 2013.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38)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gambling-tax-new-rules-and-sanctions-to-prevent-avoidance-by-gambling-companies>  
 39) 영국 통계청, <http://www.ons.gov.uk/ons/rel/elmr/economic-review/september-2013/art-septemberer.html>



미국

1. 기타

- 오바마 대통령, 2014년 연방공무원 및 군사 관련 서비스(Uniformed Services)<sup>40)</sup> 종사자 임금 1% 인상 결정(2013.8.30.)
  - 임금 인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연방공무원 임금은 지난 3년간 동결되었으나 점진적 경기회복을 고려하여 일괄 1%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sup>41)</sup>
    - 군사 관련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월 기본급여의 1% 인상 결정<sup>42)</sup>

〈자료 수집 및 정리: 권나현 전문연구원〉

40) 5개 군사서비스(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와 2개 비군사서비스(공공보건장교단, 해양지질연구단)로 구성

41)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Letter from the President—Regarding Alternate Pay for Civilian Federal Employees*, 2013.8.30.

42)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Letter from the President—Regarding Alternate Pay Plan for Members of the Uniformed Services*, 2013.8.30.

# 정책 흐름



- 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 '14년 7월, 65세 이상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3/4분기 점검 추진
-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 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 2012년도 324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

# 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 역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예산안 -

\* 본 자료는 2013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예산정책과에서 발표한 「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할 일을 최대한 담아 편성

⇒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다하면서도 미래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여력 확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

## I. 2013년 예산안 주요 내용

### 1 내년도 재정여건

- **(경제여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 국내경제는 '13년 2.7%, '14년 3.9%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 국내의 주요기관 '14년 성장률 전망(평균): 3.8~3.9% 수준 (OECD, 한은, IB 등)
  - 다만,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 잠재
- **(재정여건)**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수요 증대·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소요는 지속 증가
  -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 유지 등 경제활성화 노력도 필요

### 2 2014년 예산안의 모습

- '14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역점
  - **(총수입)**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13년 본예산 대비  $\Delta 0.5\%$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
  - **(총지출)** 경제활성화를 위해 '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7조원으로 편성

⇒ 금년 추정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4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여 경기회복세를 뒷받침

- '14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1.8\%$ 로 '13년 추정 수준
  -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13년 추정보다 소폭 상승

\* 주요국 국가채무 비율('12년 기준, %): OECD 평균 108.8, 美 106.3, 日 219.1, 獨 89.2, 英 103.9

(조원, %)

|                   | '13예산        |     |              |     | '14안         | 증가율  |     |
|-------------------|--------------|-----|--------------|-----|--------------|------|-----|
|                   | 본예산          | 증가율 | 추경           | 증가율 |              | 본예산  | 추경  |
| ○ 총 수입            | 372.6        | 8.5 | 360.8        | 5.0 | 370.7        | △0.5 | 2.8 |
| ○ 총 지출            | 342.0        | 5.1 | 349.0        | 7.2 | 357.7        | 4.6  | 2.5 |
|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4.7 (△0.3)  |     | △23.4 (△1.8) |     | △25.9 (△1.8) |      |     |
| ○ 국가채무 (GDP 대비)   | 464.6 (34.3) |     | 480.3 (36.2) |     | 515.2 (36.5) |      |     |

■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

- 성장세 회복을 통한 세수증가, 중기 총지출 증가율 하향 조정 등으로 재정수지를 개선
- 세출절감·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강화, 재정위험관리 시스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재정건전성 회복노력 추진

⇒ (재정수지) '17년 균형 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  
(국가채무) 30%대 중반 수준('17년 35.6%)으로 하향 안정화

재정건전성 관리

① 중장기 재정준칙 강화

-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p 낮게 관리  
\* 지출증가율(%): ('11~'15) 4.8 → ('12~'16) 4.6 → ('13~'17) 3.5
-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Paygo\* 법제화 검토  
\* 의무지출 증가·재정수입 감소 수반 법률 제출시에는 재원확보 방안을 같이 마련
-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를 확대하고, 다수

기관에 분산 되어 있는 재정평가 기능을 통합

② 전면적인 세출절감, 세입확충 노력 추진

- (세출) 업무추진비·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 지출절감 노력 강화, 법령개정 등 항구적 재정개혁으로 낭비요인을 제거
- (세입)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③ 공공부문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관리 강화

- 공공부문 전체(중앙·지방정+공기업) 부채를 산출·관리(~'14년)
-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구축

3 2014년 예산안의 중점

① 「경제활력·일자리」예산으로 5가지 과제 집중 지원

- 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 ② 일자리 창출
- ③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 ④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 ⑤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                       |                                                                                                                                                                       |
|-----------------------|-----------------------------------------------------------------------------------------------------------------------------------------------------------------------|
| 경제활력 회복<br>성장잠재력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촉진 등 내수활성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li> <li>• 지방재정 확충, 지역 SOC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li> <li>• 창조경제 기반 조성 and 미래 먹거리 창출</li> </ul>            |
| 일자리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li> <li>• 근로방식 개편 and 일자리 mismatch 해소</li> <li>•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강화</li> </ul>                               |
| 서민생활 안정<br>삶의 질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li> <li>• 일-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li> <li>• 예술인 복지 확대 and 문화향유 기회 확산</li> <li>•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li> </ul> |
| 국민안전 확보<br>든든한 정부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사회약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li> <li>• 안보·외교역량 강화 and 평화통일 기반 구축</li> <li>• 정부 3.0 추진</li> </ul>                                     |
| '국민-현장-협업'<br>중심 재정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직 보수동결 등 공공부문부터 지출절감 노력</li> <li>• 유사·중복, 관행·전시성 낭비사업 정비</li> <li>•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li> </ul>                  |

②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 역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 강력한 세출절감으로 국민 세금의 누수·중복을 방지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
- 주요 반영내용

| '14년 예산                                                                                                                                                                                                                                          | 지원내용                                                                                                                                                                                                                          |
|--------------------------------------------------------------------------------------------------------------------------------------------------------------------------------------------------------------------------------------------------|-------------------------------------------------------------------------------------------------------------------------------------------------------------------------------------------------------------------------------|
| <b>[경제부흥]</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투자규모(16.9 → 17.5조원)</li> <li>•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800 → 2,400억원)</li> <li>• 행복주택 4.6만호 추가 (신규 9,530억원)</li> <li>•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0.2 → 0.3조원)</li> <li>• 국가장학금 지원(2.8 → 3.2조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까지 R&amp;D투자 GDP의 5.0%</li> <li>• 당초 계획('21년)보다 조기개발 추진</li> <li>• 5년간('13~'17년) 총 20만호 공급</li> <li>• '배' 종합보증보험 확대시행 (3 → 12개 시군)</li> <li>• 지원액 인상(연 22.5~180만원 증액)</li> </ul> |
| <b>[국민행복]</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중증질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연 94 → 34만원)</li> <li>• 개별급여 전환·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12만명)</li> <li>• 기초연금 도입 (인당 연간 120 → 최대 240만원)</li> <li>•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1학년, 신규 1,225억원)</li> <li>• 경찰인력 4천명 증원(+1,031억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암제, MRI 등 급여화 추진</li> <li>• 통합급여 → 개별급여('14. 10월)</li> <li>• 소득하위 7분위까지 지원 ('14. 7월)</li> <li>• '17년까지 순학년으로 확대</li> <li>• '17년까지 경찰인력 2만명 증원</li> </ul>                            |
| <b>[문화융성]</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투자규모(5.0 → 5.3조원)</li> <li>• 문예기금(0.1 → 0.2조원)</li> <li>• 예술인 복지(100 → 200억원)</li> <li>• 관광산업 융자(0.3 → 0.5조원)</li> <li>• 평창올림픽 지원(1.1 → 1.2조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까지 문화비중 2.0%</li> <li>• 민간 공연단체 지원 확대</li> <li>• 사회보험료 신규지원</li> <li>• 중급 호텔시설 확충</li> <li>• 경기장·진입도로 등 인프라 확충</li> </ul>                                                        |
| <b>[평화통일 기반구축 등]</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 월급 15% 인상</li> <li>•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인상 (5,298 → 5,436억원)</li> <li>• ODA 확대(2.1 → 2.3조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까지 병 월급 '12년 대비 2배</li> <li>• '17년까지 수당 매년 +1만원/월</li> <li>• ODA/GNI 비율 0.15 → 0.16%</li> </ul>                                                                                  |

③ 지역공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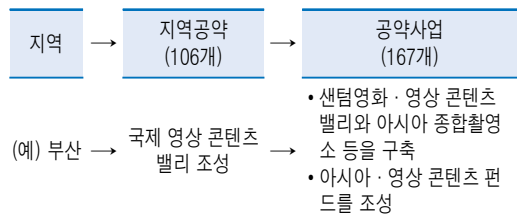
- **('14년 지원계획)** ('13) 3.0 → ('14안) 3.3조원
  - (계속사업)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
  - (신규사업) 지역별 핵심·숙원사업 1~2개를 우

선적으로 지원

- **(지원 방향)** 지역의 선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발전 계획, 지역발전 전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① 민안전,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② 지역 숙원사업(동서고속화 철도·광주-완도 고속도로 등)은 대안 모색 정도에 맞춰 사업비 지원

※ **(지역공약 체계)** 지역공약(106개) - 공약사업(167개) - 세부사업\*

\*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확정



④ 지방재정 확충 지원

◇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

-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주요 내용
  - ① (지방세제 개편)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
    - ↳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p 확대 (현재 부가가치세수의 5% → '14년 8% → '15년 11%)
    -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과세자주권 확충

②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효과 등) 복지소  
요에 우선 활용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연 1.1조원)+기타 현행소요보다 추가지원분(연 0.4조원): 향후 10년간 연평균 1.5조원 추가 지원

☞ 동 재원은 기초연금, 보육료 등 향후 복지소  
요에 우선 활용

③ (보조사업 확대 등 국가예산 지원) 시급한 현안  
대응

☞ 보육 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  
한 국가책임 강화

\* 서울은 실질적으로 40% 수준 지원

☞ '15년부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  
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분권교부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등 '14년 한시  
적 부족 소요는 예비비를 통해 지원

④ (기능 조정) 지방 세출운용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기능이양·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을 추진하  
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별  
도 논의절차를 거쳐 '15년 시행

→ (기대효과) 향후 10년간 연평균 5.0조원  
수준 지방재정 확충

4 5대 과제별 세부예산 내용

(1)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 투자·수출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  
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  
자를 강화

① 투자촉진·수출역량 강화

|                               |                                                                                                                                                  |
|-------------------------------|--------------------------------------------------------------------------------------------------------------------------------------------------|
| 정책금융 규모 확대<br>(전년 대비 +24.3조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13조원 확대</li> <li>수출입은행·무역보험 수출금융 10.2조원 확대</li> <li>의료·문화 등 신성장산업 투자펀드 1.1조원 조성</li> </ul> |
|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생활·문화공간 확충</li> <li>외국인투자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 확대</li> </ul>                                          |
|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수출·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li> <li>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li> <li>농수산물, 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지원</li> </ul>                  |

② 지역경제 활성화

|                         |                                                                                                                |
|-------------------------|----------------------------------------------------------------------------------------------------------------|
| 연평균 5.0조원 수준<br>지방재정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5 → 8 → 11%)</li> <li>보육 보조율 10%p 인상</li> </ul>            |
|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대표산업·지역인재 육성 지원</li> </ul>                                          |
| 지역 SOC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OC 투자규모는 적정수준 유지(23.3조원)</li> <li>지역공약 투자규모 확대(3.0 → 3.3조원)</li> </ul> |

③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                                                                                                             |
|------------|-------------------------------------------------------------------------------------------------------------|
| 창조경제 기반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신규, 500억원)</li> <li>유망기술·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li> </ul> |
| 미래 먹거리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E·의료·크루즈 관광산업 육성</li> <li>6차 산업화 등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li> </ul>         |
| 대학경쟁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교육역량강화 사업 지원 확대</li> <li>창업선도대학·특성화 전문대 확대</li> </ul>             |

(2) 일자리 창출

-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유도하고, 장년층·노년층의  
경험을 살리면서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  
을 확충하고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현장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을  
제고

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                                                                                                                  |
|----|------------------------------------------------------------------------------------------------------------------|
| 청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li> <li>·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 신설(1,000명)</li> </ul>              |
| 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어린이집 확충(신설 60 → 90개소)</li> <li>·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120 → 130개소)</li> </ul> |
| 장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년연장지원금 확대</li> <li>·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신설(1,000명)</li> </ul>                  |
| 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1.5만개 신설</li> <li>· 이야기할머니 사업 확대(900 → 2,000명)</li> </ul>  |

②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                                                                                                                   |
|--------------|-------------------------------------------------------------------------------------------------------------------|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시 지원 확대</li> <li>·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확대(100 → 190개소)</li> </ul> |
| 장시간 근로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대제 개편시 인건비·설비투자 비용 지원</li> <li>·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 확산을 지원</li> </ul>         |

③ 현장 중심 직업교육·훈련 강화

|            |                               |
|------------|-------------------------------|
| 현장 수요 중심   | ·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2 → 22개소) |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 훈련비 지원비율 확대(훈련비의 50 → 60%)  |
| 공공기관 역할 강화 | · 폴리텍 대학 직업훈련인원 확대(+1,700명)   |

④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                                                  |
|-------------|--------------------------------------------------|
| 공공현장인력 확충   | · 경찰(4,000명), 사회복지전담인력(1,177명) 등 확충              |
|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7.4 → 18.5만명)<br>(60.1 → 64.6만명) |
|             | · 노인일자리 확대(25.2 → 31.7만명)                        |

(3)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산

①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 생애주기별(양육·보육, 학비, 주거 등) 맞춤형 복지 지원

| 생애주기별 | 주요 프로그램                                                                                                                                                                                  |
|-------|------------------------------------------------------------------------------------------------------------------------------------------------------------------------------------------|
| 영유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설(2개소)</li> <li>·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1회 5천원) 폐지</li> <li>· 국공립 어린이집 121개 추가 확충</li> </ul>                              |
| 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 3,989개소 지원(3,742 → 3,989개소)</li> <li>·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지원금 연 22.5~180만원 증액)</li> <li>·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1학년부터 시행)</li> </ul>                 |
| 장년·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금 도입(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 지급)</li> <li>·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치매어르신 49천명 신규 지원)</li> <li>·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경감(본인부담 연 94 → 연 최대 34만원)</li> </ul> |

- 수혜대상별(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등) 맞춤형 복지 지원

| 수혜대상별 | 주요 프로그램                                                                                                                      |
|-------|------------------------------------------------------------------------------------------------------------------------------|
| 저소득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 → 개별급여체제로 전환</li> <li>·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12만명을 추가 보호</li> </ul>    |
|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연금 2배 확대(현행 월 10만원 → 월 20만원)</li> <li>· 장애인 심사 관련 '서류발급 대행 서비스' 신규 추진</li> </ul> |
| 농어업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설,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li> <li>·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71 → 77개)</li> </ul>       |
| 국가유공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월 1만원 인상</li> <li>· 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확대</li> </ul>                    |

② 일과 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                           |                                                                                                                                           |
|---------------------------|-------------------------------------------------------------------------------------------------------------------------------------------|
| 근로유인체계 구축<br>자산형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리본사업 2천명 확대(10 → 12천명)</li> <li>· 차상위 1만명 자산형성 신규 지원(희망키움통장)</li> </ul>                        |
| 취업성공패키지<br>사회보험료<br>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3만명 확대(22 → 25만명)</li> <li>·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평균 임금 130만원 → 135만원 이하)</li> </ul> |

③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              |                                                                                                               |
|--------------|---------------------------------------------------------------------------------------------------------------|
| 사회복지 인력 총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직 공무원 1,177명 확충</li> <li>기초연금·기초생보 제도개편 보조인력(3,487명) 지원</li> </ul> |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추진</li> <li>도시·농촌별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모형 개발</li> </ul>          |
| 민간복지자원 활용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풀뿌리 복지공동체 확산 등 민관협력 시범사업 실시</li> <li>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 도입</li> </ul>     |

④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                         |                                                                                                                                                           |
|-------------------------|-----------------------------------------------------------------------------------------------------------------------------------------------------------|
| 예술인복지 2배 확대<br>사회안전망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li> <li>전문무용수 치료·재활비용 지원 확대</li> <li>영화 촬영현장 응급의료 지원</li> </ul>                                   |
|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예술 지원규모 대폭 확대(1,223 → 1,875억원)</li> <li>선별적·소액다수 → 포괄적·인프라 지원으로 전환</li> </ul>                                    |
| 문화향유 기회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차상위 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신규 도입</li> <li>공공 인문학 강좌 등 인문학 향유기회 확대</li> </ul>                                                |
| 생활 속 문화공간 및 여가캠핑장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10개소, 130억원)</li> <li>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 조성(10개소, 125억원)</li> <li>다목적 캠핑시설 조성 지원(20개소, 120억원)</li> </ul> |

복지 수요별 서민·중산층 주요 혜택

|               |             | '13년                              |         | '14년 계획                                    | 비고                                   |
|---------------|-------------|-----------------------------------|---------|--------------------------------------------|--------------------------------------|
| 보육<br>양육      | 접종비<br>본인부담 | 연 5만원<br>(1회, 5천원)<br>(0세 기준)     | ⇒       | 본인부담금 폐지                                   | 연 △5만원                               |
|               | 보육료         | 연 1인당 264~906만원                   |         | 지자체 부담 완화로<br>안정적 무상보육<br>기반구축             |                                      |
|               | 양육수당        | 연 1인당 120~240만원                   |         |                                            |                                      |
| 대학<br>교육<br>비 | 셋째 아이       | -                                 | ⇒       | 연 450만원                                    | 1학년부터 시행                             |
|               | 대학생<br>장학금  | 연 67.5~450만원                      | ⇒       | 연 90~450만원                                 | 연 +22.5~180만원<br>(연소득 7,000만원<br>이하) |
| 의료<br>비       | 4대 중증<br>질환 | 본인부담<br>연 94만원                    | ⇒       | 본인부담<br>연 최대 34만원<br>* '16년 제도개선<br>완료시 기준 | 연 △60만원<br>(진료비 경감)                  |
|               | 임플란트        | 1개당 150~300<br>만원 부담<br>* 관행수가 예시 | ⇒       | 1개당 75~<br>150만원 부담                        | 개당 △75~△150<br>만원<br>(75세 이상)        |
|               | 본인부담<br>상한제 | 200~300만원 부담                      | ⇒       | 120~250만원 부담                               | 연 △50~△80만원<br>(연소득<br>3,800만원 이하)   |
| 주거<br>지원      | 주택<br>바우처   | 연 96만원<br>(주거급여)                  | ⇒       | 연 130만원<br>(주택바우처)                         | 연 +34만원<br>(* '14. 10월 시행)           |
|               | 사병보급        | 연 140만원                           | ⇒       | 연 162만원                                    | 연 +22만원<br>(상병기준)                    |
|               | 소득<br>지원    | 기초연금                              | 연 120만원 | ⇒                                          | 연 최대 240만원                           |
| 장애인<br>연금     |             | 연 120만원                           | ⇒       | 연 240만원                                    | 연 +120만원<br>(중증장애인,<br>소득하위 70%)     |

(4)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 4대 사회악·환경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외교·안보역량 강화, 정부 3.0 추진으로 든든한 정부 구현

① 4대 사회악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

|           |                                                                                                                                                                   |
|-----------|-------------------------------------------------------------------------------------------------------------------------------------------------------------------|
| 4대 사회악 근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충(33 → 37개소)</li> <li>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13 → 19개소)</li> <li>먹을거리 안전투자 대폭 확대(3,009 → 3,426억원)</li> </ul>     |
| 생활안전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페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1.5 → 2만 가구)</li> <li>산업단지 화학물질 특수사고 대응단 신설(203억원)</li> <li>도시침수·산사태 예방투자 확대(7,990 → 8,689억원)</li> </ul> |

② 안보·외교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                       |                                                                                                                                                   |
|-----------------------|---------------------------------------------------------------------------------------------------------------------------------------------------|
| 안보 대응능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 戰場 대비 핵심전력 적기 확보 추진</li> <li>병봉급 15% 인상(상병기준 월 11.7 → 13.5만원)</li> <li>전투력 강화를 위한 군수지원 능력 보강</li> </ul> |
| 외교역량 강화<br>평화통일 기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DA 지속 확대(2.1 → 2.3조원)</li> <li>개도국에 새마을 운동 확산(111 → 227억원)</li> <li>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신규, 402억원)</li> </ul>   |

③ 정부 3.0 추진

|                    |                                                                                                       |
|--------------------|-------------------------------------------------------------------------------------------------------|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데이터 공개 3,112 → 5,707종</li> <li>원문정보 공개 80 → 120만건</li> </ul> |
| 수요자 중심<br>행정정보망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민원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확대</li> <li>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지원</li> </ul>       |

(5)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관행적 낭비사업 정비 등으로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재정운용체계를 전환

①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                   |                                                                                                         |
|-------------------|---------------------------------------------------------------------------------------------------------|
| 법령개정<br>제도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수요 관리방식 개선(보조 → 규제)</li> <li>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속 추진</li> </ul>        |
| 관행<br>전시성 사업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행사·경기대회 사전심사 강화('14년 예산편성시 행사비 요구의 1/3 절감 편성)</li> </ul>       |
| 조세지출<br>- 예산사업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보조금·융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li> <li>조세지출-예산사업 통합성과평가 추진</li> </ul> |

②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                |                                                                                                            |
|----------------|------------------------------------------------------------------------------------------------------------|
| 고위직 공무원 보수동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 동결</li> <li>하위직은 1.7%('13년 물가상승률) 수준 인상</li> </ul> |
| 업무추진비<br>여비 절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추진비 전년 대비 △9.2% 절감</li> <li>국외여비 전년 대비 △5.1% 절감 운영</li> </ul>     |

③ 국민·현장·협업」 중심 재정운용

|               |                                                                                                                                                             |
|---------------|-------------------------------------------------------------------------------------------------------------------------------------------------------------|
| 국민과의<br>소통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한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방’ 운영</li> <li>분야별 정책고객 심층인터뷰 실시</li> <li>지자체 현장방문·간담회 등 실시</li> <li>국가재정운용계획 대국민 토론회 개최</li> </ul> |
| 부처간 협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업기구를 구성하여 R&amp;D, ICT예산 조정 추진</li> <li>협업과제에 대한 구조조정 의견 수렴</li> </ul>                                              |

5 기타

■ 내년도 사업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색사업도 반영됨

(단위: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안 | 주요 지원내용                                                                                |
|--------------------------|-------|------|----------------------------------------------------------------------------------------|
| • 남·북극 극지 연구활동           | 646   | 689  | • 남극에 세종기지에 이어 장보고기지 건설<br>• 북극항로 개척과 함께 자원·에너지 개발을 위한 과학연구 지원                         |
| •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     | 35   | • 현재 편도 약 7시간 소요되나 공항 건설 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                                                |
| • 의료취약지(분만취약지) 지원        | 40    | 52   | • 강원도 인제, 철원, 양구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산전 진찰 및 분만 이송체계(신규 10개소) 강화                    |
| •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펀드 조성 | -     | 100  | •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전문펀드 조성<br>- 정부 이외에 정책금융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 추가 출자로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

## II.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 2017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마련

### 1 기본방향

- 단기적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를 복원
  - 세출절감·세입확충 노력, 잠재적 재정위험요인 관리 등을 통해 미래 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 회복
-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불안 해소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 재설계

###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총수입은 '13~'17년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
- 총지출은 '13~'17년 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관리
- 관리재정수지는 '13년  $\Delta 1.8\%$ 에서 '17년 균형수준인  $\Delta 0.4\%$ 까지 단계적으로 개선
-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30% 중반대로 하향 안정화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조원, %)

|          | '13년*            |                  | '14년                  | '17년             | 연평균 증가율 |
|----------|------------------|------------------|-----------------------|------------------|---------|
|          | 본예산              | 추경               |                       |                  |         |
| • 총수입    | 372.6            | 360.8            | 370.7                 | 438.3            | 5.0     |
| (증가율)    | (8.5)            | (5.0)            | ( $\Delta 0.5/2.8$ )* | (6.1)            |         |
| - 국세     | 216.4            | 210.4            | 218.5                 | 270.7            |         |
| • 총지출    | 342.0            | 349.0            | 357.7                 | 400.7            | 3.5     |
| (증가율)    | (5.1)            | (7.2)            | ( $4.6/2.5$ )*        | (4.3)            |         |
| • 재정수지   | $\Delta 4.7$     | $\Delta 23.4$    | $\Delta 25.9$         | $\Delta 7.4$     |         |
| (GDP 대비) | ( $\Delta 0.3$ ) | ( $\Delta 1.8$ ) | ( $\Delta 1.8$ )      | ( $\Delta 0.4$ ) |         |
| • 국가채무   | 464.6            | 480.3            | 515.2                 | 610.0            |         |
| (GDP 대비) | (34.3)           | (36.2)           | (36.5)                | (35.6)           |         |

\* '13년 국회확정 예산 기준, '14년 전년 대비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추경 대비)

### 3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 1) 재정지출 효율화

-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p 낮게 유지하는 재정총량 관리를 통해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 회복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구조적 세출 절감 추진
  - 부처별 재정개혁과제 선정·이행, 유사·중복, 관행적·전시성 사업 정비, 민간부문 활용도 제고 등 지출 효율화

#### 2)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 도래시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검토하여 재설계 후 도입
- 탈세규모 및 탈루험의가 큰 분야(고질적 조세포탈,

고소득 자영업, 밀수·역의탈세 등)를 중심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 추진

\* FIU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탈세·은닉재산 추적 등 세정역량 강화

- 금융상품·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

### 3)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 강화

-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를 산출·관리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확대 및 이행력 확보
  - \* 자산 2조원 미만 기관도 ① 부채>자산, ②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경우 작성
-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구축
  - \* 기존 관리지표(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외에 차환위험(Rollover risk), 공기업,지방정부, 기타(보증) 4개 분야를 추가 관리대상으로 선정

### 4) 재정운용시스템 개선

- 예산·결산과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평가기능 내실화 등 추진
-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의 접근성 제고
-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감면, 양여 등) 일몰제 도입 등 유상사용 원칙 확립

## 4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 사회 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되,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
  - 복지 분야는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등 전달체계 개선으로 재정누수 방지 및 복지체감도 제고
  - 교육 분야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 구조조정 등 지속 추진
- 경제 분야는 그간의 투자추이를 감안하여 재정투자를 내실화하되,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보완
  - SOC 분야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고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지원 확대
  - 산업 분야는 산업융합, S/W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
  - 농림 분야는 식품산업 육성 등 농어가 소득창출 기반 강화

## III.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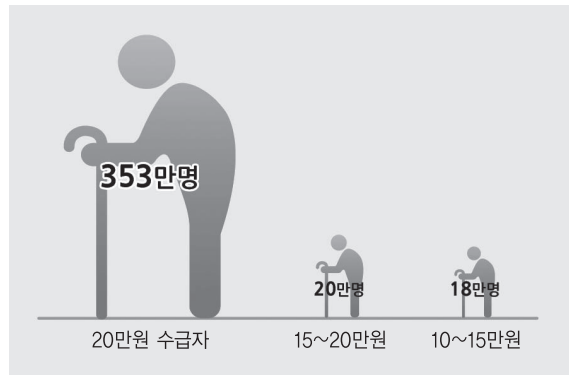
- 정부는 ‘2014년 예산안’ 과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을 9. 26일(목) 국무회의를 거쳐 10. 2일(수)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14년 7월, 65세 이상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본 자료는 2013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에서 발표한 「'14년 7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현 세대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14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하였다.
    - \* 기초연금 대상인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70%인 61만명에게 20만원 지급
  -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액 분포



- 기초연금 도입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순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 \* 순공적연금액이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본인이 받는 총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함
  -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

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크레딧 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 18개월 (최장 50개월)

■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되었다.

• 정부안 시행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 받는 금액(純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진다.

-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 7백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가입할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가입을 증지하거나 단축할 경우에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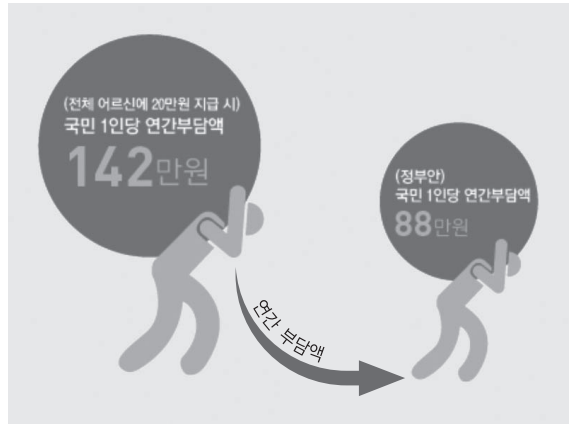
■ 청·장년층의 경우 '07년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하여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약 10년) 현 세대 노인의 경우 11년 이하 가입 시 20만원 보장

• 또한 노후 연금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액 비교



\* 2040년 기준(불변가)

■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등 추진 검토

■ 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 참고로 '14년 기초연금(상반기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국비 5.2조원, 지방비 1.8조원)으로, '13년 대비 2.7조원 증가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발전과 자녀세대를 위해 애쓴 공로가 큼에도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의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한  
다고 밝혔다.

- 노인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시니어 사회 공헌 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월 10만원, 3개월)를 지원하고,

\* 경륜 있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재능 나눔, 전문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

-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자  
원봉사클럽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인상(20만원 →  
30만원, 2개월) 지원할 계획이다.

\* 자원봉사클럽 확대 : 500개소 (1,300 → 1,800개소)

-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직간접  
적인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  
보, 장기 제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시스템 등을 준비  
하여 '14년 7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원인원 및 금액 비교

| 연금액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
| 20만원              | -          | 353만명    |
| 15만~20만원          | -          | 20만명     |
| 10만~15만원          | -          | 18만명     |
| 9.7만원             | 391만명      | -        |
| 제 외<br>(소득상위 30%) | 207만명      | 207만명    |

\* '12.12월 인구 기준 (65세 이상 노인 598만명)

**붙임 2**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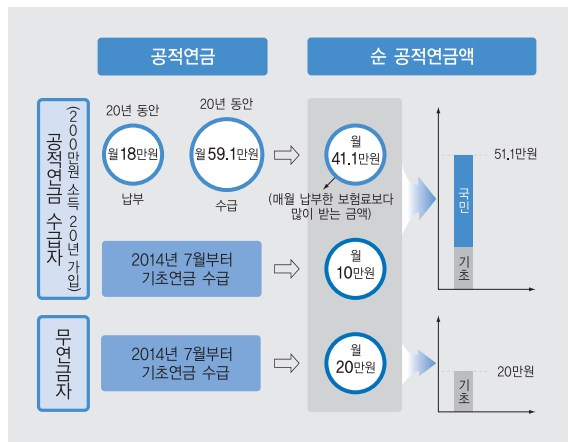
- 국민연금 수급자 손해 보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됨

- 즉, 총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純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  
초연금액보다 항상 많음

\* 순공적연금액이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본인이 받는 총  
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함

**현세대 노인(현재 수급자)**



- 오래 가입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 정부안 시행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  
받는 금액(純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짐
  -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가입기간 1년이 증  
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 7백원 감소하  
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  
을 추가로 지원받게 됨

### 가입기간별 급여

#### ① 소득 100만원

(단위: 만원, 2014년 7월 현재)

| 연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총액   |
|-----|------|------|------|
| 10년 | 20.0 | 20.0 | 40.0 |
| 11년 | 20.0 | 22.2 | 42.2 |
| 12년 | 19.1 | 24.4 | 43.5 |
| 13년 | 18.1 | 26.7 | 44.8 |
| 14년 | 17.1 | 28.9 | 46.0 |
| 15년 | 16.1 | 31.2 | 47.3 |
| 16년 | 14.8 | 33.9 | 48.7 |
| 17년 | 13.5 | 36.7 | 50.2 |
| 18년 | 12.2 | 39.4 | 51.6 |
| 19년 | 10.8 | 42.2 | 53.0 |
| 20년 | 10.0 | 44.9 | 54.9 |

#### ② 소득 200만원

(단위: 만원, 2014년 7월 현재)

| 연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총액   |
|-----|------|------|------|
| 10년 | 20.0 | 26.6 | 46.6 |
| 11년 | 20.0 | 29.6 | 49.6 |
| 12년 | 19.1 | 32.6 | 51.7 |
| 13년 | 18.1 | 35.6 | 53.7 |
| 14년 | 17.1 | 38.6 | 55.7 |
| 15년 | 16.1 | 41.6 | 57.7 |
| 16년 | 14.8 | 45.1 | 59.9 |
| 17년 | 13.5 | 48.6 | 62.1 |
| 18년 | 12.2 | 52.1 | 64.3 |
| 19년 | 10.8 | 55.6 | 66.4 |
| 20년 | 10.0 | 59.1 | 69.1 |

#### 산식에 2/3 반영 됨 :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보다 유리

\* 2014년부터 가입 시

##### ① 100만원 소득자

- 2/3 반영 전 5년 가입 연장시마다 총급여액 2만 ~4만원 증가
- 2/3 반영 후 5년 가입 연장시마다 총급여액 5만 ~6만원 증가

| 가입기간 구분  | 10년 가입시                 | 15년 가입시                 | 20년 가입시                 |
|----------|-------------------------|-------------------------|-------------------------|
| 반영 전     | 월 36만원<br>(국민 17+기초 19) | 월 38만원<br>(국민 24+기초 14) | 월 42만원<br>(국민 32+기초 10) |
| 2/3 반영 후 | 월 37만원<br>(국민 17+기초 20) | 월 43만원<br>(국민 24+기초 19) | 월 48만원<br>(국민 32+기초 16) |

##### ② 200만원 소득자

- 2/3 반영 전 5년 가입 연장시마다 총급여액 약 6만원 증가
- 2/3 반영 후 5년 가입 연장시마다 총급여액 7만 ~10만원 증가

| 가입기간 구분  | 10년 가입시                 | 15년 가입시                 | 20년 가입시                 |
|----------|-------------------------|-------------------------|-------------------------|
| 반영 전     | 월 41만원<br>(국민 22+기초 19) | 월 47만원<br>(국민 33+기초 14) | 월 53만원<br>(국민 43+기초 10) |
| 2/3 반영 후 | 월 42만원<br>(국민 22+기초 20) | 월 52만원<br>(국민 33+기초 19) | 월 59만원<br>(국민 43+기초 16) |

#### ■ 청·장년층, 중산층이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 미래세대의 경우 현재대 노인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도 20만원 수급 가능
- 미래세대의 경우 15년 동안 가입해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 수령(30년 가입시까지 10만원 이상 수급, 30년 이상 가입시 10만원 수급)
- 현재대 노인의 경우 11년 이상 가입하면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지만, 수급기간이 짧은 노인(특례 노령연금수급자)이 대부분으로 88만명(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70%가 20만원을 받게 됨

- 추가적으로, 2008년부터 출산크레디트와 병역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되어 미래세대는 출산 및 병역 의무 수행시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혜택을 받게 됨

###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단위: 만원)

| 가입기간 | ① 현재세대 노인 ('14. 7월 수급자) | ② 미래세대 노인 ('28년 이후 소득대체율 40%) |
|------|-------------------------|-------------------------------|
| 10년  | 20                      | 20                            |
| 11년  | 20                      | 20                            |
| 12년  | 19                      | 20                            |
| 13년  | 18                      | 20                            |
| 14년  | 17                      | 20                            |
| 15년  | 16                      | 20                            |
| 16년  | 15                      | 19                            |
| 17년  | 14                      | 19                            |
| 18년  | 12                      | 18                            |
| 19년  | 11                      | 17                            |
| 20년  | 10                      | 17                            |
| ∴    | ∴                       | ∴                             |
| 30년  | 10                      | 10                            |

- 1인당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도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

### 총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

(단위: 만원)

|           | 2015 |      | 2020 |      | 2040  |       |
|-----------|------|------|------|------|-------|-------|
|           | 경상가  | 불변가  | 경상가  | 불변가  | 경상가   | 불변가   |
| 현행 기초노령연금 | 12.1 | 10.5 | 26.5 | 19.5 | 218.5 | 98.1  |
| 전체 20만원   | 30.1 | 26.2 | 51.3 | 37.6 | 315.8 | 141.8 |
| 정부안       | 20.1 | 17.4 | 33.5 | 24.6 | 195.4 | 87.7  |

\* 정부안은 2014년 7월 시행되므로, 반년에 걸쳐 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보다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2015년을 비교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적실성 있는 비교가 될 것임

### 참고 1 단기 재정 소요 (추계)

(단위: 조원, 천명)

| 재정 소요 | 2014년 상반기 (기초노령연금) | 2014년 하반기 (기초연금)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                    |                  |       |       |       |
| 총액    | 2.2                | 4.8              | 10.3  | 10.9  | 11.4  |
| 국비    | 1.6                | 3.6              | 7.7   | 8.1   | 8.5   |
| 지방비   | 0.6                | 1.2              | 2.6   | 2.8   | 2.9   |

### 참고 2 각 대안별 재정 소요 비교

(단위: 조원)

|           | 2014~2017년 | 2020년 | 2030년 | 2040년 |
|-----------|------------|-------|-------|-------|
| 정부안       | 39.6       | 17.2  | 49.3  | 99.8  |
| 기초노령연금    | 26.9       | 13.7  | 53.6  | 111.6 |
| 70% 20만원  | 40.7       | 17.8  | 53.6  | 111.6 |
| 100% 20만원 | 57.1       | 25.5  | 74.3  | 157.8 |

\* 2023년에 정부안(21.8조원) < 기초노령연금(21.9조원)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

\* 본 자료는 2013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9. 24일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함
-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 ① 8. 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
  - ②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15년까지 1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 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③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I. 기본 원칙

- ①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와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
  - 취득세수 감소액 전액 보전, 보육 부담 완화 등 시급한 현안 소요에 우선 대응
  - 복지소요 증가,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

능 재조정 추진

- ②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
  - 현재 취득세 중심에서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체 재원조달 능력을 강화
- ③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방 세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
  - 지역밀착형 복지분야 보조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용 도모

## II.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 1 지방재정 소요

- ①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연간 2.4조원(지방교육세 포함)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기준거래량 88.2만건(취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변경된 '06년부터 '12년까지의 거래량 중 최고('06년) 및 최저('12년)를 제외한 평균치)

### 취득세율 인하 내역

| 구분 | ~6억원 | 6~9억원 | 9억원 |
|----|------|-------|-----|
| 현행 | 2%   |       | 4%  |
| ↓  |      |       |     |
| 변경 | 1%   | 2%    | 3%  |

#### ②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

- 보육대상 확대(선별적 → 전계층)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
- 기초연금, 개별급여 등 일반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 확대 전망

#### ③ 분권교부세 3개 사업 부담 완화

- 분권교부세 사업 중 장애인·정신·양로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 가중
- \*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 (1,955명 중 1,752명)

## 2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①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 추진

#### 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p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14년 기준 2.4조원)

\* 현재 5% → '14년 8%(+1.2조원) → '15년 11%(+2.6조원)  
(향후 '14~'23년간 연평균 3.2조원)

\*\*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전액 포함

- 최근 세입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원한 것임

#### ②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의 실질적

#### 인 과세자주권을 확충('15년 기준 1.1조원)

-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 정비 추진  
\* '1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14. 1. 1일 시행할 경우 지방세수 확충 효과는 '15년 발생

#### ③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향후 10년간 추계시 연평균 1.1조원)

\* '08~'12년 연평균 증가율: 부가가치세 6.2%, 소득세+법인세 5.0%, 취득세(주택 유상거래분) △0.1%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향후 복지소요 등에 활용

### ②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 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14년 기준 0.8조원)

-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0%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

- 또한, 금년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

\* ('13년) 예비비·특고 추가지원분: +5,607억원(보육료 실효보조율: 49 → 57%, +8%)

-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

#### ②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15년 기준 0.5조원)

\*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 (1,955명 중 1,752명)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에도 분권교부세 현행률을 유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 ③ 아울러, 지방소비세 전환을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15년에 완전히 발생함에 따라 '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14년 1.2조원)

**③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정 추진**

◇ 지방분권, 행정수요 변화 등에 부응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재조정하되

-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논의절차를 거쳐 '15년 시행 추진

\*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 관계부처 등으로 별도 T/F 구성

- ①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성 제고('15년 기준 1.2조원 수준)

\*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지자체가 자율 결정

- 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하여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지역 사회개발 촉진 등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한 후 지자체에 총액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

해결

- ②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여건이 변동되는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

-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

- ③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여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

■ 금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중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 T/F를 구성하여 운영

- 또한, 금번 조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 방안 마련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시·도 법정전입금 감소분 및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등

- 아울러, 동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점검단\* 운영

\* 기재부 2차관 주재,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1급으로 구성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정조정 방안」으로

- ① 취득세수 보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소요를

## 참고

향후 10년간('14~'23년) 총지방재정 확충(추정)  
: 연평균 5.0조원

## ◇ 지방재정 소요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및 복지부담 완화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 영유아보육 및 일반 복지부담 완화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부담 완화

## ◇ 자원대책 및 기능조정: 5.0조원

- 지방세제 개편: 4.6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3%p+3%p): 2.4조원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1.1조원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1.1조원
-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1.5조원
  - 보육 보조율 인상(10%p):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국고 환원: 0.6조원
  - '14년 한시 예비비 1.2조원: 10년간 연평균 0.1조원 지원 효과
- 기능 조정: △1.1조원(잠정)

#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3/4분기 점검 추진

\* 본 자료는 2013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에서 발표한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3/4분기 점검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9월 23일 제2차관(이석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 주요 재정개혁과제(11개)의 재정절감 효과는 약 1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 지난 3월 구성된 재정개혁위원회\*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꾸준히 점검해 왔음

\* 위원장(기재부 2차관), 분야별 민간전문가(17명) 및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

- 향후에도 각 부처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 특히,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금년 정기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 재정개혁과제 주요 추진 사례

### ① 투자 효율화

- 전력수요관리 사업군 지출 효율화(산업부)
  - **(현황)** 전력수요관리 예산이 소비량 감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설계됨에 따라 재정소요 대폭 증가
  - **(추진실적)** 전력피크 수요 분산을 위한 유인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보조금 방식에 더하여 규제 방식 병행 추진

\* (13. 예산) 2,500억원 → (14. 예산안) 395억원(Δ2,105억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선(산업부)
  - **(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소요비용을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비율을 지원하여 절감유인이 낮음
  - **(추진실적)** 신재생설비 설치규모에 대한 지원방식을 변경(정률 → 정액)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예산절감 도모

\* (13. 예산) 1,320억원 → (14. 예산안) 1,084억원(Δ236억원)

- 장기계속 R&D 사업 영기준 예산제도 도입(미래부)
  - **(현황)** 총사업비 및 사업종료기간 없이 추진된 장기계속 R&D 사업 증가로 R&D 사업 구조조정 필요
  - **(추진실적)**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에 대해 타당성, 추진방식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

\* ('13.예산) 18,740억원 → ('14.예산안) 17,600억원(△1,140억원)

## ② 지원 체계개선

### ■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부담금 지원 개선(복지부)

- (현황)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사학연금 부담금 부담주체간 부담비율이 달라 형평성 논란

\* (현행) 건강보험료 부담: 개인 50%, 법인 30%, 국가 20%  
사학연금 부담: 개인 50%, 법인 50%

- (추진실적) 사립학교 및 부속기관(대학병원)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을 사학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법인 부담으로 전환(△1,032억원)

### ■ 사학(대학 이상) 직원 퇴직수당 국가지원 규모 축소(교육부)

- (현황) 재정이 양호한 학교법인에도 국고지원 사례 발생
- (추진실적) 사립대학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가와 대학법인이 6:4 비율로 부담(△648억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연내 개정 추진(現 입법예고 중)

### ■ 국립대학 인건비 등 운영경비 합리화(교육부)

- (현황) 국립대학 공무원 직원 대상 기성회비 수당 지급으로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
- (추진실적) 국립대학 공무원 직원 대상 기성회비 수당 지급 개선 등을 통한 국립대학 운영경비 지출 효율화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 안료('13. 8월)

### ■ 농업분야 재정용자 사업 이차보전 전환(농식품부)

- (현황) 농·수협 등의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자금 등을 중심으로 이차보전으로 전환 필요
- (추진실적) 농산물 유통분야,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 이차보전으로 전환(△2,706억원)

## ③ 유사·중복사업

### ■ 에너지 관련 재정 지원체계 개선(산업부)

- (현황) 특별회계·기금의 칸막이식 운영
- (추진실적) 에트회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이관, 홍보사업 통합, 일반회계 전입규정(교통세의 3%) 의무 전입에서 임의화 등 추진

### ■ 하천정비 지원체계 개선(국토부·환경부)

- (현황)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친수사업(국토부)과 생태하천 복원사업(환경부)의 유사·중복으로 협업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실적)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업 T/F 구성·운영으로 재정절감 추진(△901억원)

## ④ 세외수입 확충

### ■ 기술료 제도개선(미래부)

- (현황) 기술료\* 수입이 세입세출외로 운용됨에 따라 재정통제 취약 및 예산사업과의 중복 등 문제점 대두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활용 기업에 그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

- (추진실적) 각 부처에서 세입세출외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세입 조치 추진(2,000억원 수준 예상)

\* 올해 중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14년부터 시행 추진

#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탈세를 막을 수 있다 -

\* 본 자료는 2013년 9월 16일 국세청 세원정보과에서 발표한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추진 개요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10억원으로 인상 ('13. 1. 1.,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13. 7. 1.)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13. 1. 1.)
-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발족('12. 5. 30.)
-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 개발('12. 6. 25.),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13. 1. 1.) 등 탈세제보자 만족도 제고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추가 인상(10억원 → 20억원) 추진(진행 중)

## ◇ '13년 8월까지의 추진 성과

- 탈세제보 건수·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3%, 103% 증가
-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하고 192개 업체에 대해 335억원 추징

## I.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개요

- 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탈세정보의 수집·활용이 매우 중요함
  -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우선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13. 1. 1.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 '13. 7. 1.이후 접수분부터는 포상금 지급률을 최고 5%에서 최고 15%로 인상하였으며 지급 기준금액도 탈루세액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 \*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

### 포상금 제도 개선내용

| 구 분     | 종 전       | 개 선        | 시행시기       |
|---------|-----------|------------|------------|
| 한도액 인상  | 1억원       | 10억원       | '13. 1. 1. |
| 지급률 인상  | 2~5%      | 5~15%      | '13. 7. 1. |
| 지급기준 완화 | 1억원 이상 징수 | 5천만원 이상 징수 |            |

- 이로 인해 올해 들어 기업 비자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크게 증가하여 추가 징수세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음

\* '13년 탈세제보 건수·추징세액이 전년 대비 59.3%, 103% 증가 추세

- 한편 '13. 1. 1.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

- 특히,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 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인별 연간 5천만원 한도)

- 또한,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세원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성실 납세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음

\* 일반시민·전문가 751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탈세감시단('12. 5. 30. 발족)

-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제보 메뉴 신설,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 개발을 통해 탈세제보 편의성을 향상하고,
  - 본청에서 제보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으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포상금 지급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음

\* (중전) 조사관서 → 본청에 포상금 신청 → 지방청 → 세무서 → 제보자

(개선) 조사관서 → 본청에 포상금 신청 → 제보자에게 직접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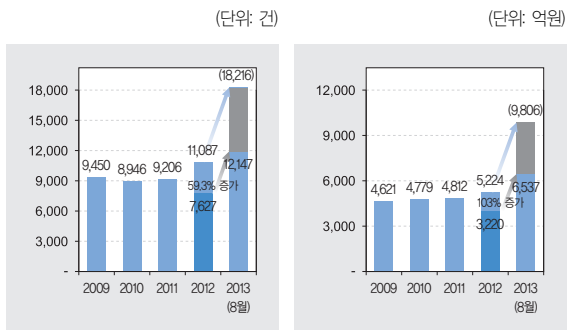
#### II.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성과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탈세제보 편의성을 향상시킨 결과,

- '13년 8월말까지의 탈세제보 건수와 그로 인한 추가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3%, 103% 증가\*하였음

\* 제보건수: 7,627건 → 12,147건, 추가 징수액 3,220억원 → 6,537억원

#### 연도별 탈세제보 접수추이 연도별 탈세제보 추징실적



- 또한,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13년 8월말 현재 탈세제보포상금 126건, 21억원을 지급하였고,
  - 탈세규모가 미미하거나 구체성이 적은 탈세제보도 누적관리하여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후 '13년 8월말

까지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하였으며,

-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335억 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65건, 33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 자료 분석 후 '13. 4월부터 세무조사 실시,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13년 8월말 현재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즈로부터 650건의 탈세제보·세원동향자료 등을 제출받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였음

### Ⅲ. 향후 추진 계획

-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추가 인상(10억원 → 20억원)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보자 신원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음성적 탈세를 적극 차단하고,
  - 「바른세금 지킴이」 등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 함으로써
  -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및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3.0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임

# 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 - 400GB의 원시자료를 확보하여 신원확인 및 단계별 조사진행 중 -

\* 본 자료는 2013년 9월 3일 국제청 역외탈세담당관실에서 발표한 「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금년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 케이먼 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400GB)의 원시자료를 확보
- ◇ 원시자료 중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한 신원확인 및 탈세 여부를 검증
  -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 중 조세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한 탈루혐의자 1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 11명에 대해 조사완료(714억원 추정), 18명은 조사 진행 중, 10명은 금일 조사 착수
- ◇ 상반기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하여 6,016억원 추정(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
  - \* 전년 상반기 역외탈세 조사실적: 105명, 4,897억원 추정
- ◇ 향후 적극적인 국제공조 및 다각적인 정보수집 활동 등을 통해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

### 페이퍼컴퍼니 원시자료 확보 및 분석

- 국제청은 금년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제행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역외탈세 등 4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특히, 역외탈세는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해외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인 세원관리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활동이 필수적임
  - 따라서, 국제청은 '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TTSIC) 가입,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체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업무를 강화해 왔음
-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 · 영국 · 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활발한 국제공조와 해외 세정요원 파견 등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 결과
  - 지난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 케이먼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 바이트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 확보한 원시자료(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임원 및 주주의 인적사항, 미공개 재무정보 등)를 통해 한

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하였음

**한국인 신원 확인 및 단계적 세무조사 실시**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 확인〉

- 한국인 추정명단 405명에 대해 원시자료와 국제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함
  -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 및 그 가족, 임직원 등이나, 무직·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음

- ◇ (직업별) 기업인 및 그 가족 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 42명, 해외이주자 28명, 무직 25명, 부동산업자 17명, 교육 4명, 전문직 3명, 기타 2명
- ◇ (업종별) 제조 58명, 금융 42명, 도매 32명, 서비스 25명, 해운 20명, 부동산 17명, 물류 7명, 건설 6명, 교육 4명, 음식 1명, 기타 55명

〈39명 세무조사 실시〉

- 신원확인자 267명에 대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활용하여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 이들 중 현재까지 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확인된 10명 등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 이 중 11명은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714억원을 추징하였으며
    -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10명은 금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주요 탈루유형

- ◇ (사례 1) 사주 甲은 BVI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하고 A를 통하여 페이퍼컴퍼니(B)를 만든 후, 페이퍼컴퍼니(B)로부터 산업 폐기물을 고가의 원재료인 것처럼 위장·수입하는 방법으로 해외로 기업자금 유출
- ◇ (사례 2) 사주 乙은 BVI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하여 투자한 외국법인(B)을 이용하여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중계무역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BVI 페이퍼컴퍼니(A)에 배당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 ◇ (사례 3) 사주 丙은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VI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 ◇ (사례 4) 개인사업자 丁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신원 확인 및 탈세 여부 검증 계속〉

- 현재 진행 중인 신원 확인 및 탈세 여부 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임

**역외탈세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금년 상반기까지 역외탈세 조사실적〉

- 올해 상반기까지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하여 6,016억원을 추정하였으며

-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05명, 4,897억원 추정)에 비해 추정세액이 22.8%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역외탈세 적발·추징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연간 추정세액: '10년 5,019억원 / '11년 9,637억원 / '12년 8,258억원

#### 〈향후 추진방향〉

- 확보한 원시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원 확인과 조세탈루 여부를 검증하여 불법적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되
  -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음
-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활발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해외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도 개선택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2012년도 324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 본 자료는 2013년 9월 4일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발표한 「2012년도 324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평가대상: 324개(공사 50, 공단 78, 상수도 114, 하수도 82)\*  
 신설공기업, 공영개발 등은 제외  
 평가체계: 안행부는 시·도 공기업(57개)을, 시·도에서는 시·군·구 공기업(267개)을 평가  
 평가단 구성: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32개반 200명)  
 평가일정: 평가계획 수립(2. 8), 평가단 구성(3. 29), 현지평가(5~6월), 이의신청 및 확인검증(8월)

■ 안전행 정부는 금년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자보상비율 신설 등 부채관리 지표 강화(4 → 6점), 영업수지비율(10 → 15점), 대행사업비 절감률(10 → 15점), 분양실적·부대사업수익·원가절감 실적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였고,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가’, ‘나’)에서 배제하고,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확대(△1.2 → △2.2점)하였다.
- 상하수도의 경우, 목표 부여를 전국 단일목표에서 도시·농어촌·인구규모별로 차별화된 목표(6개)를 부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평가완료 시

점도 1개월 앞당겨(9 → 8월) 평가결과가 적기에 환류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은 15 → 12개로 줄어든 반면, 최하등급인 ‘마’ 등급은 5 → 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4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은 30개, ‘나’ 등급은 98개, ‘다’ 등급은 132개, ‘라’ 등급은 49개, ‘마’ 등급은 15개기관이 받았다.

경영평가결과 평가등급 내역

| 구분      | 기관수  | ‘가’ 등급 | ‘나’ 등급 | ‘다’ 등급 | ‘라’ 등급 | ‘마’ 등급 |
|---------|------|--------|--------|--------|--------|--------|
| 계       | 324개 | 30     | 98     | 132    | 49     | 15     |
| 지방공사·공단 | 128개 | 12     | 40     | 53     | 16     | 7      |
| 상·하수도   | 196개 | 18     | 58     | 79     | 33     | 8      |
| ‘12년(계) | 219개 | 25     | 64     | 92     | 28     | 10     |
| 지방공사·공단 | 120개 | 15     | 34     | 51     | 15     | 5      |
| 상·하수도   | 99개  | 10     | 30     | 41     | 13     | 5      |

\* 기관 수 증가사유(‘12년 219개 → ‘13년 324개): 상하수도 격년제 → 매년평가

- 7개 평가유형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7개)는 낮은 요

- 금현실화율(60.8%), 복지무임수송 손실(4,097억원) 등으로 8,00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 부대수익 16.3% 증가(431억원), 수송인원 1.5% 증가(4,573만명)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11.4%(1,029억원) 줄어들었다.
  - 적자발생 등으로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2호선 연장선 개통시 소요인력 자체해소 등으로 운수수익이 증가(90억원)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택지개발, 서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15개)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3,609억) 등에 따라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었던 SH공사(4,307 → △5,354억)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도시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1.9%(1,281억) 증가하였으며, 전체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분양실적도 혁신도시 분양활성화 등으로 60.3% → 6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 등급을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재고자산매각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진곡산업단지 공장용지 등을 100% 매각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77억원), 지역 종합병원과 협약체결을 통한 영세민 무료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으로써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77.8 → 84.4점)되었으며, 상위직(1, 2급) 축소(24 → 18명), 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 시행 등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추진하여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 반면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는 최하위등급('마')을 받았다.
  - 도로,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5개)'에서는 평가대상 전체 공기업(324개) 중 고객만족도 전국 1위(94.6

점), 안전사고 감소(37 → 33건), 기술표준원 주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한 「인천시설공단」이 '가' 등급을 받았으며,

- 오폐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5개)'에서는 바이오가스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4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자체적으로 4건의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 「대구환경시설공단」이 '가' 등급을 받았다.
  - 기타공사공단(10개)에서는 전국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의 34%를 점유하고 도매시장 최초로 안전성검사 전문기관으로 선정('13. 4)되었으며, 비핵심업무 아웃소싱으로 47억원을 절감하는 등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흑자(147억원)를 달성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가' 등급을 차지하였다.
  - 시·군·구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시설관리공단(72개)' 유형에서는 단양군, 창원시, 서울마포구·강동구, 문경시, 남양주시, 고양시의 시설공단이 '가' 등급을 받았고, '기타공사(14개)' 유형에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가 '가' 등급을 받았다.
  - 한편,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감점(2.2점)을 받음으로써 평가등급이 한 단계 하락('나 → 다' 등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제외)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되게 된다.

### 지방공사·공단 성과급 지급기준

(성과급=연봉(보수)월액×지급률)

| 경영평가 등급 | 성과급 지급률  |          |          |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
|---------|----------|----------|----------|-----------------|
|         | 사장       | 임원       | 직원       |                 |
| '가'     | 301~450% | 201~300% | 201~300% | -               |
| '나'     | 201~300% | 151~200% | 151~200% | -               |
| '다'     | 100~200% | 100~150% | 101~150% | -               |
| '라'     | 0%       | 0%       | 10~100%  | 익년도 연봉 동결       |
| '마'     | 0%       | 0%       | 0%       |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 또한,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 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최근 진단을 받은 기관은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정밀진단(9~11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 (경영진단 대상기관) SH공사, 강원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하수도, 양주시 상수도, 연천군 하수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하철, 서민주택, 공원, 상하수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 시·도 공기업(안행부 평가) 평가등급, 57개

| 평가 등급  | 도시철도 공사 (7개)                        | 도시개발 공사 (15개)                            | 시설관리 공단 (5개)             | 환경시설 공단 (5개)             | 기타공사 공단 (10개)                     | 상수도 (8개)                       | 하수도 (7개)                 |
|--------|-------------------------------------|------------------------------------------|--------------------------|--------------------------|-----------------------------------|--------------------------------|--------------------------|
| 가 (4)  |                                     | 광주도시 (1)                                 | 인천시설 (1)                 | 대구환경 (1)                 | 서울농수산식품 (1)                       |                                |                          |
| 나 (16) | 대구도시철도<br>대전도시철도<br>서울도시철도 (3)      | 전북개발<br>부산도시<br>전남개발<br>충북개발<br>경북개발 (5) | 부산시설 (1)                 | 대전시설 (1)                 | 구리농수산물<br>김대중컨벤션센터<br>제주개발 (3)    | 울산<br>대구<br>인천 (3)             |                          |
| 다 (27) | 서울메트로<br>광주도시철도<br>부산교통<br>인천교통 (4) | 경기도시<br>충남개발<br>울산도시<br>대전도시<br>경남개발 (5) | 서울시설<br>대구시설<br>울산시설 (3) | 부산환경<br>인천환경<br>광주환경 (3) | 경기관광<br>창원경륜<br>부산스포원<br>제주관광 (4) | 서울<br>부산<br>대전<br>광주<br>제주 (5) | 제주<br>울산<br>부산 (3)       |
| 라 (7)  |                                     | 대구도시 (1)                                 |                          |                          | 경기평택항만<br>대전마케팅 (2)               |                                | 대구<br>대전<br>광주<br>인천 (4) |
| 마 (3)  |                                     | 인천도시<br>강원개발<br>SH (3)                   |                          |                          |                                   |                                |                          |

시·군·구 공기업(시·도 평가) 평가등급, 267개

| 평가<br>등급   | 지방 공사·공단(86개)                                                                                                                                              |                                                       | 직영기업(181개)                                                                                                                                                                                               |                                                                                                                                                       |
|------------|------------------------------------------------------------------------------------------------------------------------------------------------------------|-------------------------------------------------------|----------------------------------------------------------------------------------------------------------------------------------------------------------------------------------------------------------|-------------------------------------------------------------------------------------------------------------------------------------------------------|
|            | 시설관리공단<br>(72개)                                                                                                                                            | 기타공사<br>(14개)                                         | 상수도<br>(106개)                                                                                                                                                                                            | 하수도<br>(75개)                                                                                                                                          |
| 가<br>(26)  | 단양, 청원, 마포<br>강동, 문경, 남양주<br>고양<br><br>(7)                                                                                                                 | 청송사과유통<br><br>(1)                                     | 영암, 광양, 서산<br>남양주, 안양, 구리<br>순천, 부안, 화순<br>천안<br><br>(10)                                                                                                                                                | 구미, 군포, 제천<br>구리, 김천, 영암<br>광명, 속초<br><br>(8)                                                                                                         |
| 나<br>(82)  | 강남, 성북<br>인천서구, 청주<br>광진, 양산, 오산<br>성남, 포천<br>동대문, 영등포<br>서대문, 수원,<br>동해, 성동, 울주<br>포항, 관악, 가평<br>과천, 울산남구<br>안동<br><br>(22)                               | 하남개발<br>광주지방<br>창녕개발<br>영양고추유통<br>함안지방<br><br>(5)     | 고양, 광명, 안산<br>동두천, 나주, 경산<br>시흥, 파주, 김천<br>통영, 평창, 공주<br>전주, 이천, 의정부<br>하남, 철원, 제천<br>구미, 남원, 광주<br>춘천, 밀양, 양양<br>당진, 목포, 군산<br>창녕, 강릉, 충주<br>거창, 영동, 홍천<br><br>(33)                                     | 시흥, 안양, 오산<br>서산, 안산, 공주<br>의왕, 파주, 안동<br>양산, 통영, 춘천<br>과천, 평택, 목포<br>순천, 화순, 화성<br>경산, 칠곡, 청주<br>김해<br><br>(22)                                      |
| 다<br>(105) | 송파, 중랑, 안성<br>용산, 전주, 김해<br>강북, 은평, 구로<br>구미, 부천, 동작<br>양주, 인천남구<br>안양, 강릉관광<br>안산, 군포, 종로<br>의정부, 금천<br>인천남동, 기장군<br>천안, 파주, 강화<br>속초, 영월, 계양<br><br>(29) | 평택도시<br>통영관광개발<br>당진해양관광<br>청도공영사업<br>화성도시<br><br>(5) | 부천, 군포, 성남<br>수원, 의왕, 사천<br>용인, 화성, 평택<br>여주, 안동, 양산<br>양평, 음성, 청주<br>가평, 인제, 김해<br>홍성, 아산, 진주<br>정읍, 고성, 옥천<br>보령, 포항, 상주<br>거제, 청원, 칠곡<br>영주, 계룡, 익산<br>영광, 김제, 동해<br>삼척, 완주, 함안<br>정선, 단양<br><br>(41) | 여주, 의정부, 전주<br>나주, 영광, 진주<br>부천, 음성, 거제<br>경주, 가평, 영주<br>정읍, 용인, 고양<br>익산, 당진, 증평<br>사천, 충주, 광양<br>포항, 성남, 영천<br>아산, 수원, 강릉<br>광주, 김포, 포천<br><br>(30) |
| 라<br>(42)  | 강서, 중구, 연천<br>의왕, 시흥, 도봉<br>정선, 노원<br>인천중구<br>보령, 춘천도시<br><br>(11)                                                                                         | 김포도시<br>양평지방<br><br>(2)                               | 오산, 과천, 안성<br>포천, 여수, 김포<br>원주, 고창, 경주<br>울진, 창원, 영천<br>영덕, 논산, 예산<br>문경, 양주<br><br>(17)                                                                                                                 | 밀양, 완주, 상주<br>천안, 남양주<br>동두천, 보령<br>양평, 거창<br>이천, 계룡, 연천<br><br>(12)                                                                                  |
| 마<br>(12)  | 양천, 부평, 여주<br><br>(3)                                                                                                                                      | 용인도시<br><br>(1)                                       | 연천, 의성, 태백<br>속초, 영월<br><br>(5)                                                                                                                                                                          | 창원, 창녕, 안성<br><br>(3)                                                                                                                                 |

#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본 자료는 2013년 9월 3일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에서 발표한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 안전행정부(유정복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 구분   | 현행  | 개선  |
|------|-----|-----|
| 인구수  | 50% | 50% |
| 징수실적 | 40% | 30% |
| 재정력  | 10% | 20% |

- 이에 따라 특·광역시 제외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된다.

-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되어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도(현재는 경기도만 해당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보전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재정보전금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종전의 징수교부금이 시·도세의 징수비를 과다 보전하여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악화시킴에 따라
    -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로 일원화(지방세법)한 후, 잔여재원을 시·군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지방재정법, 2000. 1. 12)
  - \* 징수교부금 추이(도세 중 비율): 10%(’76년 이전), 30%(’76~’89년), 30% 또는 50%(인구 50만 이상 시, ’90~’99), 3%로 일원화(2000년~)

■ 재원 및 배분

- **(재원)**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 또는 47%(인구 50만 이상 市)
- **(배분)** 일반재정·시책추진·특별재정보조전금으로 구분·운영

| 구분       | 규모            | 배분기준                                |
|----------|---------------|-------------------------------------|
| 일반재정보조전금 | 총액의 90%       | 인구 수 50% · 경제실적 40% · 재정력 10%       |
| 시책추진보조전금 | 총액의 10%       | 지역개발사업 등을 심사하여 배분                   |
| 특별재정보조전금 | 일반재정보조전금의 일부* |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의 재정결함금액을 고려하여 배분 |

\* 인천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되, 경기도는 일반재정보조전금의 25%

\*\* 현행 보통교부세 불교부 시·군: 6개 市(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 규모: 3조 7,605억원(13년 당초예산 기준)
- 일반: 2조 9,227억원 / 시책: 3,761억원 / 특별(경기도 한정): 4,617억원

■ 교부시기: 매월 또는 매분기별 교부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시론] 조세정책과 부동산조세정책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로 과세 베이스 확대 조세정책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있다.

전자는 공약가계부상의 복지재원을 세율 인상 없이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한편 후자는 5년여 주택매매시장 침체를 반전시키고 또 서민·중산층이 겪고 있는 전·월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미 지난 4월 1일과 8월 28일에 부동산 세제지원책이 발표되었다. 현 경제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세금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세청이 전·월세 시장에서의 세금 탈루 파악을 위해 세입자가 시군구청에 신고한 확정일자 정보를 수집한 국토교통부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소유 월세임대주, 2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 수취자, 또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자나 월세 수취자에 한해서 과세하고 있다. 정말 복잡하니 납세자가 몰라서 불성실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실제 다주택 소유자이거나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임차 가구는 2010년 센서스에서만도 268만 가구로, 전 가구의 15.5%를 넘어 급증하는 실정이다. 반면 이들 소유 임대주

택에 대한 전·월세 여부나 보증금 및 월세액은 과세당국이 파악할 길이 없어서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 따라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대란 문제를 완화하려면 가급적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전세형태로 임대를 지속하려는 임대주의 행태를 장려해야 하는데, 만일 2011년 도입한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소득과세 강화를 비과세·감면 축소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전세의 월세 전환 또는 인상된 전세보증금의 월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셈이어서 두 개의 정책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우려되는 바이다.

한편 금년 초와 4·1 부동산대책은 주택 매수 수요 증대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 하락을 둔화시키려, 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당근으로 제시하였다. 정책당국의 시각은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가가 상승하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 정도까지 오르고 또 여기에 세금 당근을 이 정도까지 주었으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집을 실수요 거주목적으로 살 만한 사람들도 주택 구입을 계속 미루면서 부담되는 월세 대신 전세만 찾고 있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전세 수요 폭증의 배후에는 낮은 시중 이자율과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임대주들의 은퇴 대비 월세 전환 요구도 한몫했다고 한다. 반면 30대 가구주들은 세입자 비중과 전·월세보증금도 이미 타연령대 가구주에 비해 높다 보니, 전세 재계약 시 반전세나 월세로 임대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50대 임대주와 30대 임차인이 타협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로의 전환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집이 있어도 세 들어 사는 가구들이 부쩍 늘어나게 된 시대변화를 직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집값 상승 기대감을 높일 유인책'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처럼,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또 다른 유인인 보유단계 중 수익 흐름을 높이는 쪽에서 문제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수많은 차별적 세제 요인들을 찾아 중립적으로 만들어 주는 데서 시장 정상화 세제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주택종합부동산세, 다주택양도세 증가, 가액별 차등 주택취득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세 차별화 등을 손봐야 한다. 일자리나 향후 경기전망이 호전되어 소득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조정된 시장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주택구매 수요 진작 정책은 가계 빚 증가라는 비용도 치러야 하는 위험이 있다.

(서울신문, 2013-09-10)

## 고소득층서 중산층 추락 많다

### 저소득층은 계층 탈피 어려워

소득 양극화에도 한국 사회 중산층 비중이 60%대를 유지하는 것은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종학 연구위원의 재정포럼 8월 호 '소득계층 이동의 원인과 정책방향'을 보면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2005년 이후 63~64%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산층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하는 중위소득 50~150%를 사용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한 뒤 중간인 50등 가구의 소득을 뽑아낸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연소득 3,450만

~5,500만원 사이의 가구가 중산층이다.

고소득층이 자신의 계층을 유지할 확률은 2002~2004년 61%에서 2005~2008년 59%로 하락했다. 반면 중산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같은 기간 35%에서 37%로,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4%에서 5%로 각각 상승했다. 그렇다고 중산층의 계층 상승 확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중산층이 고소득층이 될 확률은 2002~2004년 20%에서 2005~2008년 15%로 낮아졌다. 오히려 중산층은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높아졌다.

저소득층은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저소득층이 계층 이동 없이 저소득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확률은 같은 기간 60%에서 61%로 올랐다. 결론적으로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계층 추락 가능성이, 저소득층은 계층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때문에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비중은 하락하지 않고 60%대를 유지한 것이다.

원종학 연구위원은 "중산층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중산층에 속할지 혹은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라며 "그러나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증가는 오히려 중산층의 하향 이탈을 촉진하기 때문에 일자리 질을 고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3-09-02)

## 해외 은닉자산 자진신고 땀 과태료 경감

국세청, 국세행정포럼

'텍스 갭' 모델 만들어 세무조사 차별화해야

역외 은닉 소득과 자산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경감해주는 '역외 은닉 소득 자발적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텍스 갭(Tax Gap)' 파악을 위해 별도의 테스크포스(TF)팀을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 결

과도 발표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6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역외 은닉 재산 보유자가 재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한국 실정에 맞는 택스 갭 측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 탈세 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한시적인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역외 은닉 소득을 신고하면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역외 은닉 소득 자발적 신고제를 도입,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자진 신고 기간에 은닉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나동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이와 관련, “은닉 소득 자발적 신고제는 기획재정부나 외환당국, 국회 등의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스 갭 파악을 위해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스 갭 측정 분야가 광범위해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통계·경제 전문가, 조사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의 증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한정된 조직과 인력을 탈세 취약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 중 정책연구 용역을 체결해 구체적인 택스 갭 측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경제, 2013-0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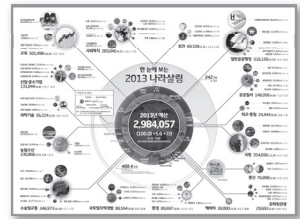
# 〈한국조세연구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금융 분야의 연구를 위해 199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재정 분야 국내 최고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현재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공공기관의 운영관련 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재정연구 분야를 기관 명칭에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조세·재정 정책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이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34호, 2013년 7월 16일, 일부개정], 「시행 2013년 7월 16일」

이번 기관 명칭 변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저희 임직원 일동은 나라경제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 재정포럼

2013년 9월호 통권 제207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박주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지현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턴연구위원)

## ■ 월간 재정포럼

2013년 9월 16일 발행 / 제17권 제9호(통권 제20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mailto: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